

【최종보고서】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2018. 12. 3.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 연구진 】

연구책임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홍렬(전주대학교, 교수) 라휘문(성결대학교, 교수)
연구보조	이연지(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이 연구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법령 개정안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요약보고서】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2018. 12. 3.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개요

- 현재, 「도서관법」 개정(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7.2.7.)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및 개정(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핵심쟁점인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등록요건(사서배치, 시설, 장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도서관법」 개정(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7.2.7.)에 대한 내용을 중점 검토, 현행 도서관법과 관련한 문제점, 논의, 쟁점 등을 검토함으로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중요함
- 현재 제안된 개정안의 취지 파악, 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현 제안된 도서관법개정안에 적합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도출함
- 등록제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 이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효과적 개정을 추진 및 도모
-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검토함으로 이번 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및 적용

제2장 「도서관법」 개정법(안) 주요내용 및 검토

제1절 도서관 관련 현황 분석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 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7.]	

-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공공도서관의 기능

구 분	내 용
지식정보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평생교육	모든 계층의 이용자에게 정보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지역사회문화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여가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가서비스 제공
생활편의	주민의 다양한 민원서비스 대행 및 생활정보 제공

자료: 장윤정(2017)

- 도서관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42개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함

- 장서(인쇄자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4,965천권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 정규 직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함
- 1관당 정규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음
- 정규 사서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46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정규 사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2,765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661명, 사립도서관 35명으로 조사됨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1,607명임
- 총 결산액은 2014년 소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95,58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함
- 인건비 결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도서관 인건비 결산액은 496,88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함
- 운영비 결산액은 2014년에 감소를 보였으나 대체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00,17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2017년 방문자 수는 272,068천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함
- 1관당 방문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1관당 방문자 수는 261,103명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함
- 대출 도서 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7년에는 126,632천권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함

제2절 「도서관법」 관련 논의

1. 「도서관법」의 현황

-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되어 1987년 전부 개정된 뒤, 2006년부터 현재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음
- 현재, 「도서관법」 개정(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7.2.7.)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및 개정(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핵심쟁점인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등록요건(사서배치, 시설, 장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 등록제를 통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의 경우, 1988년 도서관 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 기본인력(사서 3명)과 증원인력(면적과 장서를 반영)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30년간 변화가 없음
- 또한, 도서관법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도서관법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확대, 도서관 체계정비,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정립

2. 도서관 등록요건(사서 배치, 시설, 장서 기준)의 개정 필요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공공도서관설립으로 공공도서관 핵심지표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신규 사서의 충원없이 기

존 직원의 재배치로 도서관 사서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봉사대상 인구수준을 반영하여 면적과 장서규모를 결정하고, 그 면적과 장서규모를 반영하여 사서규모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국 사서수는 봉사인구수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국내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사서직원에 한하여 최소 3명의 기본인력을 배치하고 연면적 및 장서수가 일정규모 이상 증가할 때마다 각각 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적과 장서를 양대 변수로 삼아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마다 증원하는 방식인 현행 배치기준은 사서직렬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사서 3명이 왜 기본인력인지, 면적과 장서를 증원기준으로 삼는 근거는 무엇인지, 양대 기준치(면적 330㎡, 장서 6,000권)의 타당성 또한 결여됨
- 2016년말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에 집계된 정규직 사서인력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1) 현행 법정 기준 (2) 한국도서관기준 (3) IFLA국제기준을 각기 적용하여 사서 충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음

표 3 현 법정 기준, 한국도서관 기준, IFLA기준을 적용한 사서 충원율 산출 결과

현 사서수	(1) 현 기준 (연면적 330제곱미터 + 장서 6,000권)			(2)한국도서관 기준 (봉사대상인구 9,000명)		(3) IFLA기준 (봉사대상인구 4,200명)	
	법정 인원	부족 인원	충원율(%)	부족 인원	충원율(%)	부족 인원	충원율(%)
4,238	23,222	18,984	18.2	3,463	55.0	10,003	29.8

자료 :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4.

- 현행법에서는 직원배치기준을 사서에 한정하면서 전체 직원의 구성비율은 명시하지 않아 전체 직원 산출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2018년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

퇴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사서배치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공공도서관 시설기준의 하한선은 264㎡것에 반해, 기본인력 배치기준에 왜 330㎡를 적용하는지, 기본장서 또한 최소기준은 3,000권인데 왜 6,000권 미만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함
- 국제적으로 사서 인력배치에 활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봉사대상 인구수로, 이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73)
- 현 정부의 기준인건비도 총액을 결정할 때 인구를 핵심변수로 하고 하부기관 수와 지역적 수요를 추가적 독립변수로 삼고 있음.

제3절 「도서관법」 주요 내용

-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조 문	내 용
안 제4조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국립, 공립, 사립도서관) · 도서관을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
안 제8조	·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본법이 적용
안 제10,11조	· 도서관 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설치
안 제13,1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5개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안 제16조	· 시·도에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 위해 광역도서관 서비스위원회 설치
안 제23조	·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
안 제29조	·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의무 및 이에 대한 경비 보조 등
안 제32, 33조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
안 제34조	· 국가, 지자체, 법인, 단체, 개인에 의한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
안 제35조	·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사서, 도서관자료,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국립도서관), 시·도지사(공립도서관), 시·군·구청장(사립도서관)에게 등록
안 제37조	· 도서관의 날 지정(4월 12일), 1주간의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개최
안 제46조	· 이 법에 따른 도서관, 사서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 불가

자료 :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9.

제3장 해외의 도서관 관련 법제도 현황

- 유럽 특히, 독일과 같은 고전적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및 대도시 공공도서관은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에 대해 후원 및 지원하고 있음
 - 국가도서관은 연방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정책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함
 - 공공도서관 정책은 주정부는 정책적 부분을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
 - 중소도시의 소규모 중앙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상위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 수직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주정부 단위에서 각 수준별 상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공공도서관의 자율성과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평적 거버넌스(협치) 확보
 - 특히 수평적 거버넌스의 모습은 도서관 간에 협력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사서 및 봉사자의 연수와 교육은 대도시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이뤄짐
 - 독일의 경우 지방행정 수장 하에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일개의 과(課)가 설치, 한국에서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갈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연방도서관서비스법에 도서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법이 제정, 서비스는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스법>에 별도 제정되어 있음
 - 미국의 도서관 법에서는 인력 및 자료,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각 주법이나 주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립도서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의해 위치를 부여,

헌법에 또한 학습권, 학문의 자유, 생존권 등을 들어 그 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일본 공공도서관 법에서도 도서관의 사서인원 기준, 장서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단, 공공도서관 법 제13조에 전문적 직원(사서), 사무직원, 기술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에 필요한 도서관 시설의 바닥면적, 장서수장능력, 직원수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국가마다 공공도서관의 필요성,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관련 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으로 들어가면, 인력(사서 기준), 기준면적, 장서수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해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법으로 정하는 대신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독일과 같이 상위(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의 도서관이 중소규모의 상위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도서관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 도서관 체계에서는 함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즉, 최근 광역 단위에서 설립된 대표도서관과 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된 공공도서관과의 위치 및 역할 부여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광역의 대표도서관-기초자치단체의 본관 및 분관과의 관계까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럴 경우, 현재 국가 및 지자체 공공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부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감안하여 기준 마련에 있어 지자체의 대표도서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부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제4장 「도서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사항 및 주요 내용

제1절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 및 주요 검토 내용

- 도서관법 하위법령은 등록요건의 신설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사서, 자료,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들 기준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은 법령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도서관 운영에 적절한 인력과 장서, 면적을 구비해야 함.
- 도서관법 하위법령에 포함될 기준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외의 도서관 법령이나 기준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도서관 기준(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었음
- 해외의 기준에는 기준의 결정변수로 봉사대상인구수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사서의 증원에 대한 결정변수도 도서관법의 장서와 면적이 아닌 봉사대상인구수를 채택하고 있어 도서관법 하위법령에도 봉사대상인구수가 기준의 결정변수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주요 쟁점 및 기준 등

1. 등록제 도입 및 조건

- 도서관의 등록은 동일한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는 장서나 이용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등록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의 활용은 피해야 함
- 아울러 도서관의 등록요건은 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 기준이나 지침들은 대부분 최소기준이 아니라 적정 기준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도서관의 등록기준은 최소요건에 방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함

- 구체적인 도서관 등록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나와 있음

2. 사서, 도서관 자료 및 시설 기준 설계

- 시설과 도서관자료는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봉사대상 인구의 구간이 6개구간(2만 미만, 2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50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최소봉사대상인구의 권역이 2만미만으로 규정된 것은 아마 2만 이상으로 규정한 읍 설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함. 그러나 도서관의 건립과 확충이 증가하면서 봉사대상 인구 또는 행정구역인구가 2만 명 미만의 읍면동에 건립되는 도서관도 상당하며, 권장기준인 한국도서관기준에도 이미 2만 미만 봉사대상 인구의 급간을 1만 미만과 1만 이상 ~ 2만 미만으로 세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적용한 봉사대상 인구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봉사대상 인구
1만 미만
1만 ~ 2만 미만
2만 ~ 5만 미만
5만 ~ 10만 미만
10만 ~ 30만 미만
30만 ~ 50만 미만
50만 이상

- 아울러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봉사대상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시나 구가 도농복합형태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광역대표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구간은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규모(100만 미만~1000만 이상)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함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100만 미만
100만 ~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미만
300만 ~ 500만 미만
500만 이상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봉사인구대상이 500만~1000만 미만의 광역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500만 이상으로 단순하게 인구급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 둘째,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다만, 군단위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위적 역할에 따라 중앙관은 전체 행정단위 인구, 분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 셋째, 도서관의 위치에서 반경을 기준으로 봉사권역을 설정하고 봉사권역내의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경우임. 현재 봉사대상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정한 반경 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것임. 이는 다음과 같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앙관(거점관)	2km	2.5km	3km
분관	1km	1.5km	2km

- 위의 3가지 안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이는 봉사대상 인구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쉽게 봉사대상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함. 그리고 도서관의 지위적 역할(일반적으로 중앙관 및 거점관, 분관)에 따라서 봉사대상 인구가 달리 산정되어야 하므로 제1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로 판단됨. 다만 중앙관 및 거점관, 그리고 분관의 정의가 도서관법에 제시되
되거나, 중앙관 분관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광역
교육청 소속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소속 도서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봉사대상
인구를 산정함

2) 사서 배치 기준(안)

- 사서배치기준을 결정할 결정변수로 봉사대상 인구로 한다는 가정 하에, 봉사
대상 인구를 위에서 논의한 바, 1만 미만부터 50만 이상까지 7개 구간으로
구분함
- 현재 법정배치 사서 인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비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증원인력에 대한 결정변수인 장서와 면적을 폐기하고, 봉사대상 인구를 결정
변수로 정함
- 아울러 기본인력은 도서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의 인력으로 현재 시
행령과 변동이 없으며, 증원 인력은 국내외 기준과 법령의 분석내용을 근거
로 다음과 같이 정함

표 5 사서 배치 기준

근거	사서배치기준	
IFLA/UNESCO 가이드라인	인구 2500명당 1명의 직원	직원의 1/3 사서배치 따라서 인구 7,500명당 1명
호주 공공도서관 기준	3,000명당 1명의 직원	인구 10,000명당 1~1.2명 사서
윤희윤의 연구	10,000명당 0.33명	직원의 33% 사서배치
권나현의 연구	인구 9천 명당 1명	
한국도서관기준	사서직원의 1/3	9천 명당 1명

- 위의 지침(기준)이나 연구들은 약 9,000명~10,000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	기본인력	증원인력	
		사서직원	기타직원
1만 미만	3명	9천 명당 1명	사서의 1/3
1만 ~ 2만 미만			
2만 ~ 5만 미만			
5만 ~ 10만 미만			
10만 ~ 30만 미만			
30만 ~ 50만 미만			
50만 이상			

※ 봉사대상 인구가 9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9천 명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3) 도서관자료 및 시설 기준(안)

-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1,042개관의 시설(면적) 및 자료를 분석하였음
- 1,042개 공공도서관 면적의 평균은 2,816㎡이며, 개별 면적당 도서관은 264제곱미터 이하의 도서관이 6개관(0.6%), 264~66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135개관(12.9%), 660~99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139개관(13.3%), 990~1,65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221개관(21.2%), 1,650 ~ 3,30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280개관(26.9%), 3,300 ~ 4,950제곱미터미만의 도서관이 124개관(11.9%), 4,950 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이 137개관(13.2%)로 나타났음

4)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면적)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안)

(1)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안)

- 도서관 연면적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현재 법령에서 제시한 면적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임

면적 사례(안) 1 :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봉사대상 인구	시설	
	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2만 미만	264	6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이상	2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1. 면적 사례(안) 2 : 최소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봉사대상 인구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퀸즈랜드	한국도서 관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1만 미만	560㎡	473㎡	350㎡	-	297㎡	
1만 ~ 2만 미만	1천 명당 56㎡	946㎡	700㎡	264㎡	330㎡	
2만 ~ 5만 미만		2,035㎡	1,750㎡	66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850㎡	3,000㎡	990㎡ 이상	990㎡ 이상	
10만 ~ 30만 미만		15만 5,770㎡		10,200㎡	1,650㎡ 이상	1,650㎡ 이상
30만 ~ 50만 미만				17,000㎡	3,3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 이상	4,950㎡ 이상	4,950㎡ 이상

1.2. 면적 사례(안) 3 : 봉사대상 인구 1인당 또는 1천 명당 면적을 제시하는 경우

봉사대상 인구	위의 사례를 적용했을 때				평균	1인당
	캐나다	호주	한국도서 관기준	건립매뉴얼		

1만 미만	560 m ²	473 m ²	350 m ²	700 m ² 미만	520	0.052 m ²
1만 ~ 2만 미만	1,120 m ²	946	700 m ²	1,400 m ² 미만	1,041	
2만 ~ 5만 미만	2,800 m ²	2,035	1,750 m ²	3,250 m ² 미만	2,458	0.049 m ²
5만 ~ 10만 미만	5,600 m ²	3,850	3,000 m ²	5,000 m ² 미만	4,362	0.043 m ²
10만 ~ 30만 미만	16,800 m ²	11,550 m ² 미만	10,200 m ²	12,000 m ² 미만	12,637	0.042 m ²
30만 ~ 50만 미만	28,000 m ²	16,000 m ² 미만	17,000 m ²	20,000 m ² 미만	20,250	0.040 m ²
50만 이상	28,000 m ² 이상	16,000 이상	17,000 m ² 이상	20,000 m ² 이상	20,250	0.040 m ² 이상

-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서관법시행령에서 최소면적을 조정한 시설 기준(2안)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안 중심으로 제안하되, 도서관법시행령과 큰 차이두지 않는 시설 기준(3안)의 2가지가 가장 적절하나, 3안의 경우에는 봉사대상 인구가 25만 명 이상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거점관과 중앙관의 경우에는 면적이 과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최소기준만 제시한 제2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기준(안)으로 판단됨

- (2안)

봉사대상 인구	개정(안)
1만 미만	297 m ² 이상
1만 ~ 2만 미만	330 m ² 이상
2만 ~ 5만 미만	660 m ² 이상
5만 ~ 10만 미만	990 m ² 이상
10만 ~ 30만 미만	1,650 m ² 이상
30만 ~ 50만 미만	3,300 m ² 이상
50만 이상	4,950 m ² 이상

- (2안)

봉사대상 인구	인구 1인당 면적(m ²)		
	중앙관(거점관)	분관	통합(안)
1만 미만	0.050	0.033	0.035
1만 ~ 2만 미만	0.047	0.030	
2만 ~ 5만 미만	0.045		
5만 ~ 10만 미만	0.042		0.030
10만 ~ 30만 미만	0.035	0.025	
30만 ~ 50만 미만	0.030	0.020	0.025
50만 이상	0.025	0.015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기준은 호주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을 기준으로 고찰한 후 시설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표 6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기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m ²)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및 증원기준에 따른 인력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의 기준은 위의 기준에 따르되, 광역 대표도서관에는 법제2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타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한국도서관기준, 2013년판>

■ 도서관자료 기준의 설정

가) 장서 제안 1) 평균 1인당 2.0을 중심으로 1인당 장서 1.0권 ~ 3.0권
(최하는 3,000권 이상)

봉사대상 인구	현재 시행령	자료(안)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1만 미만	3,000 이상	1인당 3.0권	기본장서의 10%
1만~ 2만 미만		1인당 2.5권	
2만 이상 5만 미만	6,000 이상	1인당 2.0권	
5만 이상 10만 미만	15,500 이상	1인당 1.5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 이상	1인당 1.0권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 이상		
50만 이상	150,000 이상		

나) 장서 제안 2) 최소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기존 기준의 2배 증가)
(최하는 3,000권 이상)

봉사대상 인구	현재 시행령	자료(안)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1만 미만	3,000 이상	3,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1만~ 2만 미만		6,000권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000 이상	12,000권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15,500 이상	31,000권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 이상	50,000권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 이상	110,000권 이상	
50만 이상	150,000 이상	17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서는 공공도서관 자료기준에 따른다.
- 종합하면, 1안은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도서관의 적정장서량(적정 기본장서)을 제시할 때 효율적인 모델이나, 최소자료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상의

자료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임.

- 따라서 도서관의 자료기준은 자료의 최소기준만을 제시한 2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소결>

제38조 4항에 따른 하위법령(도서관자료, 면적)기준

<공립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면적개정(안)	자료(안)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1만 미만	297㎡ 이상	3,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1만~ 2만 미만	330㎡ 이상	6,000권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2,000권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31,000권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50,000권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110,000권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70,000권 이상	

※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 인구를 말한다.

<광역대표도서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및 증원기준에 따른 인력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의 기준은 위의 기준에 따르되, 광역대표도서관에는 법제2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의 기준보다 상향시켜야 하며, 어느 정도의 폭으로 상향시킬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현재의 기준보다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시킬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자료가 3,000권이상일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최소기준과 동일하여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6㎡, 열람석 12석, 장서수 2,000권으로 2배 증가시키는 것이 안정적임

- 작은도서관의 자료,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설		자료
도서관 연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이상	12석이상	2,000권이상

5) 도서관 등록기준과 요건

- 도서관의 등록에는 기본적인 등록기준과 등록요건 등 2가지를 만족해야 함
- 자료 및 면적, 사서배치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면적(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서최소 배치기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등록요건도 광역대표도서관의 자료, 인력,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또한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시설		자료
도서관 연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이상	12석이상	2,000권이상

- 도서관의 등록기준을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참조하되,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모든 등록 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mission),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령 또는 정관을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도서관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등록 도서관은 설립목적과 사명에 적합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서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집합(collection)을 말한다.

셋째, 모든 등록도서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력, 장서, 면적(시설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도서관은 자료 이용 공간, 업무 공간, 문화 교육 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도서관 규모나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서고는 장서를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모든 등록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과 설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등록도서관은 도서관 간판, 각종 홍보물, 발간물, 홈페이지 등 도서관 명칭을 표기하는 곳에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록표시를 할 때에는“국립(또는 공립, 사립) ○○ 등록도서관”또는“국립 (또는 공립, 사립) 등록도서관”으로 표시한다.

여섯째, 등록할 때에는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일곱째, 등록 신청을 한 도서관이 등록심의를 거쳐 상기의 등록기준과 아래의 장서, 인력, 면적 등 3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단, 상기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3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등록으로 하여 등록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1개 항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지 못하면 등록 불가로 판정된다.

여덟째, 개관 후, 6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에 대하여 등록명령을 내려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법 제35조 등록요건 관련 시행령]

- 등록예정 도서관은 자료 이용 공간, 문화 교육 공간, 업무 공간, 공유 공간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립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면적(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서최소 배치기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대표도서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에는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 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 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개관 후, 1년 이내 등록 시에는 기본 장서수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7년 후에는 기본장서수를 확보해야 한다.

3. 사서 배치 기준 마련 등

1)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의 의의

- 도서관법 제2조 7의2항에 의하면 사서는 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은 도서관법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음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고 되어 있는바 기본인력과 증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 사서배치 기준 현황과 문제점

(1) 법·제도적 현황

(가) 도중환의원발의안

- 도중환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개정 법률안 제4조를 보면 도서관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음
 -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도서관을 구분하면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사서배치 기준의 문제점(쟁점): 재설계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사서배치 기준 관련 문제점 또는 쟁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법적 사서배치 기준은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IFLA 기준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사서에 대한 충원율이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공공도서관 당 기본인력을 3명으로 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종사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사서배치기준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사서직 정원은 도서관법의 적용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바 기준인건비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쉽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¹⁾
- 여섯째, 현행 사서배치 기준은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대상 인구에 비해 연면적이 넓고 장서수가 많은 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어 사서배치 기준과 연계성이 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봉사대상 인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연면적과 장서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문제가 남음

4) 직무분석결과

- 직무분석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종합하는 관리활동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나, 조직진단에서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 (가) 직무조사 후 업무량분석을 통한 인력산정결과
 -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직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236명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은 도서관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실시하였음

표 7 응답자 분포

구분	공공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기타	계
응답자수	196	13	20	7	236
비율	83.0	5.5	8.5	3.0	100.0

1) 법리적으로는 사서배치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서 인력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음

○ 도서관에 대한 업무량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8 도서관에 대한 업무량분석결과

구분	연 평균근무일수	1일 평균근무시간		변이계수
		240일기준 (5일휴가상정)	245일 기준 (법정근로일수)	
공공도서관	261.0	9.0	8.8	0.1570
광역대표도서관	250.9	9.3	9.1	0.1119
작은도서관	252.3	6.4	6.3	0.2630

—

—

5)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안)

(1) 기본방향

-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하여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음
-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현행 사서배치 기준은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그리고 전문가들 중 일부는 봉사대상 인구를 중심으로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표 9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를 위한 접근 틀

		규제의 범위	
		통제(규제)형	자율형
개편의 폭	소극적 개편형	II (소극·통제형)	I (소극·자율형)
	적극적 개편형	III (적극·통제형)	IV (적극·자율형)

○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할 때에는 가장 중점이 되는 봉사대상 인구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봉사대상 인구를 도서관이 설치되는 행정구역의 전체 인구라고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 둘째,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다만, 군단위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위적 역할에 따라 중앙관은 전체 행정단위 인구, 분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 셋째, 도서관의 위치에서 반경을 기준으로 봉사권역을 설정하고 봉사권역내의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경우임. 현재 봉사대상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정한 반경 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것임. 이는 다음과 같음

(2) 대안

① I (소극·자율형)

○ 소극·자율형의 의미

- 소극적인 개편형은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자율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제시하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대안

표 10 봉사대상구간의 조정(안): 소극·자율형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1만 미만	297 이상	3,000 이상	기본 장서의 10%
1만 이상 2만 미만	330 이상	6,0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2,0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31,0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50,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110,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70,000 이상	

② II(소극·통제형)

○ 소극·통제형의 의미

- 소극적인 개편형은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크게 변화하지 않음
- 통제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대안

- 봉사대상구간의 범위 재설정
 -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구간범위를 좀 더 하위단위로 확대하는 대안임

- 현행 6단계를 7단계로 확대하는 대안이며, 이는 면단위까지 확대한 것임

표 11 봉사대상구간의 조정(안): 소극·통제형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1만 미만	297 이상	3,000 이상	기본 장서의 10%
1만 이상 2만 미만	330 이상	6,0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2,0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31,0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50,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110,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70,000 이상	

- 기본인력과 추가인력기준 재설정: 기본인력과 추가인력 정교하게 제시

표 12 추가인력의 산정(안)

기본인력	추가인력	
	연면적	장서수
4명 (사서직원 3명, 비사서 직원 1명)	33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6천권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③ III(적극·통제형)

○ 적극·통제형의 의미

- 적극적인 개편형은 현행 사서배치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추어 봉사대상 인구로 사서배치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임
- 통제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대안

-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설정

-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로 되어 있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을 봉사대상 인구로 전환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기준을 변형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고자 함. 즉, 등록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 9천 명당 1명의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13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

기본인력	추가인력	
	사서직원	비사서 직원
4명 (사서직원 3명, 비사서 직원 1)	인구 9천 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 만약 기본인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봉사대상 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14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

봉사대상 인구	추가인력	
	사서직원	비사서 직원
1만 미만	2,500명당 1인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2만미만	3,500명당 1인	
2만-5만미만	4,500명당 1인	
5만-10만미만	5,500명당 1인	
10만-30만미만	8,500명당 1인	
30만-50만미만	9,000명당 1인	
50만 이상	9,500명당 1인	

④ IV(적극·자율형)

○ 적극·자율형의 의미

- 적극적인 개편형이라는 의미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활용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추어 봉사대상 인수로 사서배치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임

표 15 적극·자율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기준

봉사대상 인구	봉사대상 인구구간						
	1만 미만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최저	0.4	0.3	0.2	0.2	0.2	0.1	0.1
보통	0.5	0.4	0.3	0.3	0.3	0.2	0.2
권장	0.6	0.5	0.4	0.4	0.4	0.3	0.3
우수	1.0	0.8	0.5	0.5	0.5	0.4	0.4

(3) 광역대표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의 규모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규모를 보면 3-37명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대표도서관에 배치되는 인력은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69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기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인력(명)	
	기본인력	추가인력
100만 미만	10명	100만명 기준으로 하되 초과하는 봉사대상인구 10만명당 1명 증원
100만 ~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미만		
300만 ~ 500만 미만		
500만 이상		증원인력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은 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은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할 때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현행 유지하는 대안을 제안함
 - 작은 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1명 이상의 사서는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지자체 자율형 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서 다음을 제안할 수 있음
 - 기존의 사서배치 기준에서는 최소 사서 인원을 3명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지자체의 자율에 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간 설정을 하여 제시하는 것임
 - 즉, 광역단위(대표도서관)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봉사대상인구를 기초로 필요한 사서인원 기준(구간 마련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거점관과 분관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총 사서 인원을 기준에 의해 확보가 되면 각 도서관별 사서 배치는 지자체의 자율에 맞기는 것임

제3절 「도서관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입법사항

1.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 앞서 제시된 “적극·통제형의 사서 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도서관의 기본인력(사서 3, 비사서1명)을 4명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외에 추가인력을 두고 있음

- 이 안에 따라 실제 시행령 자체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행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2의 내용만 변경되므로 여기서는 개정되는 별표2의 내용을 기술함
- 이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현행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개정)

표 16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제 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현행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에 대하여 기본인력(사서직원 3명, 비사서직원 1명): 4명 ·봉사대상 인구 10만 이하: 인구 9천 명당 사서직원은 1명을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 추가 ·봉사대상 인구 10만 이상: 인구 1만 명당 사서직원은 1명을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 추가

○ 그리고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은 기본인력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봉사대상 인구가 1만 미만인 경우 사서직원은 2,500명당 1인을 추가하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을 추가하는 방안임

- 이에 따른 개정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음

표 17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및 법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현행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 1만 미만: 사서직원 2,500명당 1인 ·1만-2만 미만: 3,500명당 사서직원 1인 ·2만-5만 미만: 4,500명당 사서직원 1인 ·5만-10만 미만: 5,500명당 사서직원 1인 ·10만-30만 미만: 8,500명당 사서직원 1인 ·30만-50만 미만: 9,000명당 사서직원 1인 ·50만 이상: 9,500명당 사서직원 1인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3) 등록기준

- 도서관의 등록기준은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대한 골격은 이를 따랐으나 세부적인 등록요건 및 내용은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8 도서관 등록 일반규정(법 제5조제1항 관련)

<p>1. 모든 등록 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mission),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령 또는 정관을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도서관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 모든 등록 도서관은 설립목적과 사명에 적합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p> <p>가. 장서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집합(collection)을 말한다.</p> <p>3. 모든 등록도서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력, 장서, 면적(시설포함)을 갖추어</p>
--

- 야 한다.
- 가. 도서관은 자료이용공간, 업무공간, 문화교육공간, 공유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도서관 규모나 봉사 대상인구수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나. 서고는 장서를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등록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과 설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5. 모든 등록도서관은 도서관 간판, 각종 홍보물, 발간물, 홈페이지 등 도서관 명칭을 표기하는 곳에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록표시를 할 때에는“국립(또는 공립, 사립) ○○ 등록도서관”또는“국립 (또는 공립, 사립) 등록도서관”으로 표시한다.
6. 등록할 때에는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7. 등록 신청을 한 도서관이 등록 심의를 거쳐 상기의 등록기준과 아래의 장서, 인력, 면적(시설포함) 등 3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단, 상기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3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등록으로 하여 등록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1개 항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지 못하면 등록 불가로 판정된다.
8. 도서관이 개관 후, 6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명령을 내려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 위 기준과 연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등록 규정을 참고하고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안)(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에 포함(개정)되어야 할 구성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9 도서관 등록에 관한 규정(안)(법 제5조제1항 개정 및 ‘시행령 제3조의2’ 신설)

시행령 조항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령(안)
등록신청	<p>제8조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시설명세서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또는 자료의 이용료</p>	<p>① 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등록신청서 2. 시설명세서 3. 도서관자료목록 4. 사서명단을 포함한 직원명단</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가치, 사서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도서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등록심의회는 도서관계, 학계, 전문가, 지역인사 등 10인 이내로 등록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등록요건</p>	<p>제9조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① 법 제35조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은 도서관의 자료, 사서수, 시설의 규모에 따라 중앙관(거점관)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등록변경</p>	<p>제10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종류 소재지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시설명세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p> <p>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박물관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명칭 2. 도서관의 소재지 3. 시설명세서 4. 사서 명단(감소되었을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2. 도서관 등록증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등록표시	<p>(제11조)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시·군·구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등록심의 등		<등록신청>의 제3항에 규정함

- 위의 등록과 관련된 두 기준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과 연계하여 위에서 제시된 바를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표 20 ‘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시행령(안)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안)						
공동요건		공동요건	<p>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통요건 외 - 자료이용공간, 문화교육공간, 업무공간, 공유공간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p>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공공도서관]						
	유형	<table border="1"> <tr> <td>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td> <td>학예사</td> <td>시설</td> </tr> <tr> <td>각 분야별 100점 이상</td> <td>각 분야별 1명 이상</td> <td>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td> </tr> </table>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결역 시설 5) 사료장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 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빙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서최소배치기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 봉사대상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도서관은 등록 시 기본장서의 50% 이상을 구비하고, 7년 후 기본장서를 확보해야한다.

※ 기존의 운영 중인 도서관의 등록 시, 면적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광역대표도서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 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 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 이상		220,000 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 이상		270,000 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 이상		310,000 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에는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타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개관 후, 1년 이내 등록 시에는 기본 장서수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7년 후에는 기본장서수를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등록요건]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 이상	12석 이상	2,000권 이상

※작은도서관은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심의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에 관한 심의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2.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사서배치기준은 별표2에만 관계되는 것이어서 시행규칙 조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현행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1 시행규칙상 사서 배치 기준의 변화

시행령 개정(안)	현행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p>제4조(사서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13.></p> <p>②법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8. 13.></p> <p>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8. 13.></p> <p>[제목개정 2012. 8. 13.]</p>	<p>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p> <p>①영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영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p>②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p>	<p>(현행과 같음)</p>

	<p>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p> <p>[제목개정 2009. 9. 25.]</p>	
--	--	--

3) 등록기준

표 22 시행규칙상 등록기준의 변화(현행 시행령 제3조에 신설)

시행령 개정(안)	현행 시행규칙	신설 시행규칙
<p>제3조의2(등록신청) ①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명세서 2. 도서관자료목록 3. 사서명단을 포함한 직원명단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p>	<p>(관련 규정 없음)</p>	<p>(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2로 신설)</p> <p>제?조(등록의 처리)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처리는 사립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준용한다.</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도서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사서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도서관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제3조의3(등록요건) ①법 제35조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은 도서관의 자료, 사서수, 시설의 규모에 따라 중앙관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p>제3조의4(등록변경) ①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이 발생하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명칭 2. 도서관의 소재지 3. 시설명세서 4. 사서 명단 (감소되었을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관련 규정 없음)	<p>(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3로 신설)</p> <p>제?조(등록변경의 처리) 영 제3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사립도서관의 등록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준용한다.</p>

<p>1. 등록증(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제3조의5(등록표시) 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옥외 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시·군·구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p>제3조의6(등록심의 등) <등록신청> 제2항에 규정</p>	(관련 규정 없음)	<p>(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4로 신설) 제?조(등록심의의 처리) 영 제3조의6에 따른 등록심의를 위해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심의에 적합한 관계 위원회에 이를 위임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위원회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제 목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개요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6
제3절 연구의 체계	7
제4절 도서관법 개정안의 추가정비 필요성	9
제2장 「도서관법」 개정법(안) 주요내용 및 검토	11
제1절 도서관 관련 현황 분석	13
1. 공공도서관의 개념	13
2. 도서관 관련 현황	15
제2절 「도서관법」 관련 논의	39
1. 「도서관법」의 현황	39
2. 도서관 등록요건(사서 배치, 시설, 장서 기준)의 개정 필요성	47
제3절 「도서관법」 주요 내용	54
1. 도서관의 구분(설립주체별 및 종류별) 정의	55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55
3. 도서관 등록제 의무화	55
4. 도서관의 날 지정	56
5. 명칭 변경	56
제3장 해외의 도서관 관련 법제도 현황	57
제1절 유럽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59

1. 유럽(독일)의 공공도서관 현황	59
2.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및 서비스 제공 구조	60
3. 개정법률안 관련 시사점	65
제2절 미국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67
1. 공공도서관 법제 현황	67
2. 개정법률안 관련 시사점	69
제3절 일본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70
1. 일본의 공공도서관 현황	71
2. 일본 공공도서관의 법제 현황	73
3. 일본 공공도서관의 관련 기준 등	74
제4절 개정법률안 관련 시사점 도출 및 적용 가능성	80
1. 시사점 도출	80
2. 적용 가능성	81

제4장 「도서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사항 및 주요 내용 ... 83

제1절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 및 주요 검토 내용	85
1.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조항의 검토	85
2. 사서, 도서관 자료, 시설 기준을 위한 검토 내용	87
제2절 주요 쟁점 및 기준 등	107
1. 등록제 도입 및 조건	107
2. 사서, 도서관 자료 및 시설 기준 설계	111
3. 사서 배치 기준 마련 등	135
4. 지자체 자율형 기준 마련(안)	193
제3절 「도서관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입법사항	195
1.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195
2.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203
3. 도서관법률개정(안)·시행령개정(안)·시행규칙개정(안)	208

참고문헌	257
-------------------	------------

부록	259
-----------------	------------

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61
2. 도서관 등록업무 지침	293
3. 직무조사표	311

표차례

표 1 공공도서관의 기능	14
표 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관련법령의 변천과 특징	39
표 3 통치시기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법	40
표 4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의 변화	42
표 5 도서관법 관련 선행연구 정리	45
표 6 공립 공공도서관 현황 : 2016말 기준	47
표 7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과 산출 사례	49
표 8 현 법정 기준, 한국도서관 기준, IFLA기준을 적용한 사서 총원율 산출 결과	50
표 9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 비교	51
표 10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도서관 수(2016년말 기준 도서관 통계)	53
표 11 「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54
표 12 2017 독일 공공도서관 현황	59
표 13 미국 도서관 관련 법 상의 도서관 자료의 범위	69
표 14 일본 공공도서관 경년변화	72
표 15 대출활동 상위 공립도서관의 정비 상황	79
표 16 하위법령 개정 범위	86
표 17 IFLA 인력 기준	88
표 18 IFLA 장서 기준	89
표 19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 면적 기준	89
표 20 호주 공공도서관 기준	90
표 21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	91
표 22 아이오와주 공공도서관 인력 기준	95
표 23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 기준	98
표 24 텍사스주 공공도서관 기준	100
표 25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	101
표 26 한국 도서관 기준	102
표 27 공립 공공도서관 자료 및 시설 기준	104
표 28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109
표 29 봉사대상 인구	114
표 30 사서 배치 기준	114
표 31 시설(면적) 및 자료 분석	116
표 32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면적) 및 자료의 기준	118
표 33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기준	125
표 34 도서관의 종류	139
표 35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40

표 36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42
표 37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143
표 38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	145
표 39	공공도서관의 직무별 중요도, 전문성, 업무담당자 그리고 역할도서관.....	147
표 40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153
표 41	개별도서관 인력배치현황(2016년 말 기준).....	154
표 42	설립 주체별 공공도서관 법적 기준 총원율(2016년).....	155
표 43	법적 기준에 의거한 사서 수 산정결과.....	156
표 44	현 법정기준, 한국도서관기준, IFLA기준을 적용한 사서총원율 산출결과.....	157
표 45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 비교.....	159
표 46	국제기구 및 외국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기준 비교.....	163
표 47	위스콘신 주 인력배치 기준: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상근직원 수.....	166
표 48	사서배치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1).....	166
표 49	사서배치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2).....	168
표 50	직무분석의 절차.....	171
표 51	직무분석의 진단과정.....	172
표 52	필수인력규모산정모형.....	173
표 53	응답자 분포.....	173
표 54	도서관에 대한 업무량분석결과.....	174
표 55	거리에 따른 봉사대상 인구 범위(직선거리 기준).....	177
표 56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를 위한 접근 틀.....	178
표 57	봉사대상 권역(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179
표 58	봉사대상구간의 조정(안): 소극·자율형.....	181
표 59	봉사대상구간의 조정(안): 소극·통제형.....	183
표 60	추가인력의 산정(안).....	183
표 61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	185
표 62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	186
표 63	적극·자율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기준.....	188
표 64	적극·통제형의 사서 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	196
표 65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	196
표 66	적극·통제형의 사서 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	197
표 67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	197
표 68	도서관 등록 일반규정(법 제5조제1항 관련).....	198
표 69	도서관 등록에 관한 규정(안)(법 제5조제1항 개정 및 ‘시행령 제3조의2’ 신설).....	199
표 70	‘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시행령(안).....	201
표 71	시행규칙상 사서 배치 기준의 변화.....	203
표 72	시행규칙상 등록기준의 변화(현행 시행령 제3조에 신설).....	205

그림차례

그림 1 연구의 체계	8
그림 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수	15
그림 3 국가별 공공도서관 수	16
그림 4 연도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	16
그림 5 국가별 1관당 인구 수	17
그림 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장서(인쇄자료) 수	18
그림 7 공공도서관 설립주체별 1관당 장서(인쇄)자료 수	18
그림 8 연도별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인쇄자료) 수	19
그림 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직원 수	20
그림 10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 직원 수	20
그림 1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사서 직원 수	21
그림 1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 사서 직원 수	22
그림 13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	22
그림 14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비정규 직원 수	23
그림 1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직원 수	24
그림 1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비정규 사서 직원 수	24
그림 17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25
그림 18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26
그림 1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26
그림 20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총 결산액	27
그림 2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총 결산액	28
그림 2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인건비 결산액	28
그림 23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건비 결산액	29
그림 24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액	30
그림 2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	30
그림 2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운영비 결산액	31
그림 27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운영비 결산액	32
그림 28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32
그림 2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33
그림 30 연도별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34
그림 3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대출 도서 수	34
그림 3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 도서 수	35
그림 33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수	36
그림 34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프로그램 수	36
그림 3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37

그림 3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프로그램 참여자 수	38
그림 37	원스터시립도서관의 분관(Stadtbücherei Gievenbeck-Auenviertel)	61
그림 38	원스터시립도서관	62
그림 39	바이에른 주립도서관	63
그림 40	독일 연방도서관 프랑크푸르트	64
그림 41	시설(면적)에 따른 도서관 수	117
그림 42	직무분석의 목적	17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개요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4절 도서관법 개정안의 추가정비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과 개요

- 현행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1963년)으로 명명되어 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년), 「도서관법」(2007년)으로 분법화됨
 - 특히, 현행 도서관 시설, 자료기준 및 사서배치 기준은 1988년 개정된 기준을 현재까지 준용하고 있음
 - 사회 변화,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실효적인 법률적 기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도서관법」 개정(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7.2.7.)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및 개정(안) 마련이 필요함
 - * 현재 교문위 소위에 상정('17.9.19.)되어 있으며, '18년 국회통과 목표
-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핵심쟁점인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등록요건(사서배치, 시설, 장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체계정비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 도출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 및 제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함
- 도서관 등록제를 통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도서관 등록제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마련함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통해 세부적인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1) 도서관법 개정안 분석(기존 연구 분석 등)

-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도서관법」 개정(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7.2.7.)에 대한 내용을 중점 검토가 필요함
 - 당 법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실시
- 현행 도서관법과 관련한 문제점, 논의, 쟁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중요함
 - 우선, 당 도서관법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파악함
 -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 도서관법의 문제 및 쟁점을 정리
 -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점검

2) 도서관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하위법령 개정방안 마련

- 현재 제안된 개정안의 취지 파악, 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당 법의 개정 취지, 개정안의 부합성, 향후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3) 도서관법 개정에 대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도출

- 현 제안된 도서관법개정안에 적합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출
 -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사서직 배치기준에 관련한 쟁점을 도출
 - 국내외 사서배치기준에 대한 관련문헌 검토
 - 직무 내용 등 파악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안 모색

- 지자체 및 교육청 도서관의 행정 환경 등을 고려한 대안 모색
- 등록제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 기존의 등록제 도입사례 검토
 - 등록 기준 등 검토 후 적절한 기준안 마련
 -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시
- 4) 향후 도서관법령의 추가정비 필요성 및 검토사항 등 제시
 - 개정 도서관법(안)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발굴 및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개정안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
 - 문제점 해결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혼란을 최소화
 - 개정 도서관법(안)이외에 추가 정비필요 사항에 대한 검토
 - 현재 제안된 개정안의 정당성 이외에 추가 정비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
 - 추가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제시 및 향후 검토 필요성 제시

2. 연구 방법

- 1) 기존 문헌 자료 조사
 - 기존의 문헌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
 -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한 주요 이슈 및 쟁점 도출
- 2) 국내외 사례 조사
 - 도서관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실시
 - 도서관법 관련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관련 사례를 조사
 - 등록제 관련 유사 사례 조사
- 3)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도서관 관련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중간 및 최종 보고회 이전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유관 기관(부처, 지자체, 교육청, 도서관 등)에 대한 심층 방문 및 면접 조사 실시
- 이해당사자가 많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도서관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 필요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1) 도서관법 개정안의 마련

- 이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효과적 개정을 추진 및 도모

2) 유사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이번 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및 적용

3) 도서관 기능 및 역할 강화

- 도서관 법령 개정을 통한 도서관기능 및 역할의 강화를 추진

4) 관련법령의 조기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 특히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조기 관련 법령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 가능

제3절 연구의 체계

- 당 연구과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임으로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의 법령 개정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 따라서, 연구방법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도서관법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조사대상 범위의 선정, 주어진 기간 내 연구진 업무 분장을 통한 이슈별 쟁점 분석 실시
 - 조사대상 범위의 선정을 위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들의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제반 현황을 파악
 - 기존 연구 및 보고서들의 검토를 통해 이슈를 설정
 - 현행 도서관법 분석을 통해 기존 논의된 상황에 대한 세부 분석
- 아울러, 법령 내 주요 이슈가 되는 사서배치기준, 장서수 및 면적 등에 대한 기준에 있어 관계자들의 심층 면담이 필요
 - 이해관계자가 많고, 지역별 상황이 달라 공집합의 중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필요
- 중간보고 및 점검회의(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현황분석 보강, 주요 과제 조정 및 보강 과제 정리
 - 수시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이슈 및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확보
- 문화부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한 최종 수정 및 보완
 - 최종보고회 이전에 담당자 및 연구진 간 의견 조정
 - 수정 및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

그림 1 연구의 체계

계획 수립의 범위 (2018.07~2018.11)



제4절 도서관법 개정안의 추가정비 필요성

-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 증가에 의해 공공부문에서의 공급 방법 및 공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여 오고 있음
 - 특히, 유사한 공공서비스 기관에서의 다양한 서비스간 경쟁과 중복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는 중요한 사항임
- 우리나라 도서관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1963)」 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 개정, 이후에 다시 「도서관법」 과 「독서문화진흥법」 으로 이분화되었음
 - 그러나, 1988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시설(규모 등) 및 자료(장서수 등)와 인력(사서수 등)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이 기준에 대한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관계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안해 오고 있음
- 국회계류상황인 도서관법들을 보면 도서관법(697:주승용의원), 도서관법(5477:도종환의원), 도서관법(9037:설훈의원), 도서관법(9532:김영진의의원), 작은도서관진흥법(12818:송희경의원)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일부 사안에 대한 개정안이 대부분이며, 도서관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도서관의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정(안)은 도종환의원이 제안한 도서관법(5477)임
 - 특히, 등록제를 통한 모든 도서관을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하고자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마련과 재정 확보, 도서관정책 기반강화 및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 수립과 개선을 통해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경우 강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춰 최소한의 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지자체에 부여하도록 하며, 사무 권한의 지자체 특례 사안에 대한 건 등 그 내용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산재해 있는 상황임
 - 아울러,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에 대한 이견도 팽팽하여 단순 사무 위임이나 이양으로 종결된 사안은 아님
 - 따라서, 그간 큰 틀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서관법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정비 과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후술하고자 함

제2장 「도서관법」 개정법(안) 주요내용 및 검토

제1절 도서관 관련 현황 분석

제2절 「도서관법」 관련 논의

제3절 「도서관법」 주요 내용

제1절 도서관 관련 현황 분석

1. 공공도서관의 개념

-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정의는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을 말함.²⁾
-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독서문화서비스 및 문화·예술의 습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2012년에 전문개정 된 도서관법 제8장 제43조에서, 도서관은 특정인들만 위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 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7.]

- 현행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작은도서관까지 그 범주를 넓혀 놓음
 - 특히,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어 지칭하고, 이미 등록된 문고에 대해서도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장윤정(2017), 복합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전문석사학위논문

-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의한 건물 규모는 봉사대상 인구에 의하여 산정함
 - 봉사대상 인구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읍·면 전체의 인구를 말함
- 장서 수, 좌석 수, 연간 대출 책 수 등 3개 요소는 도서관 면적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요소로, 당해지역의 인구 수, 인근 지역의 도서관 수 및 장서 수, 건립되는 도서관의 미래 장서량을 추정하여 적정 서고의 면적이 산출됨
 -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이용대상과 특성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 짐³⁾
-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3 공공도서관의 기능

구 분	내 용
지식정보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평생교육	모든 계층의 이용자에게 정보증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지역사회문화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여가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가서비스 제공
생활편의	주민의 다양한 민원서비스 대행 및 생활정보 제공

자료: 장윤정(2017)

3) 성정희(2018), 국내 공공도서관 성과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도서관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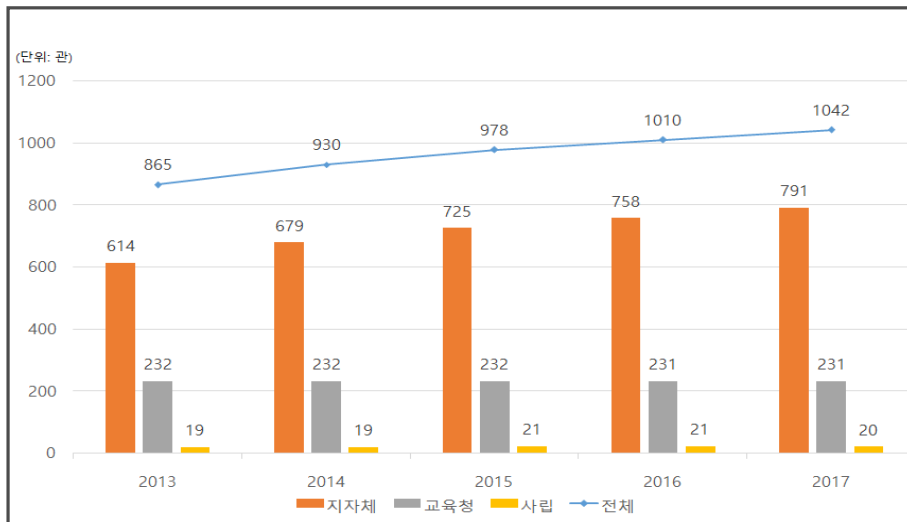
1) 시설

(1) 도서관 수

○ 도서관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42개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791개관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231개관, 사립 도서관이 20개관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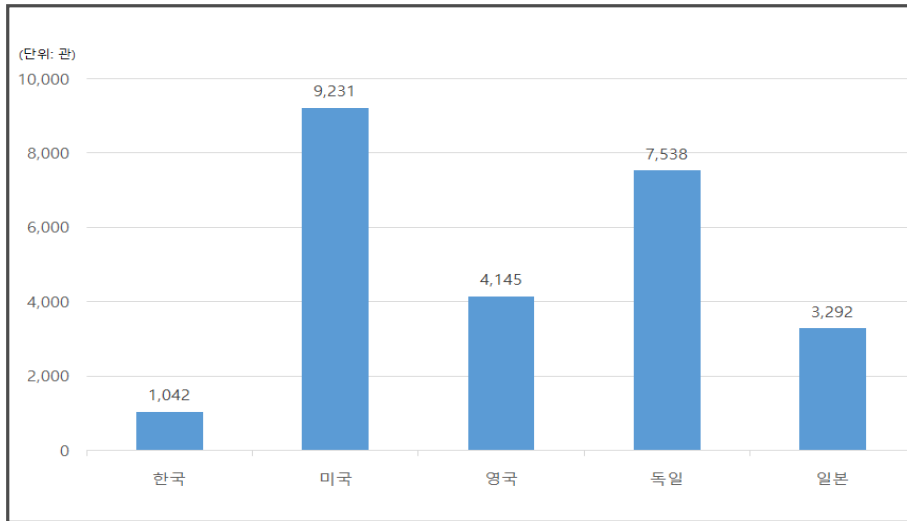
그림 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7.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국가별 공공도서관 수는 미국(9,231개관)이 가장 많으며, 독일(7,530개관), 영국(4,145개관), 일본(3,292개관) 순으로 한국(1,042개관)이 가장 적음

그림 3 국가별 공공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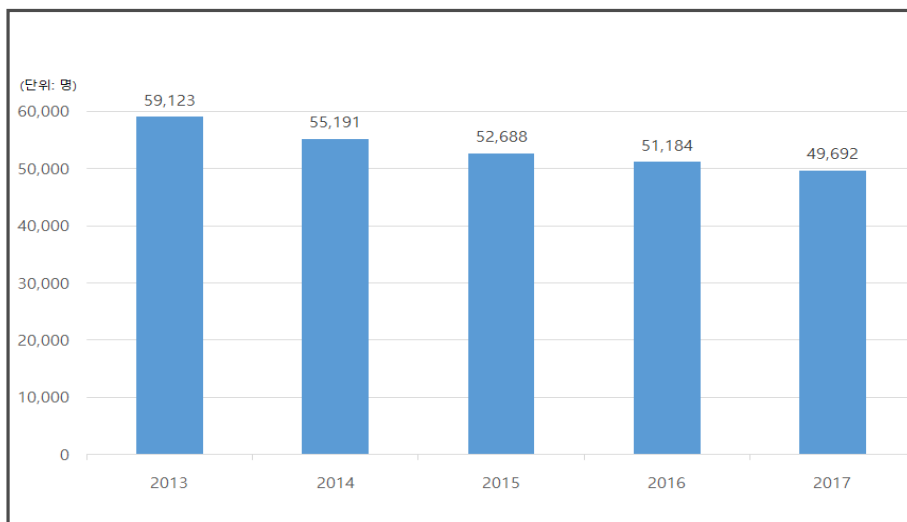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 통계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2)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

- 1관당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49,692명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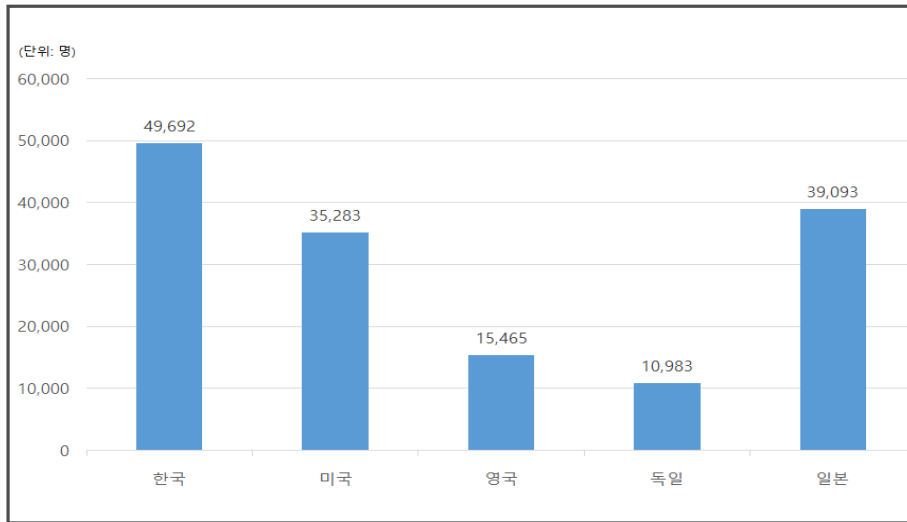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8.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인구 수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임. 1관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가별 1관당 인구 수는 독일(10,983명), 영국(15,465명), 미국(35,283명), 일본(39,093명) 순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한국(49,692)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 국가별 1관당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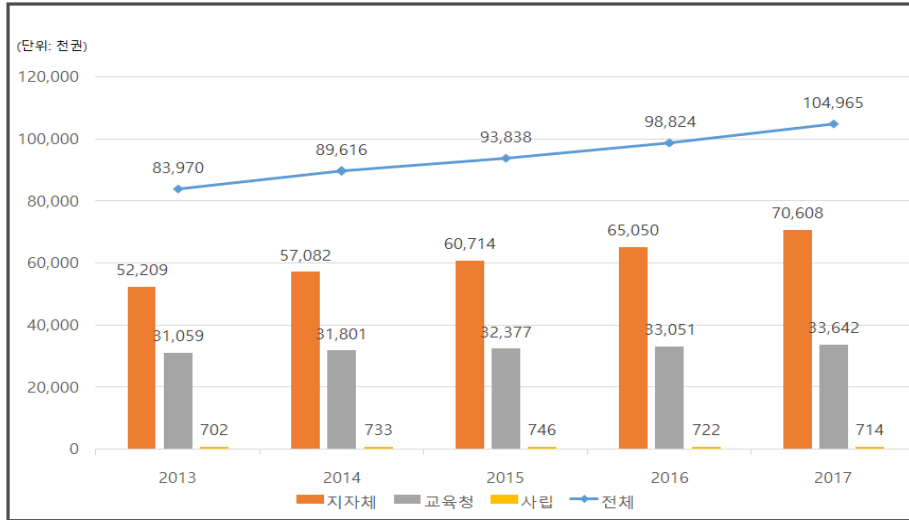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 통계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2) 장서

(1) 공공도서관 장서(인쇄자료) 수

- 장서(인쇄자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4,965천권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장서(인쇄자료)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70,608천권으로 가장 많고, 이에 비해 교육청 설립 도서관은 반 정도 수준인 33,642천권, 그 다음으로 사립 도서관이 714천권으로 조사됨
 - 이렇듯, 사립도서관은 도서관 수 뿐만 아니라 도서 수에 있어서도 적은 소장 수를 보임

그림 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장서(인쇄자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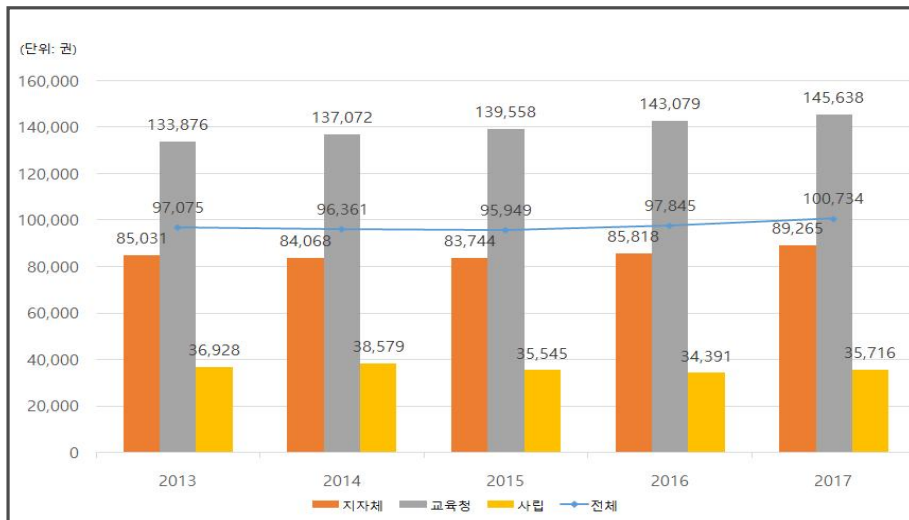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9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2) 공공도서관 설립주체별 1관당 장서(인쇄자료) 수

- 1관당 장서(인쇄자료) 수는 소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기준 100,734권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도서(인쇄)자료 수는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145,638권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89,265권, 사립도서관 35,716권으로 조사됨

그림 7 공공도서관 설립주체별 1관당 장서(인쇄)자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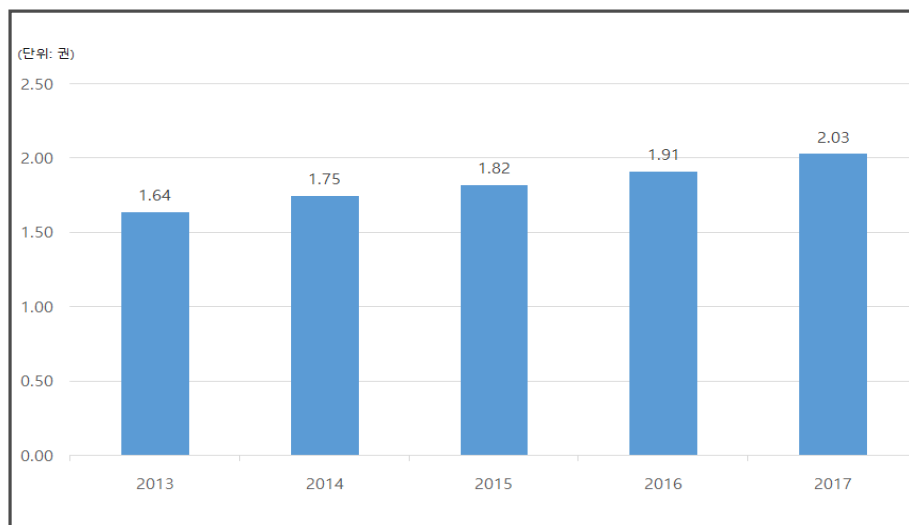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 10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3)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인쇄자료) 수

- 전국의 공공도서관 기준, 국민 1인당 장서(인쇄자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3권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함

그림 8 연도별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인쇄자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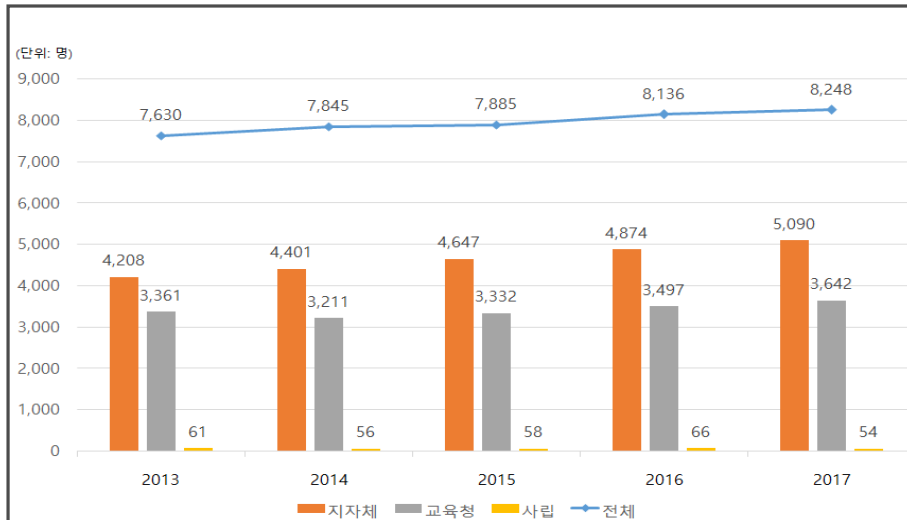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1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3) 인력

(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직원 수

- 정규 직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정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5,090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3,104명, 사립도서관 54명으로 조사됨

그림 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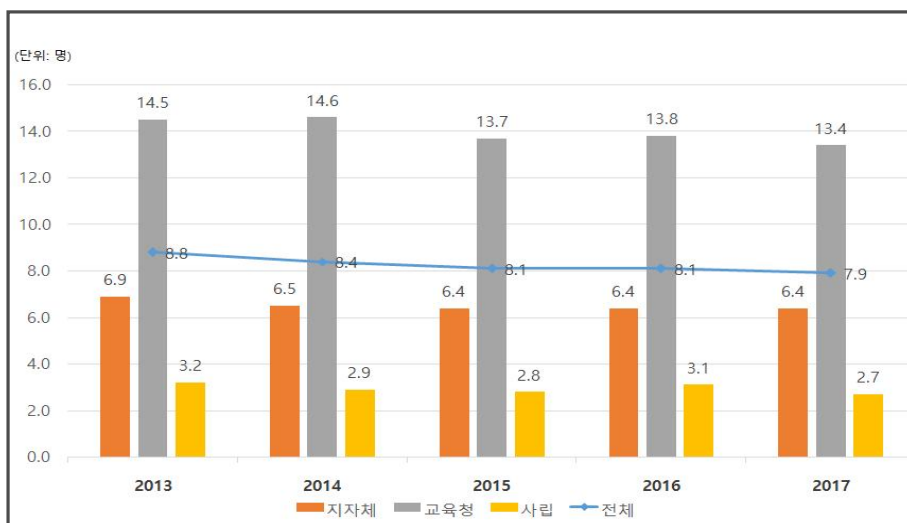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2) 1관당 정규 직원 수

○ 1관당 정규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음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정규 직원 수는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13.4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6.4명, 사립도서관 2.7명으로 조사됨

그림 10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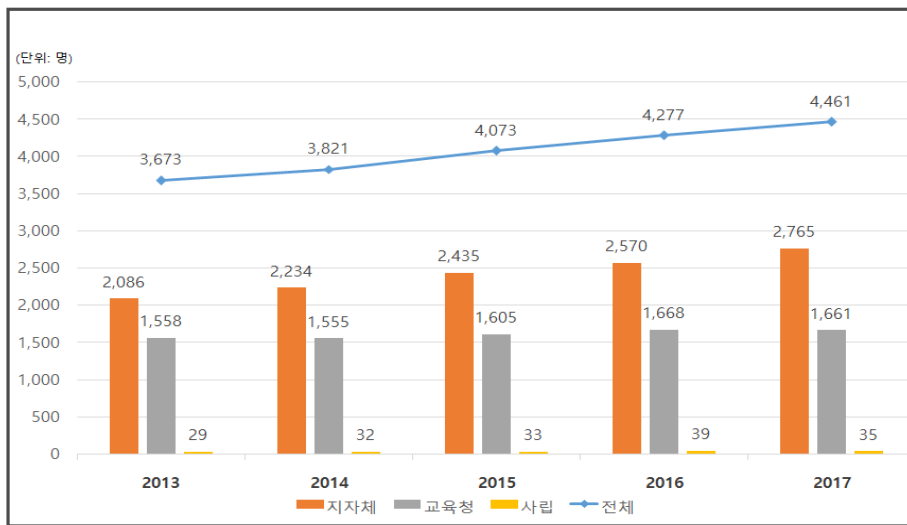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3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3) 정규 사서 직원 수

- 정규 사서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46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정규 사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2,765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661명, 사립도서관 35명으로 조사됨

그림 1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정규 사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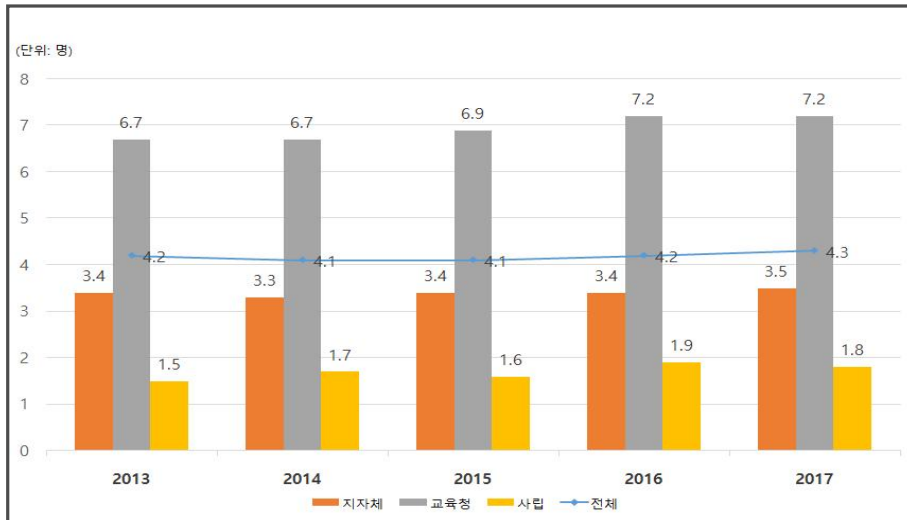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4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4) 1관당 정규 사서 직원 수

- 1관당 정규 사서 직원 수는 최근 5년간 큰 변동은 없으며, 2017년 기준 4.3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정규 사서 직원 수는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3.5명, 사립도서관 1.8명으로 조사됨

그림 1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 사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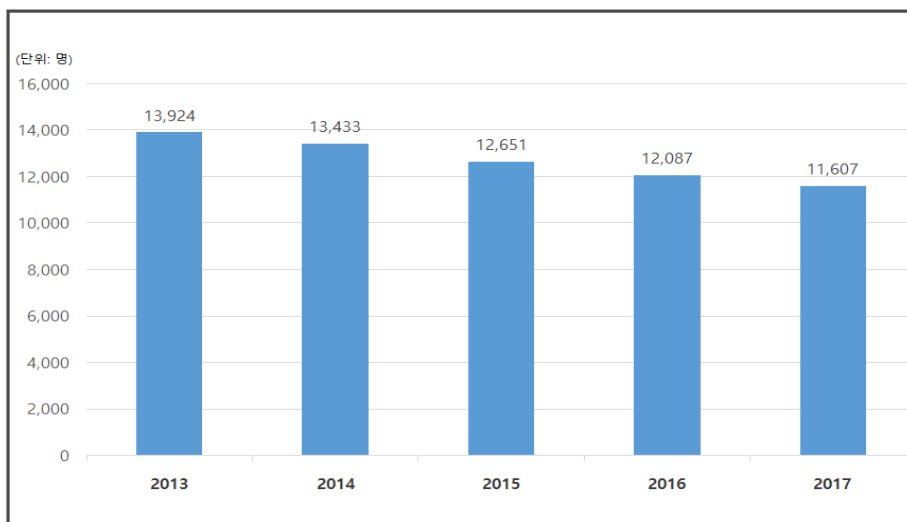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5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5)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1,607 명임

그림 13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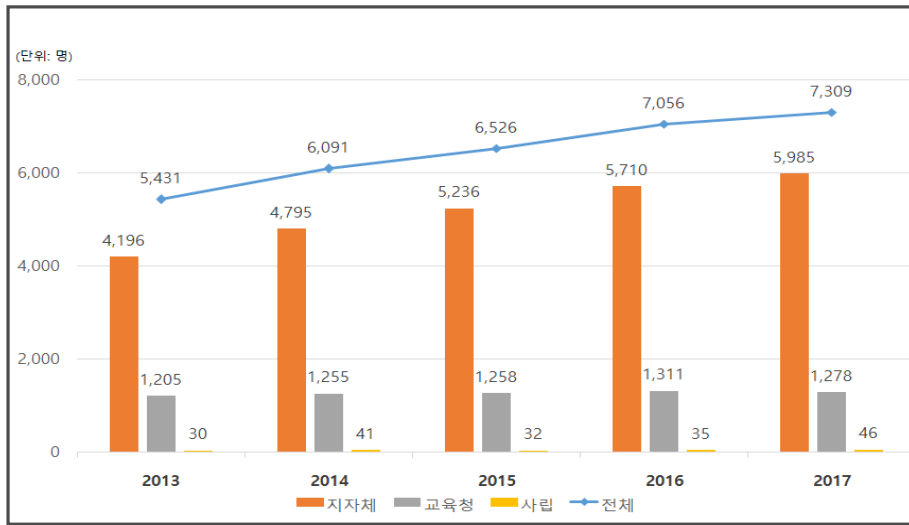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 통계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6) 공공도서관 비정규 직원 수

- 비정규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309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비정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5,985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278명, 사립도서관 46명으로 조사됨

그림 14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비정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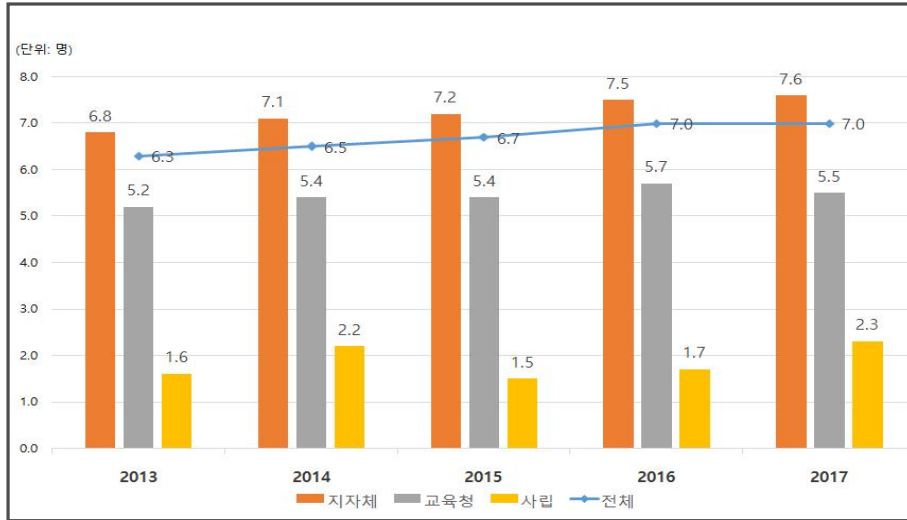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6을 참조하여 제작성함.

(7) 1관당 비정규 직원 수

- 1관당 비정규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7.0명으로 전년대와 동일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비정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5.5명, 사립도서관 2.3명으로 조사됨

그림 1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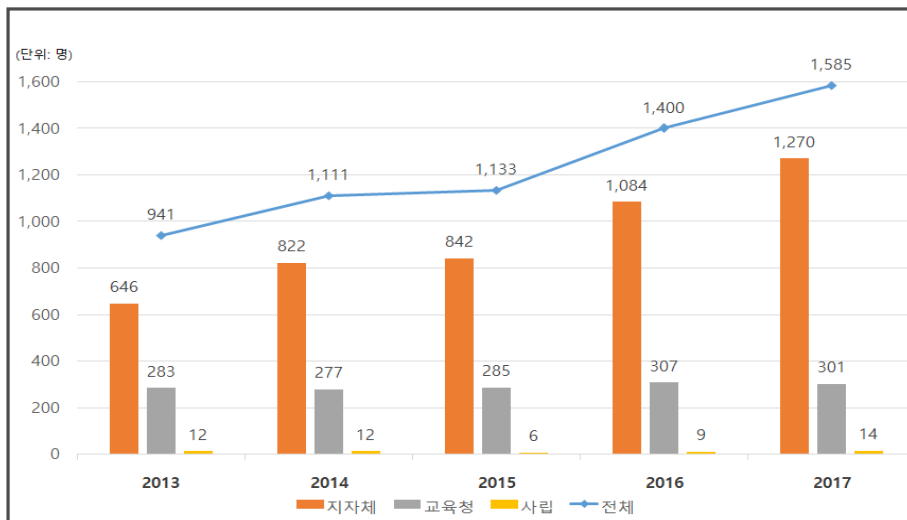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7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8) 비정규 사서 직원 수

○ 비정규 사서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585명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비정규 사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1,270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301명, 사립도서관 14명으로 조사됨

그림 1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비정규 사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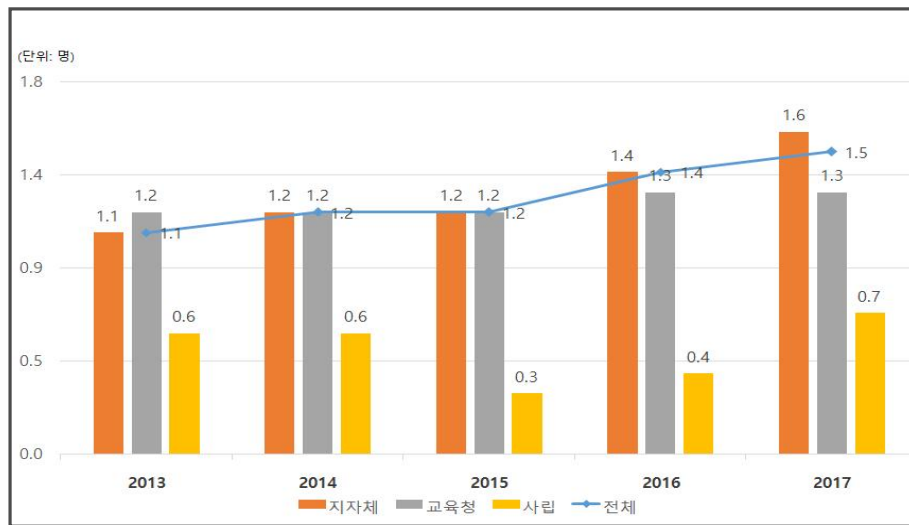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8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9)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5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 1.6명,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1.3명, 사립도서관 0.7명으로 조사됨

그림 17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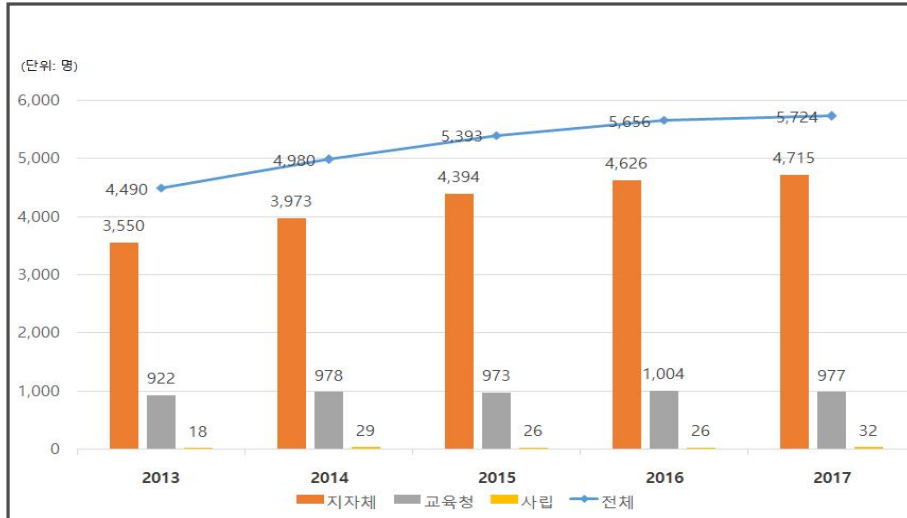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19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10) 비정규 기타 직원 수

- 비정규 기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5,724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비정규 기타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4,715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977명, 사립도서관 32명으로 조사됨

그림 18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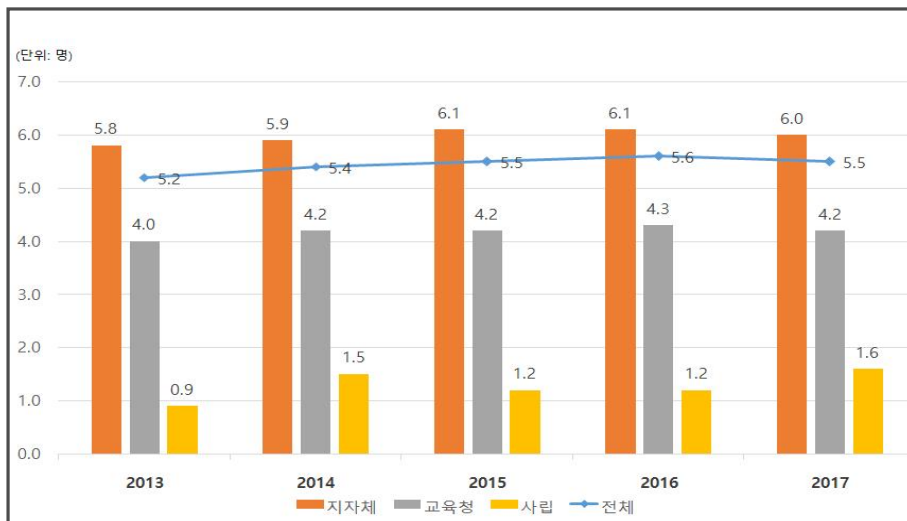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0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11) 1관당 비정규 기타 직원 수

- 1관당 비정규 기타 직원 수는 소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5.5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비정규 기타 직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4.2명, 사립도서관 1.6명으로 조사됨

그림 1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비정규 사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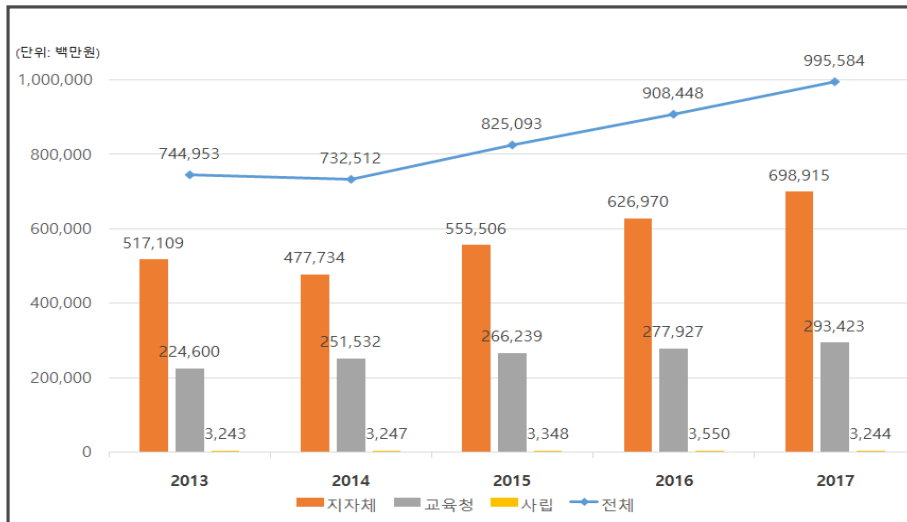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1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4) 공공도서관 재정 현황

(1) 공공도서관 총 결산액

- 총 결산액은 2014년 소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95,58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총 결산액은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698,91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293,423백만원, 사립도서관 3,244백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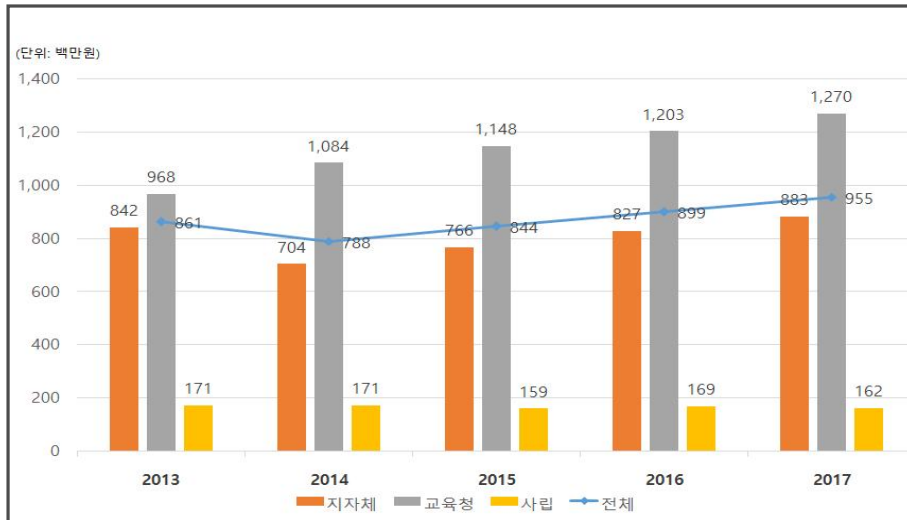
그림 20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총 결산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총 결산액은 2014년에 감소를 보였으나 대체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95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결산액은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1,270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883백만원, 사립도서관 162백만원으로 조사됨

그림 2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총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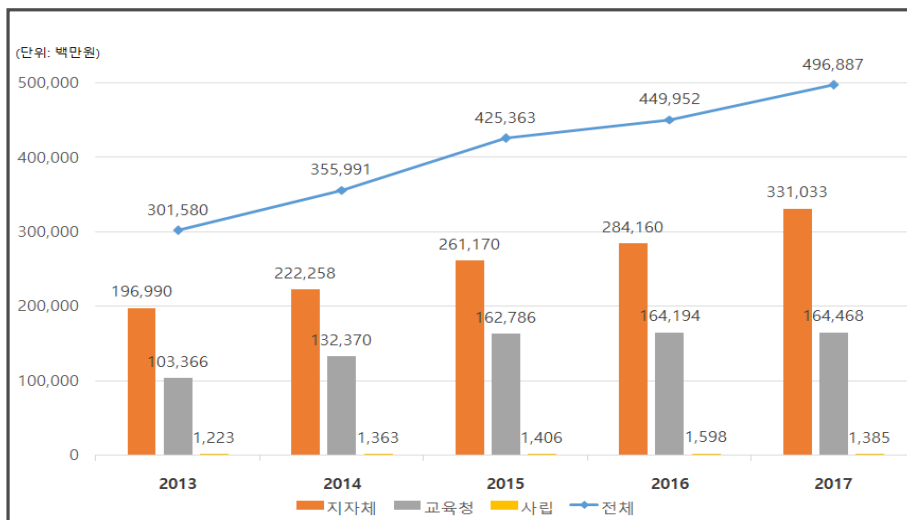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3을 참조하여 제작성함.

(2) 공공도서관 인건비

- 인건비 결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도서관 인건비 결산액은 496,88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인건비 결산액은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331,03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64,468백만원, 사립도서관 1,385백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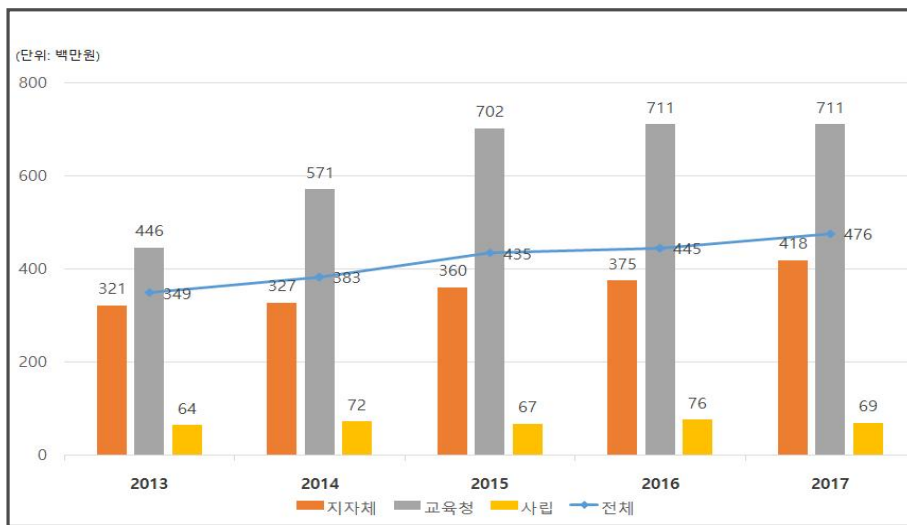
그림 2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인건비 결산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4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인건비 결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도서관 1관당 인건비 결산액은 47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인건비 결산액은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71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418백만원, 사립도서관 69백만원으로 조사됨

그림 23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건비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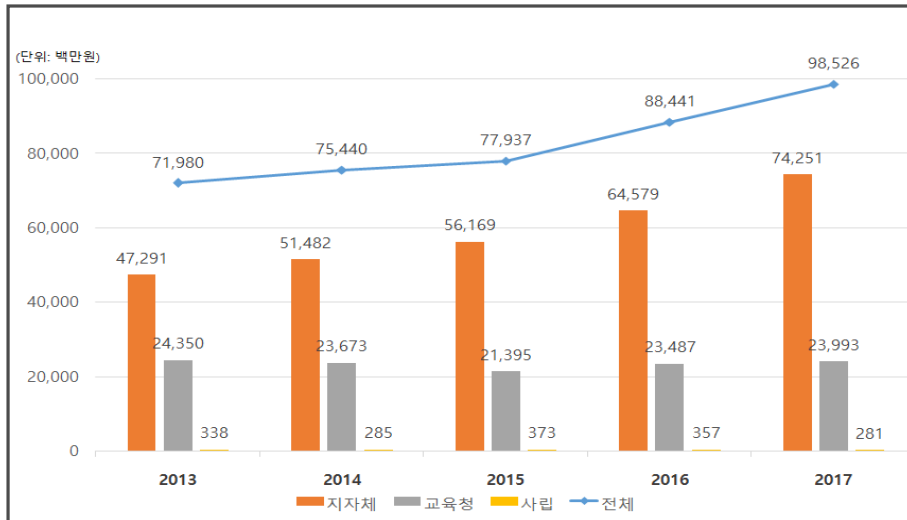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5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3)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98,52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74,25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23,993백만원, 사립도서관 281백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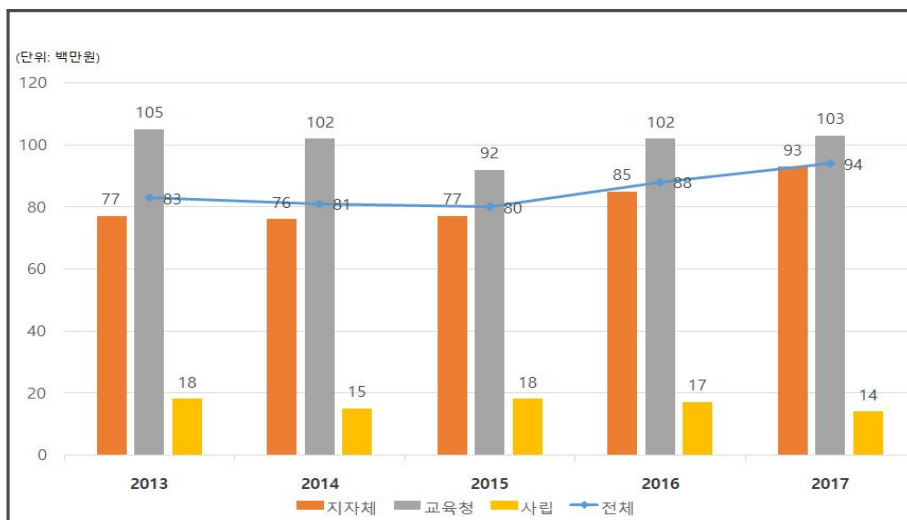
그림 24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6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2014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9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교육청 설립 도서관 10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93백만원, 사립도서관 14백만원으로 조사됨

그림 2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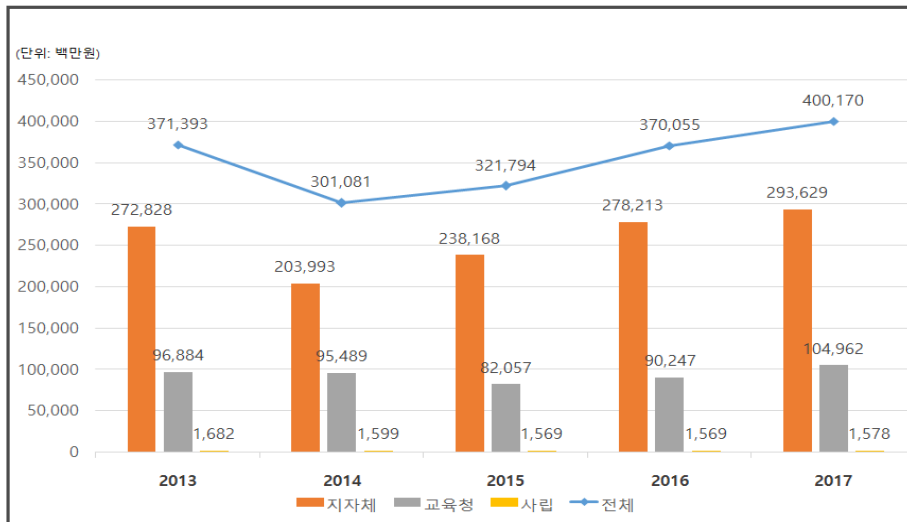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7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4) 공공도서관 운영비

- 운영비 결산액은 2014년에 감소를 보였으나 대체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00,17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운영비 결산액은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293,62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04,962백만원, 사립도서관 1,578백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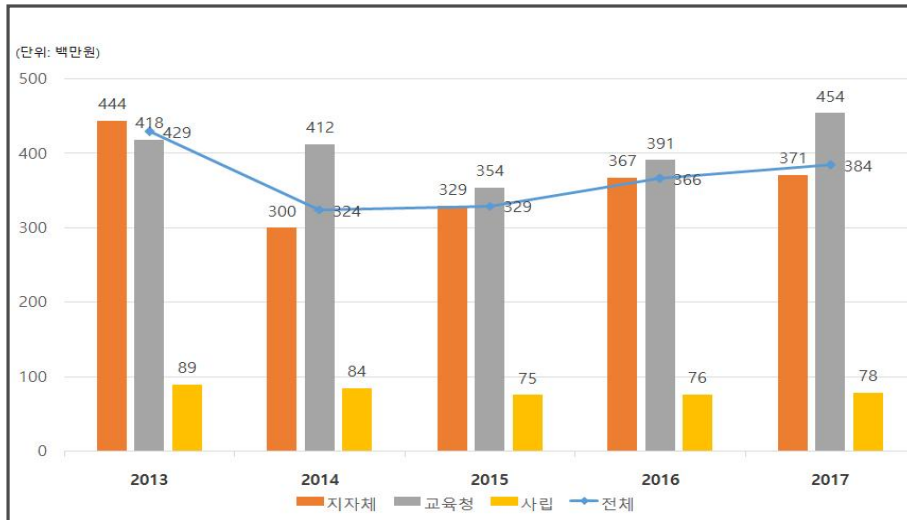
그림 2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운영비 결산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8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운영비 결산액은 2014년에 감소를 보였으나 대체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8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운영비 결산액은 교육청 설립 도서관 45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371백만원, 사립도서관 78백만원으로 조사됨

그림 27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운영비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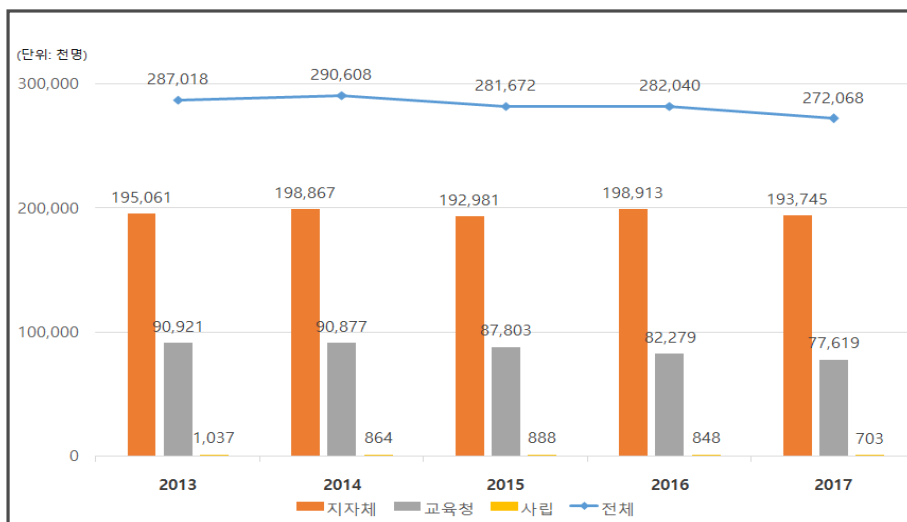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29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5) 이용자 서비스 현황

(1)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 2017년 방문자 수는 272,068천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방문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193,745천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77,619천명, 사립도서관 703천명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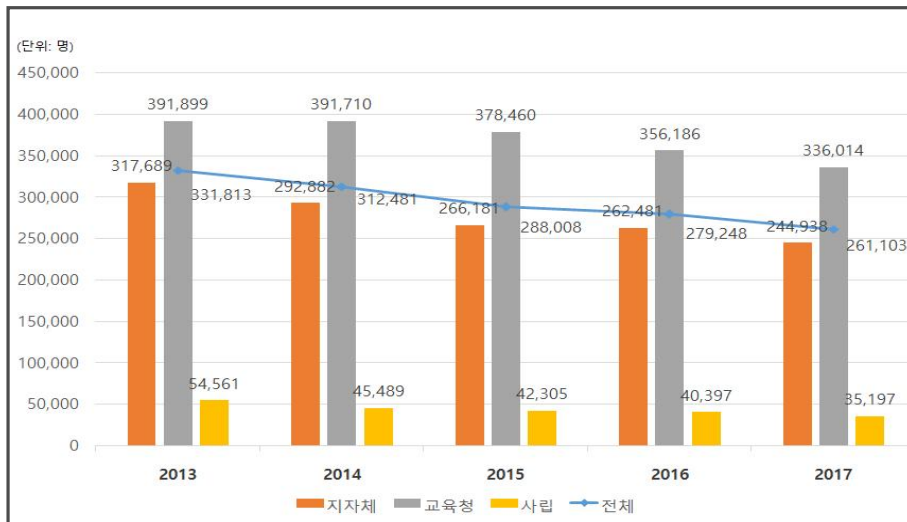
그림 28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0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방문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1관당 방문자 수는 261,103명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방문자 수는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336,014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244,938명, 사립도서관 35,197명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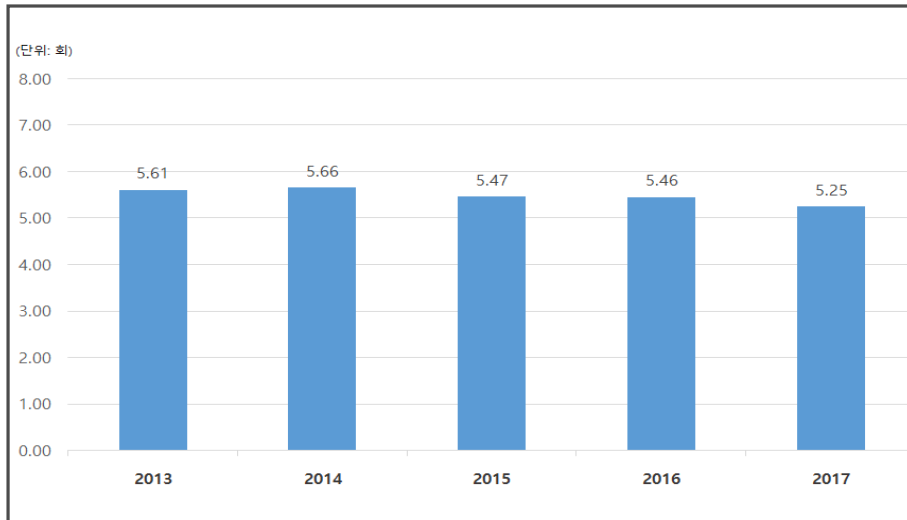
그림 29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1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17년에는 5.25회로 전년 대비 3.8% 감소함

그림 30 연도별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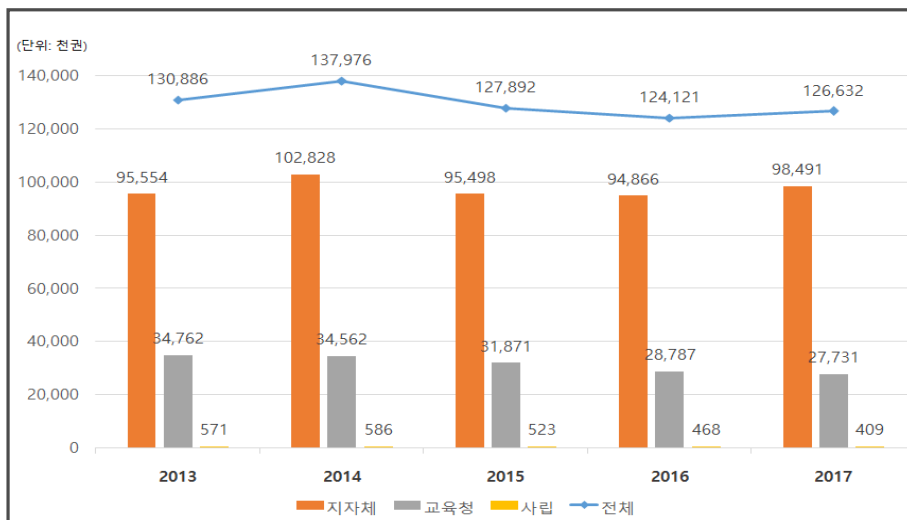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2) 공공도서관 대출 도서 수

- 대출 도서 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7년에는 126,632천권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대출 도서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98,491천권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27,731천권, 사립도서관 409천권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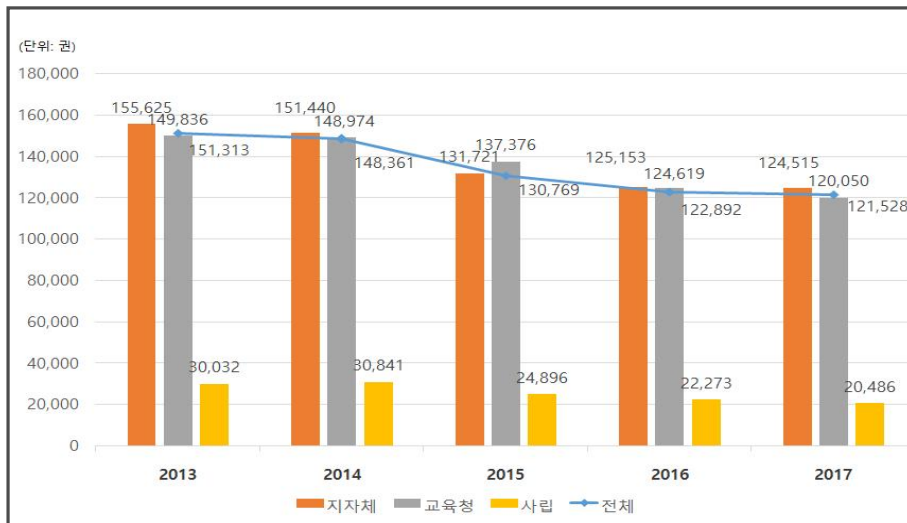
그림 31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대출 도서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3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대출 도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도서관 1관당 대출 도서 수는 121,528권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대출 도서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124,515권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20,050권, 사립도서관 20,486 권으로 조사됨

그림 32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 도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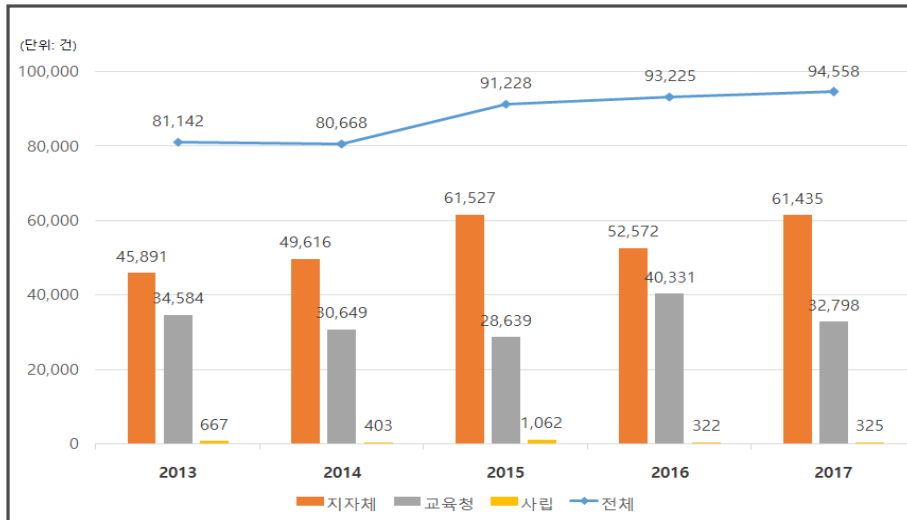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4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수는 2014년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4,558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프로그램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61,435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32,798건, 사립도서관 325건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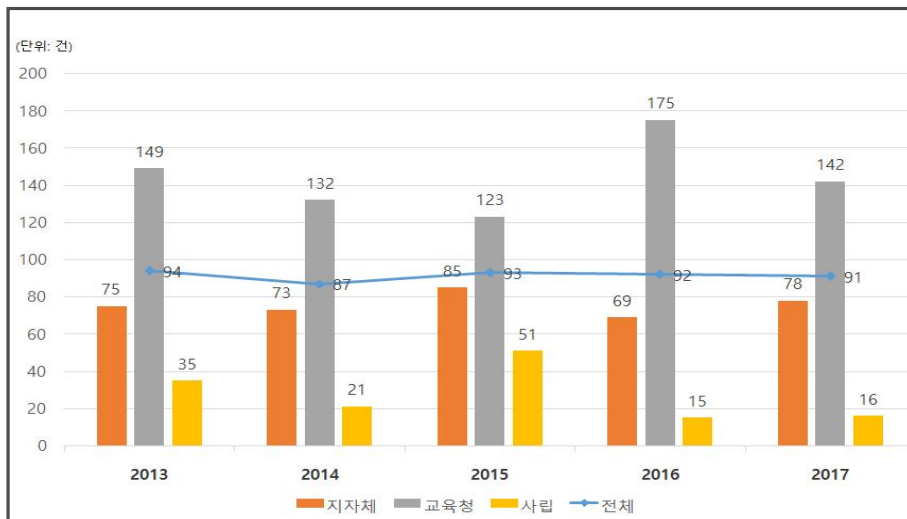
그림 33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5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프로그램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프로그램 수는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142건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78건, 사립도서관 16건으로 조사됨

그림 34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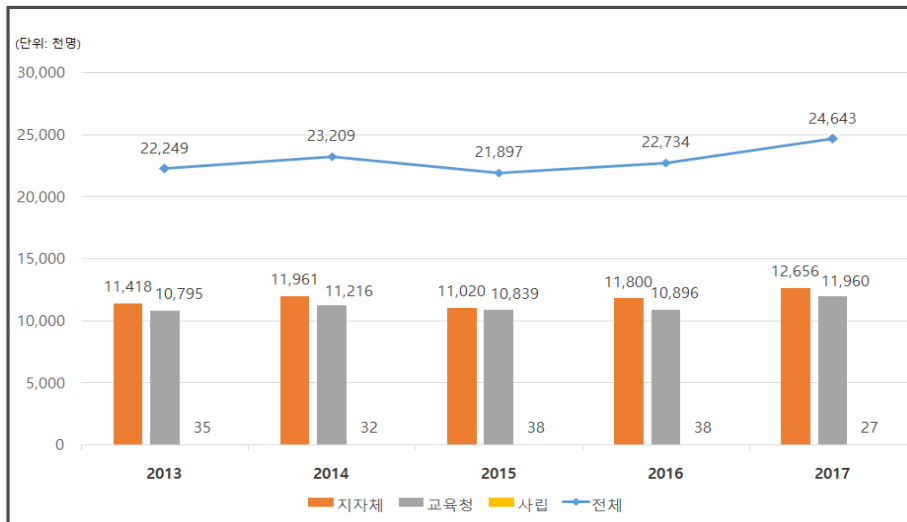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6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4)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15년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4,643천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지자체 설립 도서관이 12,656천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설립 도서관 11,960천명, 사립도서관 27천명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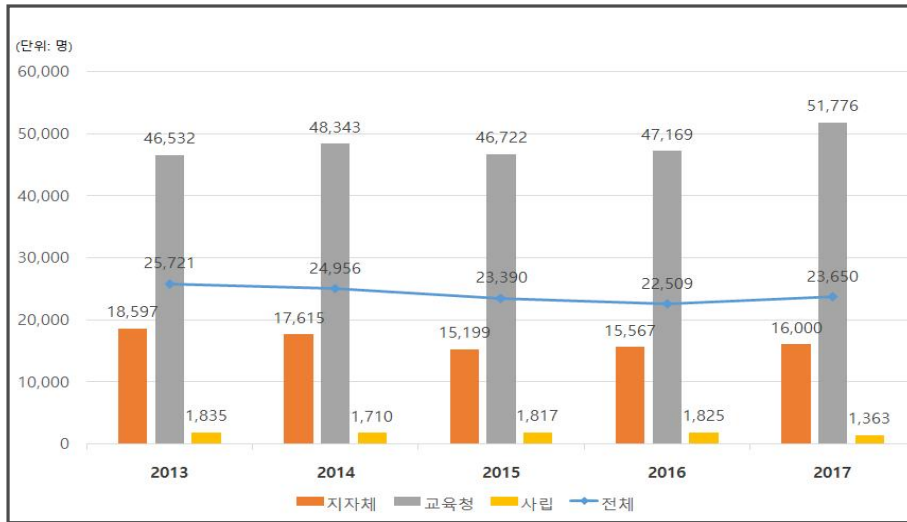
그림 35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7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 1관당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16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관당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3,650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함
- 2017년 기준, 설립주체별 1관당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교육청 설립 도서관이 51,776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설립 도서관 16,000명, 사립도서관 1,363명으로 조사됨

그림 3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1관당 프로그램 참여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P.38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제2절 「도서관법」 관련 논의

1. 「도서관법」의 현황

-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되어 1987년 전부 개정된 뒤, 2006년부터 현재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음
- 현재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 여건, 자료의 종류, 도서관의 기능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음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표 24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관련법령의 변천과 특징

법령	영향요인	의의
도서관법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도서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 역할의 필요성 대두 	도서관 육성 발전의 기초
도서관법 전부개정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개념을 기존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인 기능수행으로 도서관의 개념 확대 •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제도 개선의 요구 대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제21조 제1항)
도서관진흥 법 제정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신장 요구 •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 이용과 유통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 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이 맡도록 함 - 도서관서비스를 전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의 시설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의 요구 • 독서기회 확대 제공에 대한 국민적 요구 	
도서관법 전부개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문화체험·학습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요청 • 지식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 요구 •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틀의 구축 필요성 대두 	기존 법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법함

출처: 이명옥(200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박동철(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표 25 통치시기별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법

내 용 시대별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련 법규	도서관법 관련 주요사항
제1-2공화국 (1948~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정청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 - 도서관업무 '문화국 성인교육과' 	관련 법규 없음	정부수립 직제에 도서관 정책 전담 부서 없음
제3-4공화국 (1961~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재건 5개년계획 수립 - 교육자치제 부활('64).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 관할부서 이원화 	도서관법 제적('63), 동법 시행령('65)	- 전문 4장: 총칙, 공공/학교 도서관, 벌칙
제5공화국 (1981~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 문화정책 발표('81) -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도서관법 개정. 시설과 장서 확충 등 도서관 발전방안 당 정책 사업으로 확정('83) 	도서관법 개정('87)	- 전문 7장: 대학/전문/특수 도서관, 도서관정보 협력망 추가
제6공화국(1988~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편 문화부 탄생('90)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부 이관('91) - 도서관 전담부서: 교육부 사회교육과→문화부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법 제정('91)	- 전문 8장: 보칙 추가
문민정부 (1993~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 문화체육부로 개편 - 도서관정책과와 박물관과 통합, 도서관박물관과로 축소 - IMF('97.12)로 조직구조조정 실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94)	- 전문 10장: 문고, 독서진흥 추가
국민의정부(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 수립('00)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02) -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02) 	"	"
참여정부 (2003~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박물관과 폐지('04) 문화정책팀과 국립중앙도서관 이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07)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07) 	도서관법 전부 개정('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9장: 도서관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지식정보격차 해소 추가 - 도서관협력망, 독서진흥 삭제
이명박정부 (2008~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09) - 전국도서관통계시스템 개통('09) -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12) - 독서문화진흥업무를 미디어정책국에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10)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 전문 3장: 작은도서관 체계적 지원 및 진흥 근거

출처: 민지영(2015)

- 현재, 「도서관법」 개정(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7.2.7.)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및 개정(안) 마련이 필요
 - * 현재 교문위 소위에 상정('17.9.19.)되어 있으며, '18년 국회통과 목표⁴⁾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체계정비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 도출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⁵⁾
-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핵심쟁점인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등록요건(사서배치, 시설, 장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 등록제를 통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도서관 등록제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도서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의 경우, 1988년 도서관 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 기본인력(사서 3명)과 증원인력(면적과 장서를 반영)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30년간 변화가 없음
 -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에 대한 현실성(현장 실정) 부족, 사회 변화에 대한 미반영⁶⁾ 등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괄목할만한 도서관 발전과 대조적으로 크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임.⁷⁾

4)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2

5)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2

6)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10.

7) 권나현,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 분석

표 26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의 변화

구분	사서배치기준	결정변수	비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2086호, 1965) 제6조 제2항	제6조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에는 그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3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65평방미터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건물면적	시행령 본문에 규정
도서관법 시행령 (제12506호, 1988) 제4조 제1항 별표2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건물면적, 장서	사립 공공 도서관, 공립문고 제외
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 2012) 제4조 제1항 별표2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건물면적, 장서	사립 공공 도서관, 작은도서관 제외

자료 : 윤희운, 도서관 사서배치의 법적적 쟁점과 실현 방안, 사서배치기준 설문조사 결과 공유 토론회 자료집 p. 8.

- 또한, 도서관법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도서관법 관련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윤희운(2007)은 제1차 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과 공공도서관의 자치단체로 일원화를 통한 도서관 행정체계의 개편을 주장하였음. 또한 법령에 규정된 지방 도서관·정보정책시스템을 법령에 규정된 대로 제도화할 것과 도서관 직무분석과 사서직제 개선,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기준 개정, 도서관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요청,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연계성 강화를 제안함⁸⁾
- 윤희운(2012)은 1988년 이래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변화가 없고, 권장기준 또한 2003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봉사 인구를 기준으로 직원을 배치할 것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등에도 사서직 상근직원이 1명 이상 배치될 것,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적어도 32명을 기본인력으로

8) 민지영(2015)

책정할 것을 제안함⁹⁾

- 정현태, 정미연(2013)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 도서관사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례 명칭에서 ‘도서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자치단체 내 모든 도서관서비스체를 종합하는 지역 단위 공공도서관 설치·운영·조례의 형식으로 정비하여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함.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법상의 사업추진을 위해 도서관사업과 연동할 것을 제안함¹⁰⁾
- 임두호 등(2009)는 법에 명시된 . 공공도서관의 6가지 기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뒤, 2009년도 공공도서관 평가지표가 이 6개 기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법에 의거한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공도서관의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함¹¹⁾
- 곽동철(2011)은 현행 도서관법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 도서관법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분리됐듯이 향후 타관종 도서관을 위한 법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
- 이승원(2011)은 작은도서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전국의 작은도서관 80%를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시가 없이 공립 작은도서관과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윤혜영(2012)는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현재의 사업소에서 직속기관 수준으로의 상향조정해야 하며,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은 사서직으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사서직 공무원의 최고 직급을 4급에서 2급 내지는 3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민지영(2015)은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제 11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시설, 자료, 사서에 대

9) 민지영(2015)

10) 민지영(2015)

11) 민지영(2015)

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 공공도서관으로 의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 2조의 내용을 명확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또한 시설이나 사서에 대한 규정이 도서관 현장에 걸맞도록 제 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개정해야 하며, 기관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서관 체계를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명칭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함.

표 27 도서관법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도서관법 관련 지적	제시방안
윤희윤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문화선진국의 수준에 맞추어 양적지표의 달성과 질적 충실화 필요 - 사서직 관장제를 회피하는 행정적 파행, 사서직원수의 절대 부족, 행정기관화와 위탁경영, 직할사업소화 및 행정적 간섭과 통제, 퇴직 공무원의 관장보임 차단 - 도서관의 직무분석과 사서직제 개선 시급 -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 - 공공도서관의 자치단체로 일원화로 인한 도서관 행정체계의 난맥 정비 - 도서관 직무분석과 사서직제 개선 -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기준 개정 -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요청 -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연계성 강화
임두호 등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상 지표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상 지표가 반영된 평가지표 제안
이승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전국의 작은도서관 80%를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시가 없이 공립 작은도서관과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간접적인 지원(공공도서관 협력, 운영인력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분리하여 지원개선방안 제시
윤희윤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시행령 상 사서배치기준 및 관장기준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인구로 기준 변경 - 작은도서관 사서 배치 - 지역대표도서관 인원(32명) 규정
곽동철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이 일반법 위치임 - 도서관법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위주의 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대해 별도의 진흥법 제정 촉구
윤혜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조직체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현재의 사업소에서 직속기관 수준으로의 상향조정 필요 -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은 사서직으로 임명, 사서직 공무원의 최고 직급을 4급에서 2급 내지는 3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 필요
정현태 , 정미연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도서관 조례 법제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설과 구분되는 도서관 명칭의 고수 - 자치단체 내 모든 도서관서비스를 종합하는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설치·운영조례 통합 운영
민지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관종을 어우르지 못함 - 법령 구성상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치가 모호하며, 관종별 도서관을 나눈 기준의 근거가 없고 자의적임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사서 수, 관장의 자격증 여부조차 강제하지 못함 - 법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상급 기관의 관리 감독에만 기댈 뿐 도서관법이 정한 제재가 부족함 - 제적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고, 통일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무관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제11조의 규정을 개정 - 시설, 자료, 사서에 대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 공공도서관으로 의제하는 것이 필요, 도서관법 제2조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함 - 제5조를 도서관 현장에 걸맞으면서도 도서관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개정 - 공공도서관과 관계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 - 도서관의 이름을 이용해 영리사업을 하거나 대중을 호도하는 경우를 대비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자료 : 민지영(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이에 개정안은 도서관 관련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서관법」을 기본법적 성격으로 하고, 도서관의 구분 체계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¹²⁾
-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 및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및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역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¹³⁾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
 -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 할 필요성이 제기됨¹⁴⁾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확대, 도서관 체계정비,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정립
 -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도서관을 운영과 설립 주체,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체계를 재정비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¹⁵⁾

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p. 5.

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p. 5.

14)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7-8.

15)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8.

2. 도서관 등록요건(사서 배치, 시설, 장서 기준)의 개정 필요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공공도서관설립으로 공공도서관 핵심지표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¹⁶⁾ 그 이면에는 신규 사서의 충원없이 기존 직원의 재배치로 도서관 사서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¹⁷⁾
- 이에 따라 도서관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하락과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표 28 공립 공공도서관 현황 : 2016말 기준

구분	전체(N=989)	1관당 평균	최저	최고
장서수(권)	98,688,449	99,786	3,011	808,385
시설 연면적(제곱미터)	2,561,675	2,590	166	22,485
봉사대상 인구수(명)	51,506,261	52,079	10,001	278,779
정규직원 총수(명)	8,070	8.2	0	61
정규직 사서현원(명)	4,238	4.3	0	38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 권나현(2017)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통계자료는 2016년 12월말 현재 국가도서관통계로 전국의 총 1,010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사립공공도서관 21개를 제외한 공립공공도서관 989개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봉사대상 인구수준을 반영하여 면적과 장서규모를 결정하고, 그 면적과 장서규모를 반영하여 사서규모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국 사서수는 봉사인구수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국내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사서직원에 한하여 최소 3명의 기본인력을 배치하고 연면적 및 장서수가 일정규모 이상 증가할 때마다 각각 1명을 증원하도록

16)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2

17) 조현양, 김홍렬, 류희경(2014), 공공도서관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p. 19

록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법정 사서 배치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989개 공립 공공도서관에 사서가 최소 23,222명이 필요하나 단 4,238명만 배치되어 있어 그 충원율이 18.2%에 불과함.¹⁸⁾
- 현재 사서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도서관이 법정 최소 기본인력도 배치하지 않는 열악한 실태와 함께 사서수를 “봉사대상인구”에 따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연면적과 장서수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현행 법정 배치기준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큼.¹⁹⁾
- 면적과 장서를 양대 변수로 삼아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마다 증원하는 방식인 현행 배치기준은 사서직렬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²⁰⁾
- 또한 사서 3명이 왜 기본인력인지, 면적과 장서를 증원기준으로 삼는 근거는 무엇인지, 양대 기준치(면적 330㎡, 장서 6,000권)의 타당성 또한 결여됨²¹⁾
 - 도서관 시설은 대개 연면적과 장서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씩, 장서 6,000권씩 증가할 때마다 각기 사서 1명씩 증원시키도록 하고 있어, 증원이 중복 계상되어 인력이 과중한 수준으로 산출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됨.²²⁾

18)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7
19)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87.
20) 윤희윤, 토론회자료집, p. 10.
21) 윤희윤, 토론회자료집, p. 10.
22)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5.

표 29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과 산출 사례

구분	사서배치기준	산출 사례 (면적 3,000㎡, 장서 100,000만권)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 기본인력 3명+증원인력 8명 (면적3,000㎡-330㎡=2,670㎡ ÷330㎡=8명)+ 증원인력 15명 (장서100,000권-6,000권÷6,000 권)= 26명)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 대상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자료 : 토론회 자료집 p. 14.

- 2016년말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에 집계된 정규직 사서인력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1) 현행 법정 기준 (2) 한국도서관기준 (3) IFLA국제기준을 각기 적용하여 사서 충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음.²³⁾
- 해외 여러 도서관 선진국들의 배치기준이 IFLA기준과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행 사서배치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을 입증하는 결과로, 사서배치기준의 개선을 시사함.

23)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4.

표 30 현 법정 기준, 한국도서관 기준, IFLA기준을 적용한 사서 총원율 산출 결과

현 사서수	(1) 현 기준 (연면적 330제곱미터 + 장서 6,000권)			(2)한국도서관 기준 (봉사대상인구 9,000명)		(3) IFLA기준 (봉사대상인구 4,200명)	
	법정 인원	부족 인원	총원율(%)	부족 인원	총원율(%)	부족 인원	총원율(%)
4,238	23,222	18,984	18.2	3,463	55.0	10,003	29.8

자료 :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4.

- 현행법에서는 직원배치기준을 사서에 한정하면서 전체 직원의 구성비율은 명시하지 않아 전체 직원 산출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IFLA는 물론 해외 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의 1/3을 사서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²⁴⁾
- 2018년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²⁵⁾한 결과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사서배치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기본인력 모형은 모두 3명이지만, 대상이 사서와 전체 직원으로 나누어지며, 증원인력을 산출할 때 봉사대상인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적으로 많았음
 - 행정·사무, 전기·시설, 평생교육 등 다른 직렬의 최소 인력도 배치해야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와 제28조(공공도서관)의 법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여러 직무분석 결과에서 비전문직 업무가 4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의 비사서직 인력도 필요함
- 또한 공공도서관 시설기준의 하한선은 264㎡²⁶⁾에 반해, 기본인력 배치기준에 왜 330㎡를 적용하는지, 기본장서 또한 최소기준은 3,000권인데 왜 6,000권

24)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2.

25) 응답자는 지방자치단체(정책담당자) 143명, 공공도서관(기관장) 668명, 공공도서관(사서) 1,053명, 기타 관계

자(학계·단체) 128명이다(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관련 설문조사 주요 결과”).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함²⁶⁾

- 많은 자치단체들이 봉사대상인구나 지역의 요구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정 사서수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장서량에 의한 증원 기준 역시, 법정 필요인력을 과도하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도서관 현장에서 장서의 최신성과 대출회전을 높이기 위해 장서폐기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못하거나, 장서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문제, 수장공간 부족 문제, 장서유지관리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는 결국 봉사대상인구를 인적배치기준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고 연면적과 장서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법적 기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1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 비교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비고
건물면적	264㎡ 이상	33㎡ 이상	· 면적 263㎡와 장서 2,999권은 공공 및 작은도서관을 구별하는 기준임 · 면적이 264㎡ 이상이면 공공도서관이고 그 미만이면 작은도서관이며, 장서 3,000권 이상이면 공공도서관이고 그 미만이면 작은도서관임 · 그럼에도 면적기준의 기본인력 배치는 3배 차이가 있음
기본장서	3,000권 이상	1,000권 이상	
사서	3명** (강제규정)	1명(임의규정)	

- 국제적으로 사서 인력배치에 활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봉사대상 인구수로, 이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73)²⁷⁾
- 국제적 보편성인 동시에 공무원 정원 산출의 핵심변수인 ‘봉사대상인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함

26) 윤희윤, 토론회자료집, p. 13.

27)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89.

- 현 정부의 기준인건비도 총액을 결정할 때 인구를 핵심변수로 하고 하부기관 수와 지역적 수요를 추가적 독립변수로 삼고 있음.
 -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기준도 봉사대상인구를 7개 구간(1만 미만, 1만-2만 미만, 2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30만-50만 미만, 50만 이상)으로 나누어 10만명 미만까지는 인구 9천명당 사서 1명을, 10만명 이상은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권나현(2017)의 연구에서 2009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결과 <표 8>과 같이 봉사대상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서관이 2009년 32.9%에서 2016년 6.2%로 크게 줄었음. 그러나 봉사대상인구 2만명 미만은 12.6%에서 11.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봉사인구가 1만명 미만인 도서관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²⁸⁾
 - 봉사대상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구획한 인구 구간별로 사서수 증원기준을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IFLA기준 및 한국도서관기준과 같이 봉사대상 인구 몇 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형태로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함. 더불어, 해외 많은 기준에서 채택하는 바, 서비스 목표수준을 기본·권장·우수 등 2~3단계로 차등화하여 수준별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인력배치기준에 탄력성을 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28)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2.

표 32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도서관 수(2016년말 기준 도서관 통계)

법정 봉사대상 인구 기준 구간	2009년말 기준			2016년말 기준*		
	도서관수 (N=570개관)	비율(%)	누적 비율(%)	도서관수 (N=989개관)	비율(%)	누적 비율(%)
2만명 미만	72	12.6	12.6	115	11.6	11.6
2 ~ 5만명 미만	146	25.6	38.2	401	40.5	52.2
5~10만명 미만	165	28.9	67.1	412	41.6	93.8
10~30만명 미만	156	27.4	94.5	61	6.2	100.0
30~50만명 미만	17	3.0	97.5	-	-	-
50만명 이상	14	2.5	100	-	-	-

*2016년 : 1만명 미만(0개관), 10~15만명(53개관 5.4%), 15~30만 미만(8개관 0.8%)
 자료 :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2.

- IFLA의 경우, 인구 2,000명당 직원 1인, 보다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인구 2,500명당 직원 1인을 적용하고 있으며(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73; 1986), 플로리다 주 역시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임(Florida Library Association 2015).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정 봉사대상인구수당 직원 1인으로 일괄 적용을 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도 인구구간 설정없이 최소, 권장으로 등급화된 서비스 수준에 인력배치비율을 달리 적용할 뿐임(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2012).²⁹⁾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인구 5만명당 1개관이지만, 2022년까지 4만명당 1개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봉사대상 인구 구간별 도서관 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특정 봉사인구 구간을 임의로 구획하여 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여겨짐. 법으로 인구구간을 묶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도서관 현장의 상황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³⁰⁾

29)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3.

30)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사서배치현황과 법정배치기준의 타당성분석 p193.

제3절 「도서관법」 주요 내용

○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3 「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조 문	내 용
안 제4조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국립, 공립, 사립도서관) · 도서관을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
안 제8조	·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본법이 적용
안 제10,11조	· 도서관 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설치
안 제13,1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5개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안 제16조	· 시·도에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 위해 광역도서관 서비스위원회 설치
안 제23조	·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
안 제29조	·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의무 및 이에 대한 경비 보조 등
안 제32, 33조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
안 제34조	· 국가, 지자체, 법인, 단체, 개인에 의한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
안 제35조	·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사서, 도서관자료,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국립도서관), 시·도지사(공립도서관), 시·군·구청장(사립도서관)에게 등록
안 제37조	· 도서관의 날 지정(4월 12일), 1주간의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개최
안 제46조	· 이 법에 따른 도서관, 사서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 불가

자료 :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9.

1. 도서관의 구분(설립주체별 및 종류별) 정의

- 도서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 국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도서관발전 시책, 사서 양성책임, 예산 지원 등)

3. 도서관 등록제 의무화

- 기존 사립도서관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
-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된 도서관은 1월 20일까지 도서관 운영현황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 * 운영통계 등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록 또는 등록취소 등이 발생하면 7일 이내 보고
- (등록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다만,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요건을 갖추어 운영해야 함

4. 도서관의 날 지정

-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으로 지정하고, 4월 12일부터 일주간 도서관 주간을 운영하여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도록 함³¹⁾

5. 명칭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지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로,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혼선 방지 및 관할 내 도서관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강화

31)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p. 8

제3장 해외의 도서관 관련 법제도 현황

제1절 유럽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제2절 미국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제3절 일본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제4절 시사점 도출 및 적용 가능성

제1절 유럽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1. 유럽(독일)의 공공도서관 현황

○ 독일 공공도서관 통계(2017년 현재)³²⁾

표 34 2017 독일 공공도서관 현황

2016년	접수 된 기관 수	본관 과분 관수	미디 어수(백만)	대출 총미 디어(백만)	직원	적극 이용 자(백 만)	도서(백만)	지출(백만 유로)	구입 비(백만 유로)
공공도서관	7.530	9.043	117	356,84	11.413	7,55	121,16	983	109
상근	2.016	3.258	92	323,56	11.121	6,14	108,77	941	95
비상근	5.514	5.785	25	33,26	292	1,40	12,39	41	14
학술도서관	244	707	256	82,25	11.673	2,80	-	992	337
국가/중앙전 문도서관	5	11	52	4,70	2.265	0,18	-	166	39
광역도서관	26	33	22	7,85	1.095	0,21	-	98	13
대학도서관	81	417	164	54,19	7.089	1,74	-	650	247
전문대학도 서관	132	246	18	15,51	1.224	0,67	-	78	39
총계	7.774	9.750	374	439,09	23.086	10,34	-	1.975	447

출처: 독일도서관통계(Deutsche Bibliotheksstatistik: 2017.10.18.)

32) <https://wiki1.hbz-nrw.de/display/DBS/DBS+-+Deutsche+Bibliotheksstatistik>.

2.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및 서비스 제공 구조

-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자치행정의 실현
 - 공공도서관에 관한 한 주정부의 관할 사항이므로 연방차원에서는 별도의 공공도서관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는 각 주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무상으로는 게마인데(기초 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주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³³⁾
 - *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독일국립도서관(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DNB)의 설치 근거가 되는 독일국가도서관법(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 Bibliothek)은 존재.
 - ** 독일국립도서관(DNB)은 3개관으로 구성됨³⁴⁾
- 독일도서관 프랑크푸르트(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 1947년 설립되어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앙관이자 서지정보센터·납본도서관·외국의 국가도서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는 창구역할
- 독일서고 라이프찌히(Deutsche Bücherei Leipzig)
 - 1912년 설립되어 문학 분야를 주제로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통일 전에는 동독의 납본도서관 및 국가인쇄출판센터의 역할을 하였으며, 관내에 홀로코스트에 관한 국제연구도서관인 안네 프랑크 쇼아 도서관(The Anne Frank Shoah Library)와 도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문헌센터인 독일책과문헌박물관(Das Deutsche Buch und Schrift Museum)이 설치되어 있음
- 독일 음악기록관 베를린(Deutsche Musikarchiv Berlin):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악보, 음반, 예술자료 등의 음악자료에 대한 국가기록 및 보존소이자 서지정보센터 기능을 함

33) 정은경 외,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2012), 90면.

34) 정은경 외,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2012), 88-89면.

○ 4단계 수준으로 편성된 서비스 제공³⁵⁾

-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은 제1수준에서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인 제4수준으로 구성되어 국민 및 주민에게 정보와 연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제1수준부터 제4수준 공공도서관 간에는 기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성·창의성·지역성을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제1수준: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 교외나 시골마을의 작은도서관이나 분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가령 초등학교 근처의 다목적 시립 공간(체육시설, 작은도서관 시설 등으로 구성)에서 일종의 작은도서관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

그림 37 뮌스터시립도서관의 분관(Stadtbücherei Gievenbeck-Auenviertel)



출처: https://www.stadt-muenster.de/fileadmin/user_upload/stadt-muenster/42_buecherei/pics/gievenbeck_innen.jpg

- 제2수준: 인구 약 2-30만 규모의 도시의 도심중심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제1수준의 공공도서관들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35) 정은경 외, 주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2012), 90면.

는 경우

- 가령, 인구 33만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뮌스터시(Stadt Münster) 중심에 위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와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1수준 공공도서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뮌스터시립도서관을 들 수 있고,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6개의 분관(작은도서관 규모이며 건물이 시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의 일부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담당)이 상호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음

그림 38 뮌스터시립도서관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Muenster%2CStadt%2CStadtb%C3%BCcherei9477.JPG/1280px-Muenster%2CStadt%2CStadtb%C3%BCcherei9477.JPG>

- 제3수준: 대략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이들 지역에 설치된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함
- 가령, 독일 남부의 뮌헨(München)에 소재하는 바이에른 주립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 BSB)을 들 수 있음

그림 39 바이에른 주립도서관



출처: https://www.bsb-muenchen.de/fileadmin/bsb/bsb/998x400_bsb_aussen_schulz_5463.jpg

- 제4수준: 독일 연방의 국가적인 수준에서 장서와 정보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들이 이에 해당하며,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히, 베를린에 소재하는 연방국립공공도서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0 독일 연방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8/Deutsche_bibliothek.jpg/220px-Deutsche_bibliothek.jpg

3. 개정법률안 관련 시사점

○ 후원 및 지원·자율 및 책임성 원리

- 독일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서비스 역량이 뛰어난 국가 및 대도시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능력이 낮은 공공도서관에 대해 후원과 지원의 태도를 취함
- 국가도서관은 주로 연방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통계 및 EU가 요구하는 공공도서관 발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
- 공공도서관 정책의 실질적인 부분은 주정부가 각 주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집행하며 주정부는 정책적 부분을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 낮은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도시 중앙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위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직적 일관성 확보

- 주정부 단위에서 제1수준 공공도서관은 제2수준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지침을 준수하되, 지역 이용자의 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자율적 창의적으로 제공
- 제3수준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은 주정부 공공도서관에 해당하고 제2수준 공공도서관에 비해 많은 정책적 연구가 되어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설치되어 있는 제2수준의 공공도서관의 자율성과 지역적 수요를 외면한 지시 및 감독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2수준 공공도서관이 필요로 하되 제3수준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각 수준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

○ 수평적 거버넌스(협치) 확보

- 특히 수평적 거버넌스의 모습은 제1수준 공공도서관과 제2수준 공공도서관 간에 일반적으로 확보되고 있는데, 제1수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도서를 제2수준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주민에게 제공하는 협력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

- 제2수준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제1수준 공공도서관을 통해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어 있음
- 사서 및 파트타임 봉사자 등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은 대도시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이뤄짐으로써 연수 및 교육에 있어 유사,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초중고 내에는 학교 문고 수준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의 목록 정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제2수준 공공도서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은 분리 및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 수장이라는 시장(Bürgermeister) 하에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일개의 과(課)가 설치되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³⁶⁾, 한국에서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갈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의 경우, 각 수준별 도서관은 구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 측면에서 상위 도서관에서의 관리나 통제가 강하지 않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상기 검토한 내용만으로는 「도서관법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등록제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에는 한계가 있음

36) 독일 뮌스터시(Stadt Münster)의 경우 시장 하에 설치된 제4행정국 “학교·문화·스포츠”에서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https://www.bezreg-muenster.de/de/wir_ueber_uns/organisation/abteilungen_4/index.html).

제2절 미국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1. 공공도서관 법제 현황

- 미국에서는 미국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문화와 교육에 관한 법’은 각 주에 부속되었음
-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이 10조 조항을 좁게 해석하여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었음.
- 연방 차원에서 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하게 된 효시는 1956년에 제정된 「연방도서관서비스법」 (Federal Library Services Act)에 의한 농촌 도서관 진흥 사업이다. 그 후 연방차원의 도서관 관련법 제정은 점진적으로 직무의 규모를 확대하고 또한 그 대상을 도서관에서 박물관으로 확장해 나갔음
- 도서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로는 위에 제시한 「연방도서관서비스법」에 이어 1964년에 도시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및 공공 도서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건설법」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이 제정되었고, 1996년에는 고도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술법」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박물관 도서관서비스 법」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음
-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스 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이하 MLSA)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나누어 기존의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임
- 이를 위해 연방 독립 기관인 국립 인문 기금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아래에 박물관과 도서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책임을 가진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협회”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협회의 회장에게 박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MLSA에 의하여 미국 박물관 서비스위원회 (National Museum Services Board)를 두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도서관정보과학에 관한 국가위원회 법」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Act)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서관정보과학법」에 관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가 정책적 조언을 수행하게 되었음

-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0년의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10)은 제1부 일반규정, 제2부 도서관서비스와 기술, 제3부 박물관서비스, 제4부 도서관정보과학에 관한 국가위원회 법의 폐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1부에는 정의, 디렉터의 책임과 권한, 직원, 위원회, 상장과 포상, 연구와 분석, 행정재원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2부에는 목적, 예산의 승인, 예약과 할당, 계획, 보조금, 승인, 계약, 협정, 개정조항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도서관 등록 및 자료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일반규정 제3항에 직원(personal)규정이 있으며, 여기에는 “ 임직원의 수는 정규직 및 전문직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의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다양한 기준과는 거리가 멀
- 이 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SEC. 102. RESPONSIBILITIES OF DIRECTOR(디렉터의 책임)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디렉터는 미국인들의 필요로 하는 정보, 교육, 연구,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적절한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1) 관장은 각종 지식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조직하고 배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의회, 연방기관,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기관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2) 미국인들이 요구하는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방, 주, 지방정부기관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그러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 정책, 활동들의 개발을 조정해야 한다. (3) 미국인들의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데이터 및 장서 확충,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4)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미국의 정보와 교육인프라 속으로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5) 관장은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연방기관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체결해야 함

- 아울러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 미국 도서관 관련 법 상의 도서관 자료의 범위

관련 법	'자료'에 대한 규정	비고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법	미국인들의 필요로 하는 정보, 교육, 연구,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적절한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인들의 박물관,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데이터 및 장서 확충,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도서관자료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2. 개정법률안 관련 시사점

- 미국의 도서관법에서는 인력 및 자료,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은 각 주법이나 주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어 있음. 미국의 주요 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력, 장서, 시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상기의 장에 상술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함

제3절 일본의 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

- 일본의 공공도서관 관련 법제 현황을 개관하고 최근 개정 상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서관법 개정 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우선, 일본도서관 현황, 최근 개정된 도서관법 내용, 특히, 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일본의 공립도서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국민의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환경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교육기본법제12조참조)
- 또한 상위법을 받아 ‘사회교육을 위한 기관’(사회교육법제9조)이며, 「사회교육법」의 특별법에는 ‘도서, 기록,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조하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증진하고, 그의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서관법제2조)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국헌법의 관계로부터 보면, 학습권(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생존권,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기관이기도 함
- 결국, 도서관은 일본국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교육법, 도서관법이라는 법체계 가운데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짐
- 최고재판소 판결(2004년(수)930)에 있어서는 ‘공립도서관’은³⁷⁾ 주민에 대한

37) 일본의 공립 도서관은 서비스 전달을 위해 도서관의 임무와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 도서관협회는 1979년 총회에서 채택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개정 「図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1979年改訂」’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그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 “도서관”관임을 표명하고 있음. 또한 ‘모든 국민은 도서관 이용에 공평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종, 신조, 성별, 연령과 처한 조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사상, 의견, 그 외 각종의 정보를 포함한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고 교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장소라고 기술하고 있음³⁸⁾

1. 일본의 공공도서관 현황

1) 일본의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38)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2/012/attach/1406345.htm, 「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公立社會教育施設の所管の在り方等に關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4回)」 公立図書館の所管の在り方等に關する意見으로부터 참고

표 36 일본 공공도서관 경년변화

年	도서관 수	자동차 도서관 대수	전임직원수 ()내는 겸임	장서책수 (천권)	연도	연간수입 도서관 책수 (천권)	개인대출		단체대출		자료비(만엔)	
							등록자수 (천명)	대출수 (천점)	단체수	대출수 (천점)	전년도결산	금년도예산
1987	1,743	582	12,182(1,033)	133,290	86	12,615	13,898	237,259	30,647	10,541	181,2475	185,0455
1988	1,805	599	12,527(1,010)	142,684	87	13,331	14,822	250,708	32,034	10,960	190,6493	202,7140
1997	2,490	697	15,474(1,100)	249,649	96	19,320	30,608	432,874	73,985	10,757	363,6370	349,4209
1998	2,524	691	15,535(1,156)	263,121	97	19,318	33,091	453,373	72,134	9,860	369,6972	350,7383
2002	2,711	661	15,284(1,260)	310,165	01	19,617	41,445	546,287	100,913	11,682	353,9420	336,9791
2003	2,759	643	14,928(1,367)	321,811	02	19,867	42,705	571,064	151,325	12,670	354,1654	324,8000
2007	3,111	573	13,573(1,335)	356,713	06	18,104	48,089	640,860	178,225	16,892	317,0018	299,6510
2008	3,126	559	13,103(1,345)	374,729	07	18,588	50,428	656,563	166,182	18,402	309,4714	302,7561
2009	3,164	559	12,699(1,341)	386,000	08	18,661	51,377	691,684	166,528	20,246	306,6706	289,3203
2010	3,188	507	12,114(1,306)	393,292	09	18,095	52,706	711,715	183,663	20,060	307,4181	284,1626
2011	3,210	557	11,759(1,311)	400,119	10	17,949	53,444	716,181	196,432	20,269	294,1037	278,6075
2012	3,234	552	11,652(1,278)	410,224	11	18,956	54,126	714,971	183,712	20,635	289,4189	279,8192
2013	3,248	552	11,172(1,221)	417,547	12	17,577	54,792	711,494	179,818	22,285	285,8814	279,3171
2014	3,246	548	10,933(1,203)	423,828	13	17,282	55,290	695,277	176,931	23,010	285,4618	285,1733
2015	3,261	545	10,539(1,304)	430,993	14	16,308	55,726	690,480	202,775	23,553	280,6947	281,2894
2016	3,280	546	10,443(1,161)	436,961	15	16,467	57,509	703,517	212,262	24,303	284,4268	279,2309
2017	3,292	541	10,251(1,088)	442,822	16	16,361	57,323	691,471	217,722	24,664	282,8944	279,2514

주: 1. 사립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경년변화임
 2. 전임직원수의 1995년 이전의 수치에는 상근촉탁을 포함
 3. 대출수에는 시청각자료도 포함
 4. 자료비는 경상적경비
 5. 2003년부터 전전연도결산액이 됨
 6. 2016년 수치에 대해서는 권말에 2016년판 간행 후, 각관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수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 것을 게재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2016년판 수치 그대로 게재됨
 자료: <http://www.jla.or.jp/Portals/0/data/iinkai/図書館調査事業委員会/toukei/公共経年%202017.pdf>로부터 인용

2. 일본 공공도서관의 법제 현황

1) 일본 공공도서관의 법제 현황

- 일본의 도서관법은 제1장, 총칙(정의 도서관봉사, 사서 및 사서보, 그의 자격, 강습, 협력의 의뢰, 출판물의 수집), 제2장 공공도서관, 제3장 사립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총칙에서의 제1조에서는 도서관법의 목적을 명기하고 있음
 - 당 법의 목적은 사회교육법의 정신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획책하며, 국민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³⁹⁾
- 동법 제2조에서는 도서관을 정의하고 있음
 - 동법에서의 도서관은, 도서, 기록,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일반공중의 이용을 도모하며, 그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지방공공단체, 일본 적십자사 또는 민법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하는 것(학교에 부속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은 제외)를 말함
 - 이 도서관 중,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며, 일본 적십자사 또는 민법제34조 법인이 설치하는 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이라고 함
- 동법 제13조의 직원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전문적 직원(사서), 사무직원, 기술직원을 두게 하고 있음
 - (직원)제13조 : 공립도서관에 관장 및 해당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적 직원,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을 둔

39) 일본의 공립도서관은 1950년의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관 봉사'의 이념을 두고 있으며, 그 구현화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며, 1960~70년대에 '중소도시의 공립도서관 운영'(1963년), '시민 도서관'(1970년)을 지침으로 한 발전 방향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도서관을 진정한 주민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도서관원의 노력, 독서 환경의 정비의 충실을 구하기 위한 주민요구가 점점 높아져,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시책과 대응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음

- 동법 제27조(사립도서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사립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물자 확보의 원조가 가능함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제27조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도서관에 대해, 그 요구에 대응하여 필요한 물자의 확보에 있어 원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도서관 운용과 관련하여 사립도서관에 대한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함. 단 인적 지원부분에 있어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립도서관 사서설치 의무기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일본의 공공도서관 관련 기준 등

1)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2010년 12월 19일 문부과학성고시제 172호)⁴⁰⁾

- 도서관법(1950년법률제118호)제7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2001년문부과학성고시제132호)의 전부를 개정하여, 201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됨
 - 이 당시의 문부과학대신은 타나카 마키고(田中眞紀子)대신임
- 그 주요 목차를 보면, 제1총칙, 제2 공립도서관, 제3 사립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제1총칙에는 그 취지 및 설치 기본, 운영의 기본, 연계 및 협력, 저작권 등의 권리의 보호, 위기관리
 - 제2 공립도서관에는 시정촌립도서관의 관리운영, 도서관 자료, 도서관 서비스,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3 사립도서관에는 관리운영,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40) <http://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4/Default.aspx>를 참조

(1) 제1총칙

○ 우선 설치의 기본을 보면,

- 시(특별구를 포함)정촌은, 주민에 대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주민의 생활권, 도서관 이용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정촌립 도서관 및 분관 등의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촌립도서관과 공민관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시정촌 전역의 서비스망 정비에 노력한다.
-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도도부현도서관의 확충에 노력하며, 주민에 대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서관 미설치 정촌이 많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서비스 전체적인 진전을 기획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촌에 대한 시정촌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도와 조언 등을 수행함
- 공립도서관(법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함)의 설치에 있어서는, 서비스 대상 지역의 인구분포 및 인구구성, 면적, 지형, 교통망 등을 감안하고, 적절한 위치 및 필요한 도서관 시설의 바닥면적, 장서수장능력, 직원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두 번째, 운영의 기본을 보면,

- 도서관 설치자는, 해당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서 및 사서보의 확보 및 자질, 능력의 향상에 충분히 유의하고, 필요한 관리운영체제의 구축에 노력
- 시정촌립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지식,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전자적 자료를 포함)와 정보 제공 등의 이용자 및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실시와, 독서 활동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또한, 지역 정보거점으로서 이용자 및 주민의 요망과 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경 실정에 맞도록 운영에 노력
- 도도부현도서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해 노력함과 함께, 주민의 수용을 광역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등을 통해, 시정촌립도서관에 대한 원활한 도서관 운영의

확보의 지원 노력, 해당 도도부현내의 도서관간의 연락조정 등의 추진에 노력

- 사립도서관(법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립도서관을 말함)은 해당 도서관을 설치하는 법인의 목적 및 해당 도서관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넓게 공익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관의 설치자는 해당 도서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도서관의 사업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시 확보, 사업의 수준 유지 및 향상, 사서 및 사서보의 확보와 자질·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해당 관리자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이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함

(2) 공립도서관

- 다음으로, 공립도서관의 시청촌립도서관의 경우, “(6)시설·설비”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을 두고 시청촌립도서관의 시설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고 있음
 - 시청촌립도서관은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개가관람, 보존, 시청각자료의 시청, 정보의 검색·레퍼런스서비스, 집회·전시,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함
 - 시청촌립도서관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외국인, 그 외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가 도서관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대면 낭독실 등의 시설의 정비, 확대도서기 등 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기기의 정비, 점자 및 외국어 표시의 충실 등에 노력,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공간의 확보에 노력
- 또한, 제4항에는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 직원의 배치등:
 - 시청촌교육위원회는 시청촌립도서관의 관장으로서, 그 직원들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도서관 서비스, 그 외 도서관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지식·경험과 함께,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청촌교육위원회는 시청촌립도서관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필

요한 수의 사서 및 사서보를 확보하도록 그 적극적인 채용 및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이 직원의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자질 및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제1의 4의 2⁴¹⁾에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 등과의 계획적인 인사교류(복수의 시정촌 및 도도부현의 기관등과의 광역적인 인사교류를 포함)에 노력

· 시정촌립도서관에는 전항의 사서 및 사서보 이외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것

· 시정촌립도서관은 전문적 분야에 관련된 도서관서비스의 충실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적 지식·기술을 보유한 자의 협력을 얻도록 노력

(3) 도도부현립도서관

○ 도도부현립도서관(광역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역 내 도서관들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광역과 기초 도서관인 시정촌립도서관간의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시설 및 설비에 있어 도도부현립도서관은 제2의 2의 6에 준용⁴²⁾하는 제2의 1의 1의 (6)에 정한 시설 및 설비 이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기능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수, 조사연구, 시정촌립도서관의 요구에 대응한 자료보존 등

○ 아울러, 도도부현립도서관의 직원과 관련하여 제2의 2의 6에 의해 준용하는 제2의1의4의(1)⁴³⁾에 정하는 직원 이외에, 제2의 2의1, 3 및 4에 제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41) 제1의4의2(연계·협력):도서관은 전항의 활동 실시에 있어서는 도서관 상호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립국회도서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부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의 도서시설, 학교, 박물관 및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 관계행정기관 및 민간 조사연구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에도 노력

42) 제2의2의 6: 제2의 1에 정한 시정촌립도서관에 관한 기준은 도도부현립도서관에 준용한다.

43) “1 市町村教育委員會は、市町村立図書館の館長として、その職責にかんがみ、図書館サービスその他の図書館の運営及び行政に必要な知識・経験とともに、司書となる資格を有する者を任命することが望ましい。”

- 제2의 2의 1,3 및 4:
 - 1. 지역내의 도서관에의 지원
 - 3. 조사연구
 - 4. 도서관 자료⁴⁴⁾

(4) 사립도서관

- 사립도서관은 제3의1의 4항에 시설·설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사립도서관은 그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달성하도록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립도서관은 ‘제3의2의 4항 직원’의 규정에서 사서 및 사서보를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사립도서관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사서 및 사서보, 그 외 직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5) 목표 설정과 기준 제시

- 일본 도서관협회에 따르면 ‘공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에 관하여(보고)’에서 도서관 서비스 계획적 실시 및 자기평가 등을 위해 각 도서관이 각각 적절한 지표를 선정함
- 이와 함께, 이것과 관련하여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인 도서관 서비스 실시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및 수치목표를 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장서책수, 개가책수, 개가에 접하는 신규도서비율, 시청각 자료접수, 연간구입 잡지접수, 대출책수, 등록자수, 방문자수, 방문회수, 리퀘스트건수, 레퍼런스건

44) 이 때의 도서관 자료는 “도도부현립도서관은 제2의 2의 6에 의해 준용하는 제2의 1의 2에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의 실시에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1) 시정촌립도서관 등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의 정비 2) 고도화·다양화하는 도서관서비스에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향토자료 그 외 특정 분야에 관한 자료의 목록·색인 등의 정비 및 배포”를 말함

- 수, 집회·행사참가자수, 집회·행사참가회수, 이용자만족도
- 이러한 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 설정에 있어, 총수, 인구1인당 수, 인구 대비 비율, 등록자1인당 수, 직원 1인당 수 등에 대한 검토
 - 이러한 검토를 통한 기준 정비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음⁴⁵⁾

표 37 대출활동 상위 공립도서관의 정비 상황

인구단계별	1만인 미만	1~3만인	3~10만인	10~30만인	30만인 이상
평균인구	6,500	17,900	49,800	140,800	403,700
바닥면적(㎡)	896	1,591	2,937	5,437	8,853
장서수	53,067	93,373	213,984	547,353	850,812
개가수(내수)	44,615	73,657	153,181	335,203	558,362
개가에 차지하는 신규도서비율	9.8%	9.2%	10.9%	10.9%	9.1%
시청각자료접수	1,582	3,277	8,299	18,809	47,400
연간구입잡지접수	124	130	255	615	955
자료비(천엔)	9,841	17,635	35,398	74,629	143,361
인구1인개산(엔)	1,500	1,000	700	550	350
인구1인연간대출 접수	14.4	13.8	11.4	10.0	7.8
직원수(유자격자)	5(3)	8(4)	19(11)	53(25)	98(58)

자료: <http://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5/Default.aspx#3-1-2>로부터 인용

45) 이 표는 ‘일본의 도서관 1999(일본도서관협회)’에 근거하여 협회의 협력에 의해 작성한 것임. 수치와 관련해서는 전국 시정촌(정령지정도시 및 특별구를 제외)의 공립도서관 중 인구1인당 ‘자료대출’점수의 높은 상위 10%의 도서관의 평균 수치를 산출한 것임. 여기서 제시한 수치를 참고하여 각 도서관에 있어서 각각 선정한 ‘지표’의 ‘수치목표’를 정하고, 시계열비교 및 동규모자치단체 등과의 비교검토에 의해 자기평가를 활용, 도서관 운영의 한층 발전을 꾀하고 있음. 자료비는 1998년도 결산액, 직원수는 비상근, 임시직원을 포함한 풀타임 상당인수임

제4절 개정법률안 관련 시사점 도출 및 적용 가능성

1. 시사점 도출

- 유럽 특히, 독일과 같은 고전적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및 대도시 공공도서관은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에 대해 후원 및 지원하고 있음
 - 국가도서관은 연방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정책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함
 - 공공도서관 정책은 주정부는 정책적 부분을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
 - 중소도시의 소규모 중앙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상위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 수직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주정부 단위에서 각 수준별 상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공공도서관의 자율성과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평적 거버넌스(협치) 확보
 - 특히 수평적 거버넌스의 모습은 도서관 간에 협력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사서 및 봉사자의 연수와 교육은 대도시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이뤄짐
 - 독일의 경우 지방행정 수장 하에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일개의 과(課)가 설치, 한국에서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갈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연방도서관서비스법에 도서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법이 제정, 서비스는 <박물관 및 도서관서비스법>에 별도 제정되어 있음
 - 미국의 도서관 법에서는 인력 및 자료,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각 주법이나 주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립도서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의해 위치를 부여,

헌법에 또한 학습권, 학문의 자유, 생존권 등을 들어 그 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일본 공공도서관 법에서도 도서관의 사서인원 기준, 장서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단, 공공도서관 법 제13조에 전문적 직원(사서), 사무직원, 기술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에 필요한 도서관 시설의 바닥면적, 장서수장능력, 직원수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2. 적용 가능성

- 각 국가마다 공공도서관의 필요성,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관련 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으로 들어가면, 인력(사서 기준), 기준면적, 장서수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해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법으로 정하는 대신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독일과 같이 상위(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의 도서관이 중소규모의 상위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도서관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 도서관 체계에서는 함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즉, 최근 광역 단위에서 설립된 대표도서관과 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된 공공도서관과의 위치 및 역할 부여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광역의 대표도서관-기초자치단체의 본관 및 분관과의 관계까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럴 경우, 현재 국가 및 지자체 공공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부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감안하여 기준 마련에 있어 지자체의 대표도서관과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부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제4장 「도서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사항 및 주요 내용

제1절 하위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주요 검토 내용

제2절 주요 쟁점 및 기준 등

제3절 「도서관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입법사항

제1절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 및 주요 검토 내용

1.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조항의 검토

1) 조항의 검토

- 도서관법에서 하위법령의 개정과 관련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개정 항목의 범위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함
-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조항의 검토하고, 이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자료의 제출)
 -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35조(등록 등)
 - ①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 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의 범위 검토

- 도서관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하위법령의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의 범주에는 최소 5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법 제23조의 광역대표도서관 시설, 인력, 장서 기준, 법 제35조의 도서관 등록요건, 등록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법 제38조 사서배치 기준, 법 제38조 도서관 시설, 도서관 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등임

표 38 하위법령 개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시설·장서 기준(법 제23조) ② 도서관 등록 요건(사서·도서관자료·시설) (법 제35조) ③ 등록심의의 방법 및 절차(법 제35조) ④ 사서배치기준(법 제38조) ⑤ 도서관 시설·도서관 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법 제38조)

3) 등록요건의 제안 시 유의 사항

- 도서관 등록 요건은 사서, 도서관자료, 시설이므로 이를 충족해야 하며, 등록은 개관직후에 대개 이루어지므로 공공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도서관 등록 요건은 법 제38조의 사서배치기준, 도서관자료 및 시설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제35조의 등록 요건은 제38조의 관련 기준들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감안하면, 등록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8조의 사서, 도서관자료, 시설 등의 기준들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 제23조에서 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 시설, 장서 기준도 포함되어야 함

2. 사서, 도서관 자료, 시설 기준을 위한 검토 내용

1) 관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법령과 가이드라인 조사

- 사서 및 도서관자료, 시설 기준을 제안하고 현행 하위법령의 관련 기준들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호주의 공공도서관 기준,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 미국의 주요 주별 공공도서관 기준, 한국도서관기준,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기준 등을 검토함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만족도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최적의 사서 및 직원수, 그리고 장서, 시설(면적)을 검토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과 법령을 조사하여 분석함
- 국외 주요 법령에는 사서배치기준과 장서수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드물며, 주로 공공도서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고 있음. 다만, 시설(면적)에 대해서 계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이나 기준은 인적자원배치나 장서보다도 많지 않으며, 특히 면적에 대한 기준은 거

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좌석수나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기기나 시설의 구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 이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 IFLA/UNESCO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하 IFLA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서, 인적자원, 시설, 경영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서와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함

- 인력기준에서는 결정변수로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정규직원의 배치와 정규직원의 1/3을 정규사서로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39 IFLA 인력 기준

인력기준		
· 최소 인원 : 봉사대상 2,500명당 직원 1인 (7,500명당 1인의 사서) 직원 중 1/3은 자격을 가진 사서여야 한다.		
봉사대상 인구(명)	사서수	특징
1만 미만	0~1명	IFLA 인력 모형을 적용했을 때, 봉사대상 인구 2만 미만의 경우에는 현재 최소배치인원 3명에 미달함.
1만 이상 2만 미만	1~2명	
2만 이상 5만 미만	2~6명	
5만 이상 10만 미만	6~1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	13~40명	
30만 이상 50만 미만	40~66명	
50만 이상	66명 이상	

표 40 IFLA 장서 기준

장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5~2.5권 · 최하는 2,500권 · 3년 동안 1인당 2.0권 성장을 목표 		
봉사대상 인구	1인당 장서(연간)	인구 1000명당 장서(연간)
25,000명 이하	0.25	250권
25,000~50,000명	0.225	225권
50,000명 이상	0.20	200권

- “시나리오 1”에서는 봉사대상인구 10만명, 20만권, 연간 수집량 2만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봉사대상인구 5만명, 장서 10만권, 연간 수집량 11,250권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봉사대상인구 2만명 규모에 장서 4만권, 연간수집량 5천권을 설정하였음
- IFLA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설과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기준에서도 도서관 연면적에 대한 기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 기준

표 41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 면적 기준

면적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 도서관 가이드라인 : 인구 천명당 연면적 56㎡, 장서 : 1㎡ = 110권
· 단위 도서관의 최소크기 : 370㎡
· 분관시스템의 최소크기 : 230㎡이나, 장서가 3000권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1,000권마다 14㎡를 추가해야 함 (예, 1만권 = 328㎡)

4)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 2012

- 2012년에 발표된 호주의 공공도서관 기준에는 인력과 장서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봉사대상 인구당 최소 직원수와 사서수(최소배치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2 호주 공공도서관 기준

인구당 최소 직원수			
· 기본목표 : 봉사대상인구 3,000명당 1명의 정규직원			
· 권장목표 : 봉사대상인구 2,500명당 1명의 정규직원			
· 따라서 호주는 봉사대상인구 2,500~3,000명당 1명의 정규직원 배치			
· 봉사대상인구는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인구를 말한다.			
사서수: 최소배치요건			
· 인구 1만명당 1명~1.2명의 사서 배치			
봉사대상 인구(명)	최소사서수	직원수	특징
1만 미만	0~1명	2~3명	정규직원 2,500~3,000명당 1명 배치 사서는 1만명당 1~1.2명 배치
1만 이상 2만 미만	1~2명	3~6명	
2만 이상 5만 미만	2~5명	6~15명	
5만 이상 10만 미만	5명~10명	15명~3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	10~30명	33명~100명	
30만 이상 50만 미만	30~50명	100~166명	
50만 이상	50명 이상	166명 이상	
장서			
· 봉사대상 1인당 1.8~2.2권[only 도서인쇄자료]			

- 호주 공공도서관 기준에서 정의한 ‘봉사대상인구(population)’는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인구를 의미
- 장서의 경우에는 봉사대상 1인당 권장 장서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쇄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시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단지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 정도로 밝히고 있어 정량적인 수치가 제시된 기준은 없음

5) Queensland Public Library Standards and Guidelines, 2009

- 호주의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의 기준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기준들이 있으나, 이 중에서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인력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인구 3,000명을 기준으로 3,000명당 1인의 정규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3,000명 미만이라도 기본 1인의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경우에는 봉사대상 인구구간별로 필요한 최소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 면적에는 장서공간, 직원공간, 공공열람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등 공유 공간을 포함
- 이에 대한 상세한 시설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봉사대상인구가 증가하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면적이 증가해야 함
- 여기에 제시한 연면적은 최소의 면적기준이며, 부가기능(주민공간 회의실 등)을 위한 공간적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할 수 있음
- 장서는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전자자원을 포함하며, 최소장서규모는 약 2,500권 이상이며, 인구구간별로는 인구 50,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봉사대상 1인당 3.0권이며, 인구 50,000명~100,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인당 2.0~3.0권, 인구 100,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5~2.0권으로 규정
- 장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3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

인력
· 인구 3,000명 이상이면 3,000명당 1인의 정규직원
· 인구 3,000명 미만이면 3,000미만이라도 1인의 정규직원
· 아울러 사서의 배치는 봉사대상 인구 10,000명 이하에는 기본적으로 1인의 사서와 사서직 도서관장 임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 10,000명 이상~35,000명 미만일 경우

에는 초과하는 1,000명당 1인의 사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인구 3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00명당 1인의 사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봉사대상 인구(명)	사서수
인구 35,000명 이상	초과하는 10,000명당 1인의 사서
인구 10,000명 ~ 35,000명 미만	초과하는 1,000명당 1인의 사서
인구 2,000~10,000명	1인의 사서 및 도서관장은 사서직
인구 2,000명 미만	

봉사대상 인구(명)	특징
1만 미만	정규직원 2,500~3,000명당 1명 배치 사서는 1만명당 1~1.2명 배치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시설

인구	최소연면적(㎡)	인구	최소연면적(㎡)
~3,500	225	35,000	1502
4,000	255	40,000	1716
5,000	270	45,000	1832
6,000	323	50,000	2035
7,000	375	60,000	2376
8,000	431	70,000	2772
9,000	451	80,000	3168
10,000	473	90,000	3465
12,000	568	100,000	3850
16,000	757	110,000	4235
18,000	851	120,000	4620
20,000	946	130,000	5005
25,000	1073	140,000	5390
30,000	1287	150,000	5775

장서

장서규모[전자자원 포함]		
최소장서규모 : 2,500권 이상		연간증서
인구 50,000명 미만	1인당 3.0권	1인당 0.3권
인구 50,000명~100,000명 미만	1인당 2.0~3.0권	1인당 0.25권
인구 100,000명 이상	1인당 1.5~2.0권	1인당 0.2권

6) 미국의 주별 공공도서관 최소 기준

- 2003년 현재 39개주가 공공도서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22개주(앨라배마,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건,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에서 개발된 기준은 주 도서관행정국과 도서관협회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자발적인 기준의 제정이나 준수를 위한 법적 권한 위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미네소타,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주는 자발적인 기준을 개발하였지만, 또한 공공도서관이 주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도서관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준 또는 자격요건을 명시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가지고 있음
- 뉴욕, 유타, 버지니아주는 주법이나 행정규칙에 의하여 공공도서관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몬태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주 등 5개주에서는 실제로 주법 또는 행정규칙에 공공도서관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39개주 도서관기준 중에서 유타주 기준을 제외한 20개주는 최소기준을 개발하였고, 18개주는 다양한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기반으로 계층별 기준(기본,

권장, 확장수준)을 개발하였음

- 기준에는 Governance/Administration Issues, Staff Competency/Training Issues, Needs Assessment Expected/Required, Long-Range Plan Expected/Required, Funding Levels, Facilities, Collection, Staffing Levels, Hours on Operation, Resource Sharing, Reference, Technology, Youth Services, Services to Seniors,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ervice to Minority, Development of Policies, Intellectual Freedom, PR/Marketing/ Advocacy, Board Training, Other Topics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주의 기준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함

7) 아이오와주 공공도서관 기준

- 아이오와주 공공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거버넌스, 도서관 행정, 도서관직원, 도서관장서, 도서관접근-가상공간, 도서관접근-물리적 공간(개관시간 포함), 도서관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협력, 도서관 시설 등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인력, 장서, 시설을 중심으로 아이오와주의 기준을 분석하고자 함
- 먼저 도서관 인력은 봉사대상인구의 구간별로 최소정규직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4 아이오와주 공공도서관 인력 기준

인력
· 인구 구간 2500 ~ 4,999명에서 약 1.2명의 수준으로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규모	봉사대상인구	최소직원기준(정규직)
A	500명 이하	0.5명
B	500~999	0.5명
C	1000~2499	0.6명
D	2500~4999	1.2명
E	5000~9999	2.8명
F	10000~24999	4.8명
G	25000~49999	6.4명
H	50000명 이상	10.1명

- 인구 구간 2500 ~ 4,999명에서 약 1.2명의 수준으로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구간이 복잡하고 구간별 필요한 인력의 배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나, 너무 복잡하여 적용하는데 쉽지 않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도서관 장서는 도서관 자료의 전체 대출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대출이 얼마나 많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장서의 질적 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이오와 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서의 기준에는 장서의 폐기 및 연간증서수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도서관규모나 봉사대상수에 따른 장서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장서의 폐기는 연간 전체장서의 4%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서의 연간 증서도 장서의 4%가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도서관 시설은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침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즉 도서관 시설과 공간은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과 접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공공도서관은 매력적인 초대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모임의 장소

가 된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과 시설 및 건물은 이용의 변화 및 서비스 패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다양한 포맷으로 발행되는 상당한 장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서관 건물은 이용자의 편안함과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 이용의 확장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8) 메인주 도서관 기준

- 메인주 공공도서관을 관리하는 메인도서관위원회와 주법아래에 주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과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도서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기준의 검토와 개발을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있기도 함
- 메인주 기준은 기초기준(Basic), 최소기준(Core), 권장기준(Exemplary)등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최소기준은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 권장기준은 도서관이 핵심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계획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으로서 모범적인 기준을 의미
- 먼저 인력(직원)에 대한 기준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최소 2명이상 배치(1명은 자원봉사자도 가능)
- 건물과 장서에 대한 계량적인 기준은 없고, 지침으로서 도서관 이용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구비해야 하며, 이때 장서의 경우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장서를 구비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9)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 기준(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6판, 2018.)

- 위스콘신주의 공공도서관 기준은 1계층, 2계층, 3계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각각 거버넌스, 행정, 예산, 직원, 장서, 프로그램, 홍보, 접근,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Tier 1 : 최소수준, Tier 2 : 권장수준, Tier 3 : 최고수준)
- 본고에 기술된 위스콘신주의 인력, 장서, 시설기준은 ‘서비스 인구’에 기반

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먼저 도서관직원은 정규직, 유급직원 및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그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표 45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 기준

인력

· 서비스 대상 인구 1,000명당 정규직원

	999 이하	1,000 ~ 1,999	2,000 ~ 2,999	3,000 ~ 4,999	5,000 ~ 6,499	6,500 ~ 8,999	9,000 ~ 12,999	13,000 ~ 18,999	19,000 ~ 34,999	35,000 ~ 69,999	70,000 ~ 99,999	100,000 이상
최소	1.0	0.8	0.6	0.6	0.5	0.6	0.5	0.5	0.5	0.4	0.4	0.4
권장	1.3	1.0	0.8	0.7	0.6	0.6	0.5	0.5	0.5	0.4	0.4	0.4
최고	1.9	1.6	1.3	1.1	1.0	0.8	0.8	0.7	0.7	0.6	0.6	0.6

장서

· 서비스 대상 1인당 장서(인쇄자료)

	999 이하	1,000 ~ 1,999	2,000 ~ 2,999	3,000 ~ 4,999	5,000 ~ 6,499	6,500 ~ 8,999	9,000 ~ 12,999	13,000 ~ 18,999	19,000 ~ 34,999	35,000 ~ 69,999	70,000 ~ 99,999	100,000 이상
최소	8.0	6.6	5.5	5.0	4.0	3.5	3.2	2.7	2.5	2.4	2.2	2.0
권장	10.7	9.0	7.4	6.2	5.1	4.2	3.6	3.2	2.8	2.6	2.4	2.2
최고	15.0	12.3	10.5	8.8	7.2	6.0	5.0	4.2	3.7	3.2	2.8	2.7

시설

·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대신에 좌석수와 주차장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음

“Municipal Population”은 도서관이 설립된 시, 군, 구, 읍, 면, 동의 인구 또는 도서관이 설치된 행정구역 전체의 인구를 말한다.
 “Service Population”은 도서관이 설치된 시, 군, 구, 읍, 면, 동의 인구에 도서관을 이용가능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를 합친 인구를 말한다. 즉 봉사권역을 설정하고 이 권역내에 포함된 인구를 의미하고 있다.

10)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도서관 기준(North Carolina Public Library Standards, 2012)

- 2012년에 발표된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도서관 기준은 행정(administration), 시설(Facilities),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자원(Resources), 서비스(Services)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 먼저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는 없다. 즉 노스캐롤라이나 도서관행정당국은 도서관시설계획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건축계획과 리노베이션 등이 포함
- 도서관 시설은 지역사회를 위한 최대한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함
-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도서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서를 배치해야 하며, 도서관 행정당국은 전문직 관장 하에 안전한 도서관시설을 제공하고, 도서관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수준의 전문사서를 배치해야 함
- 장서에 있어서도 도서관장서는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게 구비하여야 하며, 모든 연령, 능력, 배경에 구애없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노스캐롤라이나 공공도서관 기준에서 제시된 시설, 인력, 장서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권고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1) 텍사스주 공공도서관 기준(Texas Public Library Standards, 2014)

- 텍사스주 공공도서관 기준에 제시된 다양한 기준 가운데 장서,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표 46 텍사스주 공공도서관 기준

인력		
봉사대상인구	관장의 요구사항/직원배치기준	
	권장수준	최고수준
4,999명 이하	학사학위(전문대학)+3년도서관 업무	도서관학 석사
5,000~9,999	학사학위(대학)+3년 도서관업무	도서관학 석사
10,000~24,999	학사학위(대학)+3년 도서관업무	도서관학 석사+3년 행정경험
	3,500명당 1명의 정규직 최소 0.25명의 사서배치	2,500명당 1명의 정규직 최소 1명의 사서 배치
25,000~49,999	도서관석사+3년도서관경험	도서관석사+3년행정경험
	4,100명당 1명의 정규직 17,100명당 1명의 사서배치	2,850명당 1명의 정규직 9,850명당 1명의 사서배치
50,000~99,999	도서관석사+5년도서관경험	도서관석사+5년행정경험
	3,600명당 1명의 정규직 15,450명당 1명의 사서배치	2,750명당 1명의 정규직 9,500명당 1명의 사서
100,000~199,000	도서관학석사+5년도서관행정경험	도서관석사+5년도서관행정경험
	4,000명당 1명 정규직 14,200명당 사서1명 배치	3,400명당 1명의 정규직 10,450명당 사서1명 배치
200,000~499,999	도서관석사+5년도서관행정경험	도서관석사+5년도서관행정경험
	3,500명당 정규직 1명 배치 14,375명당 사서 1명 배치	3,100명당 정규직 1명 배치 10,125명당 사서1명 배치
500,000명 이상	도서관석사+5년도서관행정경험	도서관석사+5년도서관행정경험
	3,825명당 정규직 1명 배치 12,775명당 사서 1명 배치	2,850명당 정규직 1명 배치 10,775명당 사서1명 배치

장서		
봉사대상인구	1인당 장서규모	
	권장수준	최고수준
5,000명 이하	17,000점 또는 1인당 3.36점	22,500점 또는 1인당 7.95점
5,000~24,999	2.21	3.13
25,000~49,999	1.95	2.46
50,000~99,999	2.04	2.79
100,000~249,999	1.52	2.41
250,000 이상	1.53	1.64

12) 영국의 공공도서관 기준(Comprehensive and Modern Public Libraries - Standards and Assessment, 2001)

- 영국의 공공도서관 기준은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는 26가지 성과지표와 19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Comprehensive and Modern Public Libraries - Standards and Assessment」 로 소개되었음

- 이 기준은 2004년 4월과 2006년 3월, 2007년 12월에 개정되었으며, 2008년 6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2006년 3월에는 기준의 명칭도 「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 로 변경되었음
- 이 기준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당국의 법적인 책무에 대한 명확하고 널리 수용할 수 있는 정의를 작성하고 도서관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2001년에 발표된 영국도서관 기준은 총 19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은 목표 7, 조항9에 나타나 있음

표 47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

<p>목표 7 : 도서관 직원은 적절한 수준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조항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19 : 인구 1000명당 정규직원 수 · 도서관 행정당국은 정보관리자격과 ICT 자격을 가진 적절한 직원 수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 아울러 이 기준에서는 인력배치에 대한 도달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직원고용에 대한 문제는 영국도서관협회가 DCMS, SCL, LGA, ISNTO 등과 협력하여 문제를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13) 한국도서관기준

- 한국도서관기준(2013)에도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과 장서 및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그 규모나 기능, 장서수, 이용자수, 건물구조 및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결정하되,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최소 3명의 정규직원(사서3명 또는 사서2명과 기타 직원 1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대표도서관의 적정 직원수는 사서직원 기본인력 20명에 당해 지역의 전체 서비스 대상인구 10만명당 사서직원 1명씩을 증원배치하고, 전체 사서직원수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직원, 장서규모, 면적의 기준에서는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직원배치 및 장서구성, 그리고 연면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다만 서비스 대상인구에 대한 정의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건물의 연면적은 당해 지역의 인구수, 공공도서관수 및 장서수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적정한 시점에 보유해야 할 총장서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적정 서고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타 면적을 추계·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의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연면적의 30% 이상을 보존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48 한국 도서관 기준

인력			
서비스대상인구	기본인력	증원인력	
		사서직원	기타직원
1만 미만	3명 (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2명과 기타 직원 1명)	인구 9천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배치
1만~2만 미만			
2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인구 1만명당 1명	
10만~30만 미만			
3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장서

종류		장서구성기준	비고
단행본	기본장서	인구 1명당 2권이상	분관에도 적용
	연간증서수	인구 1명당 0.2권 이상	
연속간행물		기본 50종에 서비스대상인구 1,000명당 3종추가	
비도서자료		서비스 대상인구 1,000명당 기존 40점에 연간 4점 이상 증가	

면적

서비스 대상인구(명)	인구 1명당 면적(m ²)	
	중앙관	분관
5만 미만	0.045	0.035
5만~10만 미만	0.042	0.030
10만~20만 미만	0.040	0.020
20만~50만 미만	0.034	
50만 이상	0.031	

- 1) 중앙관의 서비스 대상인구는 당해 지자체의 전체 인구를 말한다.
- 2) 분관의 서비스 대상인구는 분관이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지역의 전체 인구를 말한다.

- 도서관법시행령에 나타난 자료 및 시설기준

(1) 공립 공공도서관

표 49 공립 공공도서관 자료 및 시설 기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1. 봉사대상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

- 이상과 같이 국내외 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기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음

- 첫째, 인력(사서배치)과 장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부분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역의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열람석 및 주차장을 제외하고 연면적 등은 도서관의 건립방향 및 건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은 없었다. 다만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기준에서는 봉사대상 1인당 소요되는 면적을 제시하여 도서관건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둘째, 대부분의 기준과 법령에서 인력의 배치는 기본인력의 제시없이 증원인력만 제시하고 있으며, 증원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인력은 봉사대상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사서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함. 따라서 대부분 직원의 배치기준의 결정변수는 봉사대상인구이며, 그 외 결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기본인력 3명에 추가인력의 기준이 장서와 면적인 현행 도서관법의 기준은 봉사대상인구수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장서의 기준은 봉사대상 1인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연간증서수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었음
- 넷째, 도서관법령과 기준마다 인력, 장서에 대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였고, 공통의 특징을 추출하기 어려웠음. 다만, 외국의 다양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는 기본인력 3명에 봉사대상인구 9천명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음. 이는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인력구성방식과 동일함
- 다섯째, 봉사대상인구와 구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국외의 다양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봉사대상인구는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단위, 즉 시, 군, 구, 읍, 면, 동의 인구를 의미하였지만, 미국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기준에서는 행정단위인구가 아니라 '서비스 인구'로 명명하여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정단위의 인구를 의미하고 있었음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특정지역에서 건립되는 모든 도서관은 규모가 크던, 작던간에 장서구성, 면적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어서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대상인구수에 대한 면밀함 검토가 요구됨
-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 직원의 배치기준을 분석한 윤희윤의 연구에서는 인구 1,000명당 최소 상근직원은 평균 0.33명으로 나타났고, 전체직원 가운데 사서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3%로 인 것으로 조사하였음. 이를 적용한다면, 봉사대상 인구가 5만 명인 특정 도서관은 16.5명의 직원이 필요하며, 이중 사서직원은 5.4명이 되는 것임. 이는 약 9,000명당 1명의 사서가 필요한 셈임

<소결>

- 도서관법 하위법령은 등록요건의 신설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사서, 자료,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들 기준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은 법령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도서관 운영에 적절한 인력과 장서, 면적을 구비해야 함.
- 도서관법 하위법령에 포함될 기준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외의 도서관 법령이나 기준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도서관 기준(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었음
- 해외의 기준에는 기준의 결정변수로 봉사대상인구수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사서의 증원에 대한 결정변수도 도서관법의 장서와 면적이 아닌 봉사대상인구수를 채택하고 있어 도서관법 하위법령에도 봉사대상인구수가 기준의 결정변수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주요 쟁점 및 기준 등

1. 등록제 도입 및 조건

- 도서관의 등록은 제안된 개정 도서관법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서 도서관의 등록을 통하여 도서관건립 및 운영의 타당성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도서관의 난립을 막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
- 그러나 등록제의 실시는 도서관을 건립하였으나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등록되지 못하는 도서관 수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등록요건을 인력, 장서로 시설 한정하고 있으나, 이들 3개 요소에 대한 최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등록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서관의 등록은 동일한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는 장서나 이용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등록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의 활용은 피해야 함**
- 아울러 도서관의 등록요건은 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국내외 다양한 도서관 기준이나 지침들은 대부분 최소기준이 아니라 적정 기준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도서관의 등록기준은 최소요건에 방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은 2016년에 신설되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그 등록근거가 나와 있음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구체적인 도서관 등록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나와 있음
-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

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②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음

표 50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4) 자료의 희소성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 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2. 사서, 도서관 자료 및 시설 기준 설계

1) 도서관 자료 및 시설 기준 설계 시 고려사항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준을 결정하는 변수인 봉사대상인구수에 대한 정의의 문제임.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봉사대상인구수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만 해당한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만 해당한다),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 예를 들면, 청주시 흥덕구에 설치된 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수는 흥덕구 전체의 인구를 말하며, 완주군 용진읍에 소재한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는 용진읍의 인구를 말함.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사서배치기준의 결정변수는 장서와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봉사대상인구수를 직원배치기준으로 하는 국제적인 기준 또는 법령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봉사대상인구수를 사서 또는 직원배치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봉사대상 인구를 결정변수로 사용할 때는 현재 봉사대상 인구에 대한 정의는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동일한 행정구역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위적 역할에 상관없이 직원의 배치, 장서의 규모, 면적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지위적 역할에 따라서 봉사대상 인구의 정의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설과 도서관자료는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봉사대상 인구의 구간이 6개구간(2만 미만, 2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50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최소봉사대상인구의 권역이 2만미만으로 규정된 것은 아마 2만 이상으로 규정한 읍 설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함. 그러나 도서관의 건립과 확충이 증가하면서 봉사대상 인구 또는 행정구역인구가 2만 명 미만의 읍면동에 건립되는 도서관도 상당하며, 권장기준인 한국도서관기준에도 이미 2만 미만 봉사대상 인구의 급간을 1만 미만과 1만 이상 ~ 2만 미만으로 세분하고 있으

므로 이를 따라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적용한 봉사대상 인구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봉사대상 인구
1만 미만
1만 ~ 2만 미만
2만 ~ 5만 미만
5만 ~ 10만 미만
10만 ~ 30만 미만
30만 ~ 50만 미만
50만 이상

- 아울러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봉사대상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시나 구가 도농복합형태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광역대표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구간은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규모(100만 미만~1000만 이상)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함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100만 미만
100만 ~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미만
300만 ~ 500만 미만
500만 이상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봉사인구대상이 500만~1000만 미만의 광역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500만 이상으로 단순하게 인구급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봉사대상 인구는 원칙적으로 도서관이 설치되는 행정구역의 전체 인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그 중 첫 번째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함
- 첫째,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 둘째,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다만, 군단위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위적 역할에 따라 중앙관은 전체 행정단위 인구, 분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 셋째, 도서관의 위치에서 반경을 기준으로 봉사권역을 설정하고 봉사권역내의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경우임. 현재 봉사대상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정한 반경 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것임. 이는 다음과 같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앙관(거점관)	2km	2.5km	3km
분관	1km	1.5km	2km

- 위의 3가지 안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이는 봉사대상 인구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쉽게 봉사대상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함. 그리고 도서관의 지위적 역할(일반적으로 중앙관 및 거점관, 분관)에 따라서 봉사대상 인구가 달리 산정되어야 하므로 제1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앙관 및 거점관, 그리고 분관의 정의가 도서관법에 제시되되거나, 중앙관 분관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광역교육청 소속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소속 도서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봉사대상 인구를 산정함

표 51 봉사대상 인구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2) 사서 배치 기준(안)

- 사서배치기준을 결정할 결정변수로 봉사대상 인구로 한다는 가정 하에, 봉사대상 인구를 위에서 논의한 바, 1만 미만부터 50만 이상까지 7개 구간으로 구분함
- 현재 법정배치 사서 인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비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증원인력에 대한 결정변수인 장서와 면적을 폐기하고, 봉사대상 인구를 결정변수로 정함
- 아울러 기본인력은 도서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의 인력으로 현재 시행령과 변동이 없으며, 증원 인력은 국내외 기준과 법령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함

표 52 사서 배치 기준

근거	사서배치기준	
IFLA/UNESCO 가이드라인	인구 2500명당 1명의 직원	직원의 1/3 사서배치 따라서 인구 7,500명당 1명
호주 공공도서관 기준	3,000명당 1명의 직원	인구 10,000명당 1~1.2명 사서
윤희윤의 연구	10,000명당 0.33명	직원의 33% 사서배치
권나현의 연구	인구 9천 명당 1명	
한국도서관기준	사서직원의 1/3	9천 명당 1명

- 위의 지침(기준)이나 연구들은 약 9,000명~10,000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	기본인력	증원인력	
		사서직원	기타직원
1만 미만	3명	9천 명당 1명	사서의 1/3
1만 ~ 2만 미만			
2만 ~ 5만 미만			
5만 ~ 10만 미만			
10만 ~ 30만 미만			
30만 ~ 50만 미만			
50만 이상			

※ 봉사대상 인구가 9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9천 명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 사례) 봉사대상 인구가 45000명인 도서관(연면적 1,500㎡, 장서수 8만권)의 도서관의 사례
- 현행 시행령 : 3명(기본인력)+3명(연면적)+12명(장서수)=18명(법정사서배치수)
- 제안1) 3명(기본인력)+5명(9천 명당 1명) = 8명

3) 도서관자료 및 시설 기준(안)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나타난 시설(면적) 및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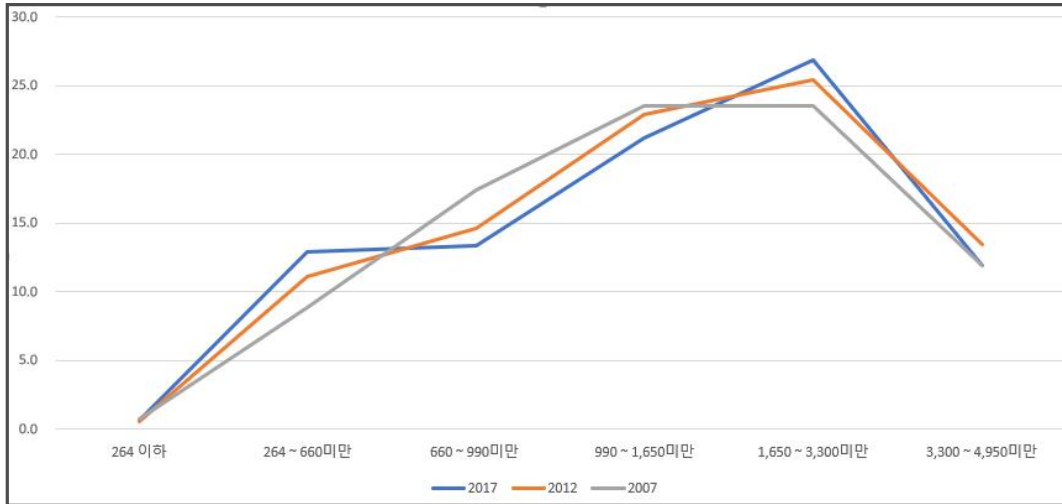
-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1,042개관의 시설(면적) 및 자료를 분석하였음
- 시설(면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3 시설(면적) 및 자료 분석

봉사대상 인구	시설						
	면적(제곱미터)	2017		2012		2007	
		도서관 수	비율	도서관 수	비율	도서관 수	비율
2만 미만	264 이하	6	0.6	4	0.5	4	0.7
	264 ~ 660미만	135	12.9	92	11.1	52	8.8
2만 이상 5만 미만	660 ~ 990미만	139	13.3	120	14.6	103	17.4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 1,650미만	221	21.2	189	22.9	139	23.5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 3,300미만	280	26.9	210	25.4	139	23.5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 4,950미만	124	11.9	111	13.4	70	11.9
50만 이상	4,950 이상	137	13.2	100	12.1	84	14.2
		1,042	100	826	100	591	100

- 1,042개 공공도서관 면적의 평균은 2,816㎡이며, 개별 면적당 도서관은 264제곱미터 이하의 도서관이 6개관(0.6%), 264~66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135개관(12.9%), 660~99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139개관(13.3%), 990~1,65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221개관(21.2%), 1,650 ~ 3,30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280개관(26.9%), 3,300 ~ 4,950제곱미터미만의 도서관이 124개관(11.9%), 4,950 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이 137개관(13.2%)로 나타났음
- 현재 공공도서관의 최소조건 264제곱미터를 만족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6개관으로 나타났고, 200평(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141개관, 300평(연면적 99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이 280개관으로 전체의 26.8%로 나타났음
- 도서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9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시설(면적)에 따른 도서관 수



4)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면적)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안)

-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이 있다. 즉 도서관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공립도서관의 도서관 건물면적, 열람석, 기본장서, 연간증서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4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면적) 및 자료의 기준

봉사 대상인구	시설		자료	
	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이상	200 이상	15,5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본 연구에서는 공립도서관의 건물면적과 기본 장서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안)

- 해외 국가나 단체의 시설(면적)에 대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은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도서관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한 경우보다는 시설부문은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 효율성 증진의 측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시설 등을 제시하고 경우가 더 많았음
- 즉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도서관의 출입구에 대한 조건, 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서관 시설과 기기, 비품에 대한 안내 등을 제시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도서관 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과정이나 산출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도서관 연면적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현재 법령에서 제시한 면적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임

면적 사례(안) 1 :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봉사대상 인구	시설	
	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2만 미만	264	6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이상	2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 다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공공도서관의 연면적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볼 때,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 제시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기능 확대를 고려하고,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264제곱미터(80평)로서는 현대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현대 공공도서관은 자료 이용 공간, 공용 공간, 업무 공간, 문화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들 4개 영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보다 30평 높은 330제곱미터로 조정해야 함
- 다만 294㎡(90평), 또는 330㎡(100평)로 조정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서관은 각각 264㎡ 미만의 도서관이 6개관, 264 ~ 297㎡ 미만의 도서관이 13개관, 297 ~ 330㎡ 미만의 도서관이 17개관으로 조사됨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64㎡ 미만	264~ 297㎡ 미만	297 ~ 330㎡ 미만	합계
도서관수	6	13	17	36
비율	0.6%	1.2%	1.6%	3.4%

[참고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통계, 2017년 12월 기준, 도서관수 1,042개]

- 공공도서관 최소 면적을 330㎡ 이상으로 하면, 현재 상태로는 약 36개관이 도서관법 시행령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최소면적을 297㎡로 하였을 경우에는 19개관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는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약 56㎡ 연면적이 필요하며, 분관시스템의 최소 면적은 230㎡이나, 장서가 3000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000권당 14㎡를 추가해야 함 (예, 1만권을 소장한 분관 = 328㎡)
-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에는 봉사대상 인구가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70㎡이며, 봉사대상 인구가 10,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473㎡, 2만 미만일 경우에는 946㎡, 5만 미만일 경우에는 2,035㎡,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3,850㎡, 15만 미만일 경우에는 5,775㎡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최소면적을 270㎡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보다 넓은 면적을 제시하고 있었음
- 한국도서관기준(공공도서관기준, 2013년)에는 지위적 역할에 따라 중앙관과 분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분관의 경우에 봉사대상 인구 5천명이면 175㎡, 1만 명의 경우에는 350㎡로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많지 않으나, 제시된 대부분의 계량적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시행령보다 넓은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최소면적은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면적 사례(안) 2 : 최소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봉사대상 인구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퀸즈랜드	한국도서 관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1만 미만	560 m ²	473 m ²	350 m ²	-	297 m ²
1만 ~ 2만 미만	1천 명당 56 m ²	946 m ²	700 m ²	264 m ²	330 m ²
2만 ~ 5만 미만		2,035 m ²	1,750 m ²	660 m ² 이상	660 m ² 이상
5만 ~ 10만 미만		3,850 m ²	3,000 m ²	990 m ² 이상	990 m ² 이상
10만 ~ 30만 미만		15만 5,770 m ²	10,200 m ²	1,650 m ² 이상	1,650 m ² 이상
30만 ~ 50만 미만			17,000 m ²	3,300 m ² 이상	3,300 m ² 이상
50만 이상			17,000 m ² 이상	4,950 m ² 이상	4,950 m ² 이상

1.2. 면적 사례(안) 3 : 봉사대상 인구 1인당 또는 1천 명당 면적을 제시하는 경우

- 캐나다 온타리오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 호주 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 기준, 한국도서관기준, 그리고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기준 등을 참조하여 봉사대상 인구를 결정변수로 하는 면적을 제시하고자 함

봉사대상 인구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퀸즈랜드	한국도서관 기준*	도서관건립 매뉴얼
1만 미만	1천 명당 56 m ² 또는 최소 230 m ² 장서 3000권 초과 시 1,000권당 14 m ² 추가	1인당 0.0473	0.035	1천 명당 70 m ²
1만 ~ 2만 미만				65 m ²
2만 ~ 5만 미만		0.0407	0.030	50 m ²
5만 ~ 10만 미만				20만 이상 40 m ²
10만 ~ 30만 미만		0.0385	0.020	-
30만 ~ 50만 미만			-	
50만 이상			-	

[한국도서관기준은 분관기준임]

봉사대상 인구	위의 사례를 적용했을 때				평균	1인당
	캐나다	호주	한국도서관기준	건립매뉴얼		
1만 미만	560 m ²	473 m ²	350 m ²	700 m ² 미만	520	0.052 m ²
1만 ~ 2만 미만	1,120 m ²	946	700 m ²	1,400 m ² 미만	1,041	
2만 ~ 5만 미만	2,800 m ²	2,035	1,750 m ²	3,250 m ² 미만	2,458	0.049 m ²
5만 ~ 10만 미만	5,600 m ²	3,850	3,000 m ²	5,000 m ² 미만	4,362	0.043 m ²
10만 ~ 30만 미만	16,800 m ²	11,550 m ² 미만	10,200 m ²	12,000 m ² 미만	12,637	0.042 m ²
30만 ~ 50만 미만	28,000 m ²	16,000 m ² 미만	17,000 m ²	20,000 m ² 미만	20,250	0.040 m ²
50만 이상	28,000 m ² 이상	16,000 이상	17,000 m ² 이상	20,000 m ² 이상	20,250	0.040 m ² 이상

- 평균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0.052m², 0.049m², 0.043m²등으로 산출되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과 많은 차이가 있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서관법시행령에서 최소면적을 조정한 시설 기준(2안)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안 중심으로 제안하되, 도서관법 시행령과 큰 차이두지 않는 시설 기준(3안)의 2가지가 가장 적절하나, 3안의 경우에는 봉사대상 인구가 25만 명 이상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거점관과 중앙관의 경우에는 면적이 과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최소기준만 제시한 제2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기준(안)으로 판단됨
- (2안)

봉사대상 인구	개정(안)
1만 미만	297㎡ 이상
1만 ~ 2만 미만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990㎡ 이상
10만 ~ 30만 미만	1,650㎡ 이상
30만 ~ 50만 미만	3,3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 예시)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만 명인 지역의 중앙관과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법정동 인구가 1만 명인 분관의 경우는 각각 중앙관은 최소 1,650㎡ 이상, 분관의 경우에는 330㎡ 이상의 연면적을 가져야 함
- (2안)

봉사대상 인구	인구 1인당 면적(㎡)		
	중앙관(거점관)	분관	통합(안)
1만 미만	0.050	0.033	0.035
1만 ~ 2만 미만	0.047	0.030	
2만 ~ 5만 미만	0.045		
5만 ~ 10만 미만	0.042		0.030
10만 ~ 30만 미만	0.035	0.025	
30만 ~ 50만 미만	0.030	0.020	0.025
50만 이상	0.025	0.015	

- 예시) 봉사대상 인구가 100,000명인 지역의 중앙관과 분관도서관의 경우는 각각 거점관의 경우는 3,500㎡ 이상, 분관의 경우에는 2,500㎡ 이상의 연면적을 가져야 함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기준은 호주퀸즈랜드주 공공도서관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을 기준으로 고찰한 후 시설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기준	캐나다	호주	건립매뉴얼
100만미만	1천명당 56㎡	0.0385㎡/1인	20만 이상 40㎡
100만~200만미만			
200만~300만미만			
300만~500만미만			
500만이상			

- 위의 기준으로는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도서관면적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지표와 도서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음

	면적(㎡)	인력(사서)	자료
서울	18,711	24	383,601
부산	12,558	28	743,158
대구	10,181	26	618,784
인천	13,099	11	396,940
광주	9,148	14	344,561
대전	22,485	37	821,668
울산	15,176	16	144,529
세종(예)	10,100	-	458,000
경기	8,562	7	428,326
강원	-	-	-
충북	-	-	-
충남	12,172	9	80,000
전북	988	3	62,631
전남	12,078	9	220,632
경북(예)	8,282	-	-
경남	7,869	5	61,317
제주	4,571	8	279,229

- 도청자료실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대표도서관을 제외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연면적은 대체로 4,500㎡이상이었으며, 최대는 한밭도서관의 22,485㎡로 나타났음. 장서는 경남의 61,317권을 가장 낮았고, 한밭도서관의 821,668권이 가장 많았음. 경남대표도서관은 개관한지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적정장서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년 정도 경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력은 최근에 개관한 대표도서관에서 5명, 9명, 1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이 많은 도서관은 교육청소속의 도서관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인력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인력은 광역대표도서관의 향후 역할확대에 따른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서배치인원은 7명이 있어야 하며, 장서는 시행령의 50만 이상 인구에 17만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00만 미만의 경우에 17만권을 자료기준으로 정하고 봉사인구에 따라 차등하게 증가하는 모델이 바람직해보임
- 면적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과 현재 대표도서관의 면적현황을 참고하여 4,500㎡이상을 가장 최하의 단위로 규정하고 인구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됨
- 이를 기반으로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자료기준(인력기준포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55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기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및 증원기준에 따른 인력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의 기준은 위의 기준에 따르되, 광역대표도서관에는 법제2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타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한국도서관기준, 2013년판>

■ 도서관자료 기준의 설정

-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타난 장서 기준은 다음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	자료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15,5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국내외 각종 기준이나 법령에서 제시한 장서기준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제안하고자 함.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기준은 IFLA 가이드라인, 호주의 기준, 영국의 기준, 미국의 기준, 한국도서관기준, 그리고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기준 등
- 이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분석대상기준	장서기준	예) 봉사인구 3만 명의 경우
IFLA 가이드라인	1인당 1.5~2.5권(최하는 2,500권)	60,000권(2.0권 적용)
호주의 기준	1인당 1.8~2.2권	60,000권(2.0권 적용)
호주 퀸즈랜드 주	최소2,500권 1인당 1.5~3.0권	60,000권(2.0권 적용)
미국의 기준(텍사스)	1인당 1.5~3.0권	58,500권(1.95권 적용)
한국도서관기준	1인당 2권 이상	60,000권 이상
공공도서관건립매뉴얼	1인당 2.5권	75,000권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국내외 기준들은 인구 1인당 약 1.5~3.0권 사이에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분석 내용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2017년 12월 말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 1,042개관의 평균 장서량은 100,734권이며, 1관당 봉사대상자수는 4만8천명임.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약 2.1권에 해당함

가) 장서 제안 1) 평균 1인당 2.0을 중심으로 1인당 장서 1.0권 ~ 3.0권
(최하는 3,000권 이상)

봉사대상 인구	현재 시행령	자료(안)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1만 미만	3,000 이상	1인당 3.0권	기본장서의 10%
1만~ 2만 미만		1인당 2.5권	
2만 이상 5만 미만	6,000 이상	1인당 2.0권	
5만 이상 10만 미만	15,500 이상	1인당 1.5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 이상	1인당 1.0권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 이상		
50만 이상	150,000 이상		

- 예시1) 인구 5만 명 : 10만권, 연간증서 1만권
- 예시2) 인구 10만 명 : 15만권, 연간증서 1만 5천권

나) 장서 제안 2) 최소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기존 기준의 2배 증가)
(최하는 3,000권 이상)

봉사대상 인구	현재 시행령	자료(안)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1만 미만	3,000 이상	3,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1만~ 2만 미만		6,000권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000 이상	12,000권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15,500 이상	31,000권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 이상	50,000권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 이상	110,000권 이상	
50만 이상	150,000 이상	17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서는 공공도서관 자료기준에 따른다.
- 종합하면, 1안은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도서관의 적정장서량(적정 기본장서)을 제시할 때 효율적인 모델이나, 최소자료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상의 자료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임.
- 따라서 도서관의 자료기준은 자료의 최소기준만을 제시한 2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소결>

제38조 4항에 따른 하위법령(도서관자료, 면적)기준

<공립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면적개정(안)	자료(안)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1만 미만	297㎡ 이상	3,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1만~ 2만 미만	330㎡ 이상	6,000권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2,000권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31,000권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50,000권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110,000권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70,000권 이상	

※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 인구를 말한다.

<광역대표도서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및 증원기준에 따른 인력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의 기준은 위의 기준에 따르되, 광역대표도서관에는 법제2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의 기준보다 상향시켜야 하며, 어느 정도의 폭으로 상향시킬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현재의 기준보다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시킬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자료가 3,000권이상일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최소기준과 동일하여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6㎡, 열람석 12석, 장서수 2,000권으로 2배 증가시키는 것이 안정적임

- 작은도서관의 자료,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설		자료
도서관 연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이상	12석이상	2,000권이상

5) 도서관 등록기준과 요건

- 도서관의 등록에는 기본적인 등록기준과 등록요건 등 2가지를 만족해야 함
즉 등록기준은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등록요건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것임
- 도서관의 등록은 첫째,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서 구분 제시할 수 있고, 둘째,
도서관의 지위적 역할에 따른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할 수도 있음, 셋째, 봉사
대상인구수와 도서관 위치를 혼합한 혼합유형1, 지위적역할과 도서관위치를
혼합한 혼합유형 2 등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나, 최적의 안은 **동일 법령 내
에서 다양한 자료, 면적, 인적 기준 또는 요건의 제시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자료 및 시설(면적)기준과 동일하게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 제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아울러 도서관의 등록요건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최대 또는 적정기준보다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및 면적, 사서배치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음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면적(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서최소 배치기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 이상의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을 현재(2017년 12월 기준) 공공도서관 1,042개관
의 자료, 면적, 사서수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장서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적은 85개 기관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미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도서관의 약 8.1%
에 해당하는 것임. 면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85개 기관 중에서 서

울시 구립도서관이 47개관으로 약 55%에 해당함. 아울러 사서수의 기준으로
 는 405개관(약 38.8%)이 최소배치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등록기준	미충족도서관	비율
면적	85개관	8.1
장서	2개관	-
사서	405관	38.8

- 미등록 예상 도서관을 위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면적의 경우에는 면적이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록요건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한 물리적인 요건인 면적은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도 매우 어려움
-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의 등록에서 면적은 등록요건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경과조치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서 및 사서수의 경우에는 확충여부에 따라 등록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충한 후, 등록해야 함
- 광역대표도서관의 등록요건도 광역대표도서관의 자료, 인력,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또한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시설		자료
도서관 연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이상	12석이상	2,000권이상

- 도서관의 등록기준을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참조하되,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모든 등록 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mission),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령 또는 정관을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도서관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등록 도서관은 설립목적과 사명에 적합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서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집합(collection)을 말한다.

셋째, 모든 등록도서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력, 장서, 면적(시설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도서관은 자료 이용 공간, 업무 공간, 문화 교육 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도서관 규모나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서고는 장서를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모든 등록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과 설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등록도서관은 도서관 간판, 각종 홍보물, 발간물, 홈페이지 등 도서관 명칭을 표기하는 곳에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록표시를 할 때에는“국립(또는 공립, 사립) ○○ 등록도서관”또는“국립 (또는 공립, 사립) 등록도서관”으로 표시한다.

여섯째, 등록할 때에는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일곱째, 등록 신청을 한 도서관이 등록심의를 거쳐 상기의 등록기준과 아래의 장서, 인력, 면적 등 3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단, 상기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3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등록으로 하여 등록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1개 항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지 못하면 등록 불가로 판정된다.

여덟째, 개관 후, 6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에 대하여 등록명령을 내려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법 제35조 등록요건 관련 시행령]

- 등록예정 도서관은 자료 이용 공간, 문화 교육 공간, 업무 공간, 공유 공간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립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면적(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서최소 배치기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대표도서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인력(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이상		220,000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이상		270,000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이상		310,000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이상		350,000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에는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 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

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개관 후, 1년 이내 등록 시에는 기본 장서수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7년 후에는 기본장서수를 확보해야 한다.

3. 사서 배치 기준 마련 등

1)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의 의의

- 사서는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매체자료(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고 조직화된 정보자료를 공공도서관의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를 통하여 유·무형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함
 - 또한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교육과 국민독서활동을 지원하여 독서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널리 증진하는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이바지함(문화체육관광부, 2013)
- 도서관법 제2조 7의2항에 의하면 사서는 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도서관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서는 크게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그리고 준사서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1급 정사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요건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정사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요건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요건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서배치 기준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연구나 자료는 많지 않은바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도서관 또는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은 도서관법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음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고 되어 있는바 기본인력과 증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서관은 국민의 지식 문화적 복리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윤희윤, 2018)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전문 인력인 사서의 필요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사서는 도서관의 중장기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자료조직, 장서개발 및 정보자료관리, 정보교육, 정보서비스,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제공, 대외협력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사서배치 기준이 환경의 변화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문화체육관광부, 2013)

2) 사서배치 기준 현황과 문제점

(1) 법·제도적 현황

(가) 도종환의원발의안

- 도종환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개정 법률안 제4조를 보면 도서관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음
-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도서관을 구분하면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도서관을 구분하면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56 도서관의 종류

분류기준	대분류	세부분류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한 구분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른 구분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 또한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도서관의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은 도서관법 개정안 제38조에 제시되어 있음
-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현행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①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현행 도서관법 별표 1에는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도서관 중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건립지역의 봉사대상인구수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시설(건물면적, 열람 수)과 도서관자료(기본장서, 연간증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봉사대상인구수를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비치 규모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57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 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 비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② 사서배치 기준

-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서직 배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음
-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인력과 추가기준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본인력은 3명이고 추가기준은 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 하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는 방식임

표 58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주: 1988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2506호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③ 사서의 자격요건

-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사서의 자격요건이 제시되어 있음
 - 사서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그리고 준사서와 같이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표 59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 1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p>
2. 2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3. 준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p>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가. 도서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서에 대한 직무

-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현행 사서배치 기준을 보면 기본인력 3명과 추가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기본인력 3명이 직무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가인력은 업무량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검토 후 재분류작업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에 대해 일부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2013)가 제시한 직무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함
 -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는 영역을 기준으로 하면 중장기전략계획, 정보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정보교육, 장서개발 및 관리,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대외협력 등 8개로 분류할 수 있고 핵심직무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이와 같은 분류는 경험적으로 검증되기 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서배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60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

영역	핵심직무	
증장기전략계획	운영계획 작성 예산요구서 작성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관련 규정 제개정 민원업무처리	이용자만족도 조사 관내게시물 운영 공문서 처리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지원
정보자료조직	신착정보자료 분류 신착정보자료 MARC 입력 자료이용현황 분석	웹콘텐츠 e-book 관리 KOLAS 등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서비스	정보요구 수요조사 이용자집단별 서비스기획 참고서비스 레퍼럴서비스 정보자료제공(회원정보관리, 대출, 열람, 반납)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정보서비스 평가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관리 및 SNS 운영
정보교육	이용자집단별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이용교육 정보탐색교육	컴퓨터 및 정보 활용교육 자료이용안내자료 발간
장서개발 및 관리	장서구성계획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신착자료 안내 구입예정 자료조사 구입자료 주문, 서고 보관자료 선정	기증자료 수집 자료평가 자료점검 미이용자료 선별 자료통계작성
독서프로그램	연간독서활동 운영계획 수립 계층별 권장도서 목록 발간 독서홍보자료 발간 독서교실운영	방과 후 독서활동 지원 독서토론수업운영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수요조사 홍보	진행 평가
대외협력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교류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및 관계자 교육	작은도서관 관계자 연수 국내도서관과의 교류 기타 기관과의 협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 사서의 직무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은 조현양·김홍렬·류희경(2014)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들 수 있음
- 조현양·김홍렬·류희경(2014)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낸 후 받는 형식으로 조사하였음

- 설문조사에는 중견급 이상의 공공도서관 사서 49명이 참여하였고 도시형 도서관 사서 29명, 도농복합형 도서관의 사서 20명이 참여하였음
- 조사에 사용한 직무는 8개 대영역과 32개 중영역 그리고 115개 과업임
- 설문기간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임
- 분석결과를 보면 직무의 중요도가 높은 과업은 전체의 21.1%, 보통인 과업은 57.8% 그리고 낮은 중요도를 가진 과업은 21.1%를 차지함
- 직무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누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서 직렬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나타났음
- 전문성이 높은 과업은 전체의 5.7%, 대체로 높은 과업은 63.9%, 낮거나 매우 낮은 전문성을 보유한 과업은 27.1%와 3.3%로 나타났고 전문성이 높은 직무를 누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72.1%가 사서 직렬이라고 응답함
-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업을 누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서 직렬이 전체 과업의 73.1%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 직렬이 10.7%, 전산 직렬이 8.5%, 기타 7.7%인 것으로 나타남

표 61 공공도서관의 직무별 중요도, 전문성, 업무담당자 그리고 역할도서관

책무	과업	직무중요도			전문성				업무담당자				역할도서관		
		상	중	하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사서	전산	행정	기타	중앙 관	거점 관	분관
도서관정책, 관리영역															
운영 계획	도서관발전계획수립	93.9	6.1	0.0	81.7	18.3	0.0	0.0	95.9	2.0	34.6	0.0	97.9	12.2	6.1
	신규사업개발	60.4	35.4	4.2	26.5	69.3	4.1	0.0	91.8	10.2	36.8	0.0	79.6	49.0	34.6
	도서관규정제정 및 개정	69.4	28.6	2.0	39.6	50.1	10.5	0.0	87.8	0.0	59.2	0.0	97.9	10.2	0.0
	각종위원회	33.3	54.1	12.6	14.3	59.2	26.5	0.0	79.6	0.0	61.2	2.0	89.8	24.5	0.0
	시설·설비관리계획수립	41.7	54.1	4.2	12.5	62.5	22.9	2.1	36.7	6.1	28.6	77.6	69.4	46.9	38.7
예산 관리	예산계획수립과 편성	85.4	14.6	0.0	35.4	56.3	8.4	0.0	83.7	8.1	85.7	6.1	87.8	49.0	30.6
	예산집행 및 계약	45.8	50.1	4.2	12.3	67.3	20.4	0.0	63.3	8.1	85.7	12.2	83.6	38.9	28.6
	결산 및 회계검사	37.6	45.9	16.7	16.7	56.3	27.1	0.0	51.0	6.1	81.6	12.2	83.6	28.8	12.2
	자산 및 비품, 차량관리	8.4	62.6	29.2	0.0	33.3	52.1	14.6	40.8	22.0	73.5	53.1	77.6	67.3	53.0
보고 평가	의회, 상부기관보고	54.2	43.8	2.1	25.6	48.9	25.5	0.0	93.9	2.0	53.1	0.0	89.8	26.5	12.3
	도서관평가	54.2	39.6	6.3	23.9	63.1	13.1	0.0	100	0.0	20.4	0.0	85.7	46.9	32.6
	각종 통계작성	29.1	58.4	12.5	8.8	46.6	42.2	2.4	91.8	10.2	28.5	18.4	81.7	59.2	57.2
32.6 인6.1 사조 직관 리	인력·조직·채용 및 업무분장	73.5	26.5	0.0	29.2	60.4	10.4	0.0	71.4	0.0	75.5	0.0	96.9	28.5	20.4
	근무평정, 전보, 인사기록관리	49.0	49.0	2.0	22.9	54.2	18.7	4.2	63.2	0.0	83.7	2.0	93.9	22.4	4.1
	직원연수, 교육훈련 운영 및 관리	26.5	43.2	10.2	8.4	58.4	27.1	6.2	61.2	2.0	73.5	2.0	87.8	26.3	8.1
	복무후생관리	22.5	49.0	28.6	2.0	46.8	42.6	8.6	26.6	0.0	87.8	8.1	87.7	32.6	6.1
	비정규직, 자원봉사, 공익요원관리	12.2	55.1	32.7	2.1	16.7	68.8	12.6	71.4	2.0	61.3	38.8	69.4	68.4	75.5
	실습생 지도 및 운영	8.1	40.8	51.0	4.2	39.6	52.1	4.2	89.8	2.0	12.2	12.2	63.3	61.2	69.4
서무	문서관리, 보안업무, 우편물관리	8.1	34.7	57.1	2.1	18.7	62.5	16.7	34.8	13.0	69.6	37.0	67.4	57.2	57.2

행정	도서관행정서비스(민원처리)	22.4	63.3	14.3	6.3	59.5	29.2	4.2	69.5	4.3	67.4	17.4	67.3	61.3	63.3
	도서관이용안내 및 출입관리	6.1	42.8	51.0	2.1	22.9	58.3	16.7	43.5	4.4	21.7	56.5	63.3	61.2	77.5
시설 관리	건물의 신증축, 개보수	57.1	38.7	4.2	34.1	59.6	4.2	2.1	31.3	0.0	27.1	77.1	71.3	61.5	64.3
	시설, 화재, 보안, 시스템, 청소	16.3	63.3	20.4	10.7	46.8	34.0	8.5	8.4	8.4	14.6	91.7	63.5	62.7	68.8
	자유열람실운영과 관리	2.0	40.8	57.1	0.0	14.9	48.9	36.1	18.7	4.2	6.3	58.4	66.8	61.2	72.4
	주차장 및 이용자차량관리	2.0	20.4	77.6	0.0	10.7	31.9	57.4	4.2	2.1	2.1	66.7	69.3	62.5	70.2
자료수집영역															
수집 계획	장서개발계획수립	93.9	6.1	0.0	69.4	30.6	0.0	0.0	100	0.0	0.0	0.0	89.8	42.9	24.4
	자료기준 제개정	85.7	14.3	0.0	54.2	45.8	0.0	0.0	95.8	0.0	4.2	0.0	89.8	42.8	26.5
수집 및 등록	수집대상자료 조사 및 선정	53.1	46.9	0.0	28.6	71.4	0.0	0.0	98.0	2.0	2.0	0.0	73.5	63.2	53.0
	자료선정위원회개최	28.6	65.3	6.1	14.3	69.4	16.3	0.0	95.9	0.0	30.0	0.0	83.6	49.0	18.4
	자료구입관련실무	40.8	53.1	6.1	16.4	67.3	14.3	2.0	69.4	2.0	79.6	4.0	83.6	53.0	14.3
	자료의 인수와 검수	22.4	55.1	22.4	8.1	38.8	46.9	6.2	87.8	0.0	10.2	8.1	63.2	65.3	71.4
	기증, 교환관련 실무	8.2	57.1	34.7	6.1	36.7	55.1	2.0	79.6	2.0	6.1	20.4	63.2	59.2	67.4
	신착자료 등록과 이관	37.5	54.2	8.3	16.7	58.3	23.0	2.1	96.9	2.0	2.0	6.1	65.3	67.4	67.4
자료정리영역															
정리 계획	자료정리, 보존, 서고계획 수립	77.0	23.0	0.0	60.4	35.4	4.2	0.0	100	2.1	8.4	2.1	73.0	45.9	33.4
	자료정리지침 제개정	73.0	27.0	0.0	52.1	45.9	2.0	0.0	100	0.0	6.3	0.0	79.2	29.1	12.9
분류	자료 분류, 주제명 부여	50.2	45.8	4.0	39.6	58.3	2.1	0.0	88.9	2.1	0.0	2.1	57.1	55.1	59.1
관리	MARC입력하기	41.7	50.0	8.3	27.7	66.0	6.3	0.0	85.4	2.1	2.1	12.5	60.4	60.4	33.4
	목록검수 및 관리(아웃소싱)	19.2	70.2	10.6	10.9	63.1	23.9	2.1	83.3	0.0	4.2	14.6	56.2	58.4	75.0
	외부목록 DB 반입 및 관리	20.8	60.4	18.8	12.5	54.2	33.3	0.0	89.6	8.4	0.0	8.4	56.3	56.3	79.2
	등록 및 DB관리	21.9	59.6	8.5	25.0	47.9	27.1	0.0	91.7	16.7	0.0	4.2	60.5	50.0	58.3
	종합목록 운영, 관리	29.2	52.1	18.7	20.8	54.2	20.9	4.1	93.8	10.4	4.2	2.1	52.1	37.5	64.6

장비 작업	장비작업	4.2	27.1	68.8	2.1	12.5	56.1	29.2	40.0	0.0	2.9	25.7	47.9	56.3	81.3	
	아웃소싱장비검수 및 관리	4.2	37.5	58.3	2.1	18.8	66.7	12.5	80.0	5.7	11.5	31.5	47.9	58.4	75.0	
자료유지 및 관리영역																
서가 서고 관리	수집자료 서가배영	12.3	48.9	38.8	4.2	23.0	48.0	22.9	78.2	5.7	11.5	31.5	49.0	48.9	82.6	
	이용/반납 자료 서가 재배열	12.2	42.9	44.9	2.1	18.7	52.1	27.1	62.5	0.0	3.1	21.9	49.0	46.9	81.6	
	서가 및 서고관리	14.6	50.8	35.4	0.0	45.9	43.8	10.5	33.1	0.0	8.3	58.2	49.2	51.0	83.7	
연간 물관 리	연속간행물 체크인	12.3	38.8	49.0	0.0	16.7	64.6	18.7	66.6	2.4	7.2	26.2	49.0	34.9	81.7	
	연속간행물 배열하기	8.2	28.6	63.2	0.0	10.5	60.4	29.2	47.7	0.0	0.0	21.4	49.0	44.7	83.7	
	연속간행물 과호처리	10.2	42.8	46.9	0.0	29.2	52.1	18.8	81.0	0.0	9.5	21.4	53.0	46.9	75.5	
장서 관리	장서점검	57.1	36.7	6.1	16.7	62.6	18.8	2.1	100	0.0	2.0	12.3	59.2	55.1	75.5	
	소장 자료 관련 통계작성	40.8	46.9	12.3	16.7	56.3	22.9	4.2	98.0	0.0	0.0	6.1	65.3	46.9	67.4	
	장서평가	55.2	42.8	2.0	20.9	72.9	4.2	2.1	100	0.0	4.1	0.0	69.3	49.0	55.1	
보존 변형	제본자료, 선별, 발주, 납품, 검수	16.7	52.1	31.3	4.6	56.8	36.4	2.3	91.0	0.0	11.1	0.0	56.3	43.8	68.7	
	파손자료의 수선과 처리	8.4	29.2	62.5	2.2	23.9	56.5	17.4	53.3	0.0	4.4	22.2	53.1	47.9	77.1	
	매체변형	19.2	46.8	34.0	11.2	60.0	24.4	4.4	60.0	33.3	4.4	6.7	66.6	29.1	39.6	
자료 폐기	폐기기준 설정 및 폐기자료 선별	59.2	32.6	8.1	12.8	66.0	21.3	0.0	95.9	0.0	8.1	0.0	63.3	44.9	52.1	
	자료폐기 및 제정관련 절차수행	40.8	49.0	10.2	10.7	59.5	27.6	2.1	95.9	0.0	18.3	6.1	53.0	55.1	61.2	
이용서비스: 이용서비스운영, 열람대출서비스, 정보안내서비스																
이용 서비 스운 영	이용서비스계획수립	65.3	30.6	4.1	36.8	59.1	4.1	0.0	95.9	0.0	18.4	4.0	81.3	29.6	19.2	
	서비스지침	42.9	53.1	4.1	22.5	61.2	14.3	2.0	93.8	0.0	19.4	4.0	79.2	36.9	35.5	
	이용현황 통계 및 분석	26.5	57.1	16.3	14.3	63.3	20.4	2.0	93.7	2.0	18.3	16.3	68.8	52.1	60.5	
	이용자등록업무	10.2	40.8	49.0	0.0	18.4	69.4	12.3	55.1	6.1	8.1	40.8	58.4	54.2	81.3	
	이용자 개인정보관리	29.1	54.2	16.7	14.6	35.4	45.8	4.2	61.2	47.0	8.1	14.3	58.7	52.1	60.4	
열람 대출	관내 열람이용서비스	13.0	39.6	37.5	4.0	36.7	49.0	10.2	64.5	2.2	4.4	20.0	54.2	54.2	83.3	

서비스	관외대출 및 예약서비스	16.7	43.8	39.6	2.1	33.3	54.2	10.3	67.5	0.0	6.6	22.2	54.2	54.2	85.4
	연체자료 확인 및 관리	18.3	40.8	40.8	0.0	27.1	56.3	16.7	73.3	2.2	4.4	14.5	54.2	47.9	83.3
	자료복사서비스	4.0	8.2	87.8	0.0	6.3	39.6	54.1	28.9	0.0	0.0	42.2	54.2	47.9	85.4
	무인대출기 및 반납함 관리	10.2	14.2	75.6	2.1	8.4	54.2	35.4	37.8	11.1	4.4	35.6	56.3	47.9	93.3
	사물함, 분실함 관리	4.1	10.2	85.7	2.1	2.1	39.6	56.3	20.0	2.2	8.8	44.4	52.2	47.9	85.4
정보 안내 서비스	정보안내서비스	22.4	59.2	18.4	12.3	49.0	32.6	6.1	82.2	4.2	2.1	25.0	58.4	47.7	77.1
	온라인정보안내서비스	14.3	59.1	26.5	10.4	43.8	43.8	2.1	79.2	27.1	2.1	16.7	60.5	43.7	58.4
	신착자료 목차제공서비스	20.9	50.0	29.1	4.0	48.9	42.8	4.1	89.6	10.4	6.3	10.4	58.4	41.7	64.1
	휴대폰문자서비스	10.2	36.7	53.1	4.0	12.3	59.1	24.5	54.2	27.1	6.3	29.2	54.2	33.7	72.9
	과제 및 학습도우미서비스	14.6	37.9	37.5	12.5	36.9	36.9	8.4	79.2	12.5	12.5	20.8	60.5	45.8	66.7
이용서비스: 이용교육, 특수계층서비스,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이용 교육	이용교육계획, 홍보	22.4	73.4	4.1	16.4	71.4	12.2	0.0	97.9	2.1	8.4	8.3	63.2	42.8	51.0
	정보이용 및 도서관이용교육	26.5	69.4	4.1	16.4	69.3	14.3	0.0	100	2.1	6.3	6.3	59.1	46.9	63.2
특수 계층 서비스	특수계층서비스계획수립	36.7	61.2	2.0	24.5	65.3	10.2	0.0	98.0	0.0	14.3	4.0	69.3	42.8	46.9
	영유아서비스	30.6	59.2	10.2	18.3	67.3	14.2	0.0	95.9	0.0	8.2	10.2	63.2	51.0	65.3
	장애인서비스	22.4	63.3	14.2	16.3	67.4	14.3	2.0	85.7	0.0	8.2	10.2	59.1	48.9	51.0
	청소년서비스	14.5	65.3	10.2	16.3	73.5	10.2	0.0	98.0	0.0	10.2	2.0	63.2	51.0	51.0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자녀서비스	18.7	70.9	10.5	14.3	77.5	8.1	0.0	93.9	0.0	12.1	8.2	59.1	48.9	63.2
이동 순회 문고	이동도서관 순회문고운영계획수립	22.3	64.5	13.3	9.0	70.5	20.5	0.0	87.2	0.0	12.8	12.8	69.3	26.5	16.3
	이동도서관장서 및 회원관리	8.8	66.6	24.4	2.3	61.4	36.4	0.0	76.7	0.0	10.6	29.7	61.2	38.7	24.4
	이동도서관대출반납서비스	4.4	53.3	42.3	0.0	34.1	65.9	0.0	53.2	0.0	4.3	44.7	61.2	36.7	26.5
	순회문고장서 및 회원관리	4.2	62.5	33.4	0.0	47.9	49.0	2.1	76.6	0.0	2.1	34.1	58.2	38.7	34.4
	순회문고대출 및 반납서비스	4.2	54.1	41.7	2.2	37.0	54.4	6.5	68.1	0.0	6.4	44.7	57.1	24.5	50.5

독서 및 문화활동영역															
독서 진흥	독서진흥 및 문화활동계획수립	81.6	18.4	0.0	54.2	39.6	6.2	0.0	98.0	0.0	6.1	8.1	77.6	44.9	32.6
	독서회, 독서토론회 운영	36.7	57.1	6.1	18.8	73.0	8.2	0.0	95.9	0.0	6.1	6.1	55.1	59.2	63.3
	독서의 달 행사	44.9	53.0	2.0	25.1	60.4	14.6	0.0	95.9	0.0	6.1	4.1	63.3	63.3	59.2
	추천도서 리스트 작성	34.6	42.8	22.4	18.8	62.5	16.7	2.0	98.0	0.0	4.0	6.1	61.2	57.2	65.3
	독서프로그램	28.5	61.2	10.2	16.7	68.8	12.6	2.1	93.8	0.0	8.1	6.1	61.3	61.2	65.3
	강좌(연)프로그램	38.7	57.1	4.1	16.7	68.8	14.6	0.0	95.9	0.0	6.1	12.3	61.3	61.2	59.2
	전시회, 연주회 등 문화프로그램	22.4	53.0	24.5	10.5	60.4	27.1	2.1	87.8	0.0	20.4	16.3	57.2	63.3	61.3
	독서문화홍보자료발간 및 배포	32.6	46.9	20.4	14.6	64.6	14.6	6.3	95.9	2.0	16.3	14.2	65.3	55.1	46.9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47.0	42.8	10.2	20.9	66.7	10.4	2.1	95.9	0.0	14.3	8.1	69.3	53.0	51.0
대외 협력 및 도서 관홍 보	도서관협력계획수립	75.5	22.4	2.0	39.6	54.2	4.2	2.1	100	0.0	14.3	8.1	87.8	24.5	20.4
	학교도서관지원서비스	23.0	64.6	12.6	12.8	68.1	17.0	2.0	97.9	4.0	12.2	6.1	71.4	42.9	20.4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40.5	57.1	2.0	25.0	68.8	4.2	2.1	100	0.0	18.3	10.2	87.7	20.4	22.2
	작은도서관 업무 및 운영지원	40.8	57.2	2.0	20.9	70.8	6.2	2.1	100	0.0	10.2	6.1	75.5	40.8	14.3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36.7	59.2	4.1	18.8	68.7	10.4	2.1	98.0	2.0	24.5	12.3	83.7	28.6	26.5
상호 대차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	37.5	50.0	12.5	10.9	65.3	19.5	4.3	95.8	6.3	6.3	20.9	66.6	50.1	52.1
	원문제공서비스	22.9	52.1	25.0	12.7	68.1	17.1	2.1	87.5	12.5	8.4	10.4	73.0	39.6	29.2
홍보	홍보계획수립	63.3	32.7	4.0	27.1	62.6	8.4	2.1	89.8	2.0	38.8	14.3	83.7	24.7	14.5
	언론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38.8	53.0	8.2	6.3	68.7	23.0	2.1	8.7	6.1	34.9	18.4	73.4	59.2	49.0
	소식지, 이용안내, 자료발간	24.5	65.3	10.2	6.3	58.4	33.3	2.1	81.6	0.0	42.9	22.5	75.5	34.7	32.7
정보기술관련 활동															
시스 템계 획	정보시스템구축 및 활용계획수립	75.5	22.4	2.0	49.1	48.9	0.0	2.0	41.7	89.6	2.1	6.3	95.9	16.3	6.1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57.1	40.8	2.1	36.7	61.2	0.0	2.0	20.8	93.8	2.2	6.3	89.8	20.4	10.2
	RFID관련 운용 및 관리	28.6	67.3	4.1	14.3	65.3	18.4	2.0	52.1	85.4	2.1	8.3	89.8	32.6	24.5

시스 템관 리	H/W 선정 및 구입	41.4	44.9	4.0	16.6	69.4	2.0	2.0	22.9	93.8	2.1	6.3	95.9	12.3	6.1
	H/W/업그레이드와 유지관리	40.8	46.9	12.3	25.0	66.7	6.3	2.1	20.8	91.7	2.1	6.3	93.8	20.4	4.0
	S/W 선정구입	36.7	55.1	8.2	22.5	67.4	8.2	2.0	23.4	93.8	2.1	6.3	89.8	18.3	16.3
	S/W 라이선스 관리와 업그레이드	30.6	57.2	12.3	16.4	63.2	18.3	2.0	29.2	93.8	2.1	8.3	89.8	18.4	16.3
전자 자료	전자자료 구입 및 라이선스관리	34.7	61.3	40.0	14.2	75.5	6.3	4.0	67.3	69.3	4.1	8.1	83.6	22.4	8.1
홈페 이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61.1	36.7	2.2	22.6	67.3	6.1	4.0	36.7	83.6	4.1	8.1	85.7	14.2	6.1
전자 자료 실	각종정보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28.5	51.0	20.4	12.3	55.1	30.6	2.0	22.2	82.2	4.4	17.7	71.4	38.8	47.0
	자료실 및 좌석발급시스템관리	20.4	48.9	30.6	2.0	46.9	42.9	8.2	42.2	71.1	11.1	28.8	63.3	44.9	67.3

자료: 조현양 · 김홍렬 · 류희경(2014)

(2) 운영현황

①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주요통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2016년 현재 1,010개 이고 이는 2012년 82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임
 - 우리나라 1관당 사서수는 2016년 현재 4.2명의 수준이며, 이는 2014년 4.1명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2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2016년 현재 51,184명인 것으로 나타나 2012년 61,53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서 1인당 봉사대상인구수는 2016년 12,087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2년 14,71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

표 62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도서관수(개)	828	865	930	978	1,010
1관당 사서(정규직) 수(명)	4.2	4.2	4.1	4.2	4.2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	61,532	59,123	55,191	52,688	51,184
1관당 장서(인쇄자료) 수	94,356	97,075	96,361	95,949	97,845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명)	14,716	13,924	13,433	12,651	12,087

주: 공공도서관수 1,010= 758(지자체) + 231(교육청) + 21(사립)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② 도서관 인력배치현황

- 우리나라 도서관의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우리나라 도서관의 인력현황을 보면 국가도서관통계 기준 2016년 말 현재 등록된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43만 5,204명이며, 그 중 정규직원은

총 8,070명이고, 사서는 4,238명임

- 1관당 평균 직원수는 8.2명이고 사서수는 평균 4.2명인바 전체 인력 중 정규 직 사서는 단 1.03%에 불과함
- 최소배치인원 3명에도 못 미치는 공공도서관은 2016년 말 기준 401개관으로 전체의 40.5%임(사서 0명: 48관, 사서 1명: 163관, 사서 2명: 190관)(최재황, 2018)
- 최근 설립된 공공도서관을 보면 최근 5년간 설립된 226개관 중 115개관(50.9%), 최근 3년간 설립된 146개관 중 79개관(54.1%), 최근 1년간 개관된 33개관 중 18개관(54.5%)이 기본인력 배치기준인 3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최재황, 2018)

표 63 개별도서관 인력배치현황(2016년 말 기준)

전체 직원	도서관 수	비율 (%)	누적 비율 (%)	사서	도서관 수	비율 (%)	누적 비율 (%)
0명	22	2.2	2.2	0명	48	4.9	4.9
1명	64	6.5	8.7	1명	163	16.5	21.3
2명	79	8.0	16.7	2명	190	19.2	40.5
3명	101	10.2	26.9	3명	189	19.1	59.7
4명	104	10.5	37.4	4명	108	10.9	70.6
5명	142	14.4	51.8	5명	68	6.9	77.5
10명	19	25.9	77.7	10명	18	13.9	91.3
20명	5	13.3	91.0	20명	1	7.9	99.2
30명	4	6.2	97.2	30명	1	0.5	99.7
61명	1	2.8	100.0	38명	1	0.3	100.0

자료: 국가도서관통계 2016. 권나현(2017)에서 재인용

③ 사서직렬 법적 충원율

○ 설립주체별로 공공도서관 법적기준 충원율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연면적과 장서수에 의해 계산되는 법정 사서 배치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공립

공공도서관 989개관에 최소 23,222명의 사서가 필요하지만, 현재 4,238명만 배치되어 있어 그 충원율은 18.2%에 불과함

표 64 설립 주체별 공공도서관 법적 기준 충원율(2016년)

구분	도서관 수	현 직원 수	법정 인원	부족 인원	충원율(%)
전체	989	4,238	23,222	18,984	18.2
지자체	758	2,570	15,725	13,155	16.3
직영	567	1,730	12,913	11,183	13.4
위탁	191	840	2,812	1,972	29.9
교육청	231	1,668	7,497	5,829	22.2

자료: 권나현(2017)

-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사서수를 산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기본장서를 적용하여 2016년 1관당 봉사대상 인구 51,184명을 적용하면 6명이 되어야 함
 - 이는 면적기준 2명 초과, 장서수 기준 1명 초과(기본인력 3명 + 면적 2명 + 장서수 1명 = 6명)가 된 것임
 - 우리나라 1관당 평균 사서수가 4.2명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표 65 법적 기준에 의거한 사서 수 산정결과

봉사대상 인구 (명)	법적기준				사서수 산출 결과(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3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4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6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11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26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42

자료: 권나현(2017)

(3) 사서배치 기준의 문제점(쟁점): 재설계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사서배치 기준 관련 문제점 또는 쟁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법적 사서배치 기준은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IFLA 기준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현 기준을 적용하면 충원율이 18.2% 수준이고 한국도서관협회 기준을 적용하면 55.0% 그리고 IFLA의 기준을 적용하면 29.8%의 충원율을 보임
 - 도서관 선진국들의 경우 IFLA의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법적 사서배치 기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6 현 법정기준, 한국도서관기준, IFLA기준을 적용한 사서충원율 산출결과

(단위: 명, %)

현 사서수	현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IFLA기준	
	법정 인원	부족 인원	충원율	부족 인원	충원율	부족 인원	충원율
4,238	23,222	18,984	18.2	3,463	55.0	10,003	29.8

자료: 권나현(2017)

- 둘째,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사서에 대한 충원율이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화기반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문화·학습적 욕구를 충족하여 국가,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서개발과 보존관리의 체계성 확보, 충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 시설·공간의 개방화 추진, 디지털 환경 구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강화노력이 있어야 함
 -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문제임. 사서수가 많다고 하여 지식정보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정 수준의 사서수는 확보되어야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수요인 지방공공재, 문화기반시설,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산실, 커뮤니티센터(사랑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윤희운, 2018)
- 셋째, 공공도서관 당 기본인력을 3명으로 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최초의 사서배치기준을 마련한 1965년에는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정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수서정리, 열람서비스와 같이 직무를 구분한 후 2명을 배치하고 여기에 관장 또는 1명의 예비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3명이라고 한 것으로 추측됨(윤희

윤, 2018)

-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다수 정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사서직과 비사서직에 대한 구성 비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윤희윤(2018)은 다양한 직무분석결과 비전문직 업무가 4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의 비사서직 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 비율을 보면 최소 3명의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직렬별 구성은 영미 도서관협회의 직무분석에서 산출된 전문직 업무 대 비전문직 업무의 구성 비율인 60:40과 국내 도서관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전문직업무 대 준전문직 업무, 비전문직 업무의 구성 비율인 34.5:35.1:30.4를 준용하면 사서(전문직 + 준전문직) 2명 + 다른 직렬의 상근직(비전문직) 1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차선책으로 현행 배치기준인 사서 3명을 고수할 경우에는 비사서직 2명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함(윤희윤, 2018). IFLA와 해외 각국은 전체 직원의 1/3을 사서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권나현, 2017),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사서직과 일반직의 비율을 60%:40%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일반직을 사서직의 1/3 이내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동시에 면적 330제곱미터이하와 장서 6,000권미만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본인력 3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 이상이고 3,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바 이 역시 명확하지 않음⁴⁶⁾

46)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최소면적기준은 264제곱미터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미만은 작은도서관임. 작은도서관은 별표 2에서 사서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면적 330제곱미터이하 기본장서 6,000권 이하인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3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함. 게다가 공공도서관 시설기준의 하한선은 264제곱미터인데 기본인력 배치기준에 왜 330제곱미터를 적용하는지, 기본장서 또한 최소기준은 3,000권인데 왜 6,000권 미만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음(윤희윤, 2018)

표 67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 비교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비고
건물면적	264㎡	33㎡ 이상	· 면적 263㎡와 장서 2,999권은 공공 및 작은도서관을 구별하는 기준임 · 면적이 264㎡ 이상이면 공공도서관이고 그 미만이면 작은도서관이며, 장서 3,000권 이상이면 공공도서관이고 그 미만이면 작은도서관임 · 그럼에도 면적기준의 기본인력 배치는 3배 차이가 있음
기본장서	3,000권 이상	1,000권 이상	
사 서	3명 (강제규정)	1명 (임의규정)	

- 넷째,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종사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사서배치기준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과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 사서 및 학계·단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 1. 29.(월) ~ 3. 5.(월)(36일간)의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임
 - 현행 기준이 현실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32.1%이며, 이는 현재의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 새로운 산정방식을 설계하더라도 최소기준(93.0%)과 추가기준(91.6%)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9.4%가 최소배치인원을 현행으로 유지(최소 3명의 사서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26.0%는 최소 4명의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면 도서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경우 사서배치 기준의 재설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사서직 정원은 도서관법의 적용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바 기준인건비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쉽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⁴⁷⁾
 - 기준인건비 총액 결정방식을 보면 현재 정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공무원1인당 주민수), 복지대상자수(복지직), 하부기관수, 결산액, 지역현안 수요

47) 법리적으로는 사서배치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서 인력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음

(보건지소, 복지관, 도서관 등)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사서배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윤희운, 2018)

-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현행 기준인건비제에서 완전 자율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규제해 온 '기준 인건비'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지자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께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기준인건비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줬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승인(개별승인제)을 받거나 표준 정원제(한도 설정), 총액인건비제(2007년 도입, 인건비·인력 한도 설정), 기준인건비제(2014년 시행) 등의 규제를 받아 왔었다.

이번 개정령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력 규모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다만 방만한 인력 운용을 막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재정수요 반영)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2017.12.26 12:00

- 여섯째, 현행 사서배치 기준은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대상 인구에 비해 연면적이 넓고 장서수가 많은 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어 사서배치 기준과 연계성이 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봉사대상 인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 지, 연면적과 장서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문제가 남음
- 현재는 봉사대상 인구 수준을 기준으로 건물의 연면적과 장서수를 결정(설립요건)하고 연면적과 장서수를 기준으로 사서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사서 배치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살펴본 것처럼 봉사대상 인구의 구간기준보다 더 큰 연면적과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사서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바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되어야 할 것임. 즉, 과도하게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정 사서수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장서량에 의한 증원기준 역시 법정 필요인력을 과도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도서관현장에서 장서의 최신성과 대출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장서폐기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못하거나 장서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문제, 수장공간 부족문제, 장서유지관리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⁴⁸⁾
 - 면적의 경우에도 도서관이 여러 공간으로 구획되고 각각에 출입문이 있어 인력증가가 불가피하던 폐쇄형 공간구조에서는 일정한 면적을 증원배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개방형구조가 다수인 오늘날 면적을 배치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쉽지 않음(윤희윤, 2018)
 - 또한 면적과 장서수를 동시에 활용하면 면적과 장서수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바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즉, 장서가 증가하면 면적의 확충이 불가피하게 됨(윤희윤, 2018)
 - 또한 현재의 봉사대상인구구간이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인구구간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2만은 읍의 설치요건, 5만은 시의 설치요건 등과 연계되어 있는바 도시중심, 시군구 자치단체에 맞는 인구구간으로 이해되는바, 읍면동 단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권나현, 2017)⁴⁹⁾
 - 차제에 다양한 기준보다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를 활용하되, 봉사대상 인구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도서관

48) 장서수: 과거의 수작업 환경에서는 수서정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카피목록 내지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최근에는 증원배치기준으로서의 설득력이 약함(윤희윤, 2018)

49) 봉사대상인구구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봉사대상인구수가 적은 구간에 더 높은 비율로 인력을 배치하여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배치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권나현, 2017)

현장의 상황변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구간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봉사대상 인구를 사서배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지식문화 기반시설이고 그 수혜대상이 지역주민 전체라는 점에서 직원수 산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되어야 함. 도서관을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한다면 사서배치기준 역시 봉사대상 인구규모가 되어야 할 것임(권나현, 2017).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IFLA의 경우 인구 2,000명당 직원 1인, 보다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인구 2,500명당 직원 1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 역시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주와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정 봉사대상 인구 수당 직원 1인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도 인구구간 설정 없이 최소, 권장으로 등급화된 서비스 수준에 인력배치비율을 달리 적용할 뿐임. 도서관 기준의 국제추이가 투입자원 중심으로 복잡한 양적 기준을 지양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한 법적 기준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권나현, 2017)

표 68 국제기구 및 외국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기준 비교

정부 (기구)	재정주체	성격		결정변수			배치기준				
		법적 기준	권장 기준	봉사 대상 인구	연 면 적	장 서 수	기 본 인 력	증원인력 (인구 1,000명당 최소기준)	유자격 자비율 (%)		
국제 기구	IFLA	LFLA/UNESCO		•	•				0.4(원래는 2,500명당 1명)	33	
	ISO	ISO		•	•						
연방 국가	미국	주정부	Colorado		•	•				0.48	
			Florida		•	•				0.3	
			Georgia		•	•				0.35-0.5	
			Illinois		○	•			1	0.25	
			Kentucky			•				0.25	
			Louisiana			•				0.4	20
			North Carolina			•				0.5	33 이상
			Texas			•				0.2(10만미만)-0.36(5만 미만)	
			Utah	•		•			1.3	0.75(2,500만 이하)	
			Virginia	•		•			0.3	0.1(MLS소지자)	
			Wisconsin		○	•			1	0.4-1.1(인구구간별)	
	캐나다	주정부	Ontario	•		•			0.25-0.5(타운지역 대분관)		
			Alberta	•		•			0.1	30	
			Nova Scotia		•	•			0.4		
	호주	주정부	New South Wales		•	•			0.33	31-40	
			Queensland	•		•			0.33	31-33	
			도서관정보협회(AL IA)		•	•			0.33	30	
	단 방 국 가	영국	정부	•							
			Wales	•		•			0.4	26 이상	
대만		정부	•		•			0.1(현시립)-0.2(직할시 립)			
일본		정부	•								

주: ○는 자발적 기준임에도 법적 연계장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윤희윤(2018)

3)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 관련 선행연구

-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의 문제점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임
-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경향을 보면 기본인력에 대한 적정 인원수를 제시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사서배치 기준을 단순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존재하고 있는바 먼저, 기본인력의 적정인원수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함
 - 권나현(2017)은 도서관의 직무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문헌을 수집, 정리하는 기술업무부서(정리실, 간접봉사부서)와 이용자와 직접 만나 도서관 이용을 돕는 대민업무부서(열람실, 직접봉사부서)로 구분한 후 각각 1명의 사서를 배치하고 전문직 관장이 1명 있어야 하는바 3명의 최소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보고 있음
 - 도서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서비스부서, 연속간행물부서, 지도/시청각자료실, 기록보존소, 향토자료실 등의 신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인원배치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만, 도서관업무의 자동화 확대, 네트워크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개별 도서관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의 중앙관으로 이전(예: 자료조직업무 등)되고 있는바 인력축소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반면 장서개발, 독자상담, 지역사회 아웃리치, 빅데이터분석 등과 같은 추가업무가 발생하고 있는바 기본인력 3명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윤희운(2011)은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 업무를 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사서직을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3명이 적정함
 - 한국도서관협회(2013)의 한국도서관 기준에서는 사서직 3명 또는 사서직 2명과 기타직 1명 등 3명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을 보면 최소 필요인력 3명과 사서직 관장 1명을 최소 기본인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도서관협회(1992)가 발주하여 수행된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최소인력으로 인구 2만 명 미만 지역의 인력을 총 4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무실공간에 관장 1명, 직원 1명(목록/정리), 이용자가 있는 열람실과 대출실에 2명을 제안하고 있음
 - 직무구분에 의하여 배분하였다고 보이며, 전문직관장 1명, 목록전문사서 1명, 참고사서 1명, 대출대의 단순 업무 담당하는 비사서 1명 등임
- 대민 봉사 업무 1인, 기술봉사업무 1인 그리고 관장 1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인(손정표)이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하면 정보서비스 1인, 자료조직 1인, 장서개발 1인(윤희운)(최재황, 2018에서 재인용)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음
 -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도서관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을 봉사대상인구수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문화관광체육부 설문조사 자료)

○ 다음으로는 사서배치 기준과 관련한 연구를 보고자 함

- 도서관법 시행령과는 달리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배치기준의 결정변수는 일관되게 봉사대상 인구 수를 적용하고 있음(최재황, 2018)
- 수집 자료의 하이브리드화, 목록 및 대출의 자동화를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의 전산장비화, 폐가제 자료실의 개가제 전환 및 개방화 등을 감안하면 일정한 규모의 면적과 장서를 결정변수로 삼아 각각 사서를 증원하도록 규정한 법적 기준은 현실적 타당성이 낮거나 없음(윤희운, 2018)
- 가장 심각한 한계는 왜 면적 330㎡, 장서 6,000권마다 각각 사서 1명씩을 증원해야 하는가에 있음. 사서 증원배치는 각종 규모변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소위 ‘비례적 증가법칙’을 보정하는데 있음. 그러나 면적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장서도 연차증가량을 늘리지 않는 한 결정변수로서의 가치와 실익이 없다. 인쇄자료와 수작업 기반의 수서, 정리, 서비스 구조가 상당히 완화된 작금에는 양대 변수의 기준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따라서 개인적 유희리나 집단적 호불호가 아

년 국제적 보편성인 동시에 공무원 정원 산출의 핵심변수인 ‘봉사대상 인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함(윤희윤, 2018)

- 봉사대상 인구구간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도 있음
 - 봉사대상 인구구간은 국토의 면적이나 지형에 따라 형성되는 지역사회의 크기 및 인구밀도, 행정구역설정, 지역인구크기, 그 지역의 도서관 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는 6개 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함
 - 근거를 보면 인구 2만 미만은 면 이하의 농촌지역, 2-5만 미만은 읍, 5만 이상은 시를 구성하기 때문에 봉사대상 인구구간으로 설정
 - 5만 이상을 다시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분포와 도시의 크기를 반영한 것임(권나현, 2017)
 - 미국 위스콘신주의 도서관 기준에 수록된 인력배치에 사용된 인구구간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9 위스콘신 주 인력배치 기준: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상근직원 수

서비스 수준	봉사대상 인구구간						
	2,500 미만	2,500-4,999	5,000-9,999	10,000-24,999	25,000-49,999	50,000-99,999	100,000 이상
최저	0.5	0.4	0.4	0.4	0.4	0.4	0.4
보통	0.7	0.5	0.5	0.5	0.5	0.5	0.5
권장	0.8	0.6	0.6	0.6	0.6	0.6	0.6
우수	1.4	0.9	0.8	0.7	0.7	0.7	0.7

자료: 권나현(2017)

- 사서배치 기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70 사서배치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1)

연구주체	사서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기본인력	증원변수	
한국도서관 협회(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3명을 확보해야 하고 전체 직원의 60% 정도를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하되 정사서 대 준 사서비율은 2:1 정도가 바람직함 ·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직원 기본인력 20명에 봉사대상 인구 7만 명당 사서 1명씩 증치하도록 제안 	3명(직원)	봉사대상 인구	○
문화관광부(곽동철 등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대상 인구 5만 미만인 지역은 최소 4명이상, 인구 5-10만 명 미만인 지역은 6명이상, 10만 명 이상인 지역은 12명 이상 기본인력 배치를 제안 	인구구간별 차등(사서)	봉사대상 인구	×
윤희운(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명의 상근직원을 배치하되 사서직원 대 기타직원의 비율은 60%:40%를 적용하여 사서직원 2명과 기타 직원 1명을 두도록 제안함 · 작은도서관 등에는 사서직 상근직원 1명 이상 배치를 제안 ·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 명의 공공도서관 기준인 사서 32명을 기본인력으로 하되 30만 명 이상일 때에는 초과하는 15만 명당 사서직원 1명을 증치하고 사서직원의 2/3에 해당하는 비사서 직원 별도 추가를 제안 	3명(상근직원)	봉사대상 인구(구간별 차등)	○
한국법제연구원(손현 등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3명을 두되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6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 추가를 제안 	3명(사서)	면적	×
한국도서관 협회(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명의 정규직원(사서 3명 또는 사서 2명과 기타 1명)을 확보해야 하고 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원인력의 경우 봉사대상 인구 10만 명 미만은 9,000명당 1명, 10만 명 이상은 10,000명당 1명을 증치함 · 전체 직원의 60% 이상을 사서자격증소지자(1,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성하되 정사서 대 준사서의 구성은 2:1이 바람직함 ·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직 기본인력 20명에 당해 지역의 서비스 대상인구 10만 명당 사서 1명씩 증치함 · 공공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전체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명(사서 3명 또는 사서 2명+ 기타 1명)	면적	○
권나현(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인력은 사서 3명을 배치하고 증원인력 산출기준은 봉사대상 인구로 개정하되 개별 도서관과 지자체 상황을 반영하여 2-3단계 서비스 목표수준별로 등급화 하여 사서수 배치 	3명(사서)	면적	×

자료: 윤희운(2018)

표 71 사서배치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2)

연도	연구책임	주요내용																						
2017	문 체 부 (의견조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사서배치 최소기준 적용 (봉사대상 인구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등록 시, 최소 배치기준 적용 • (건물면적 660㎡ 이상 + 장서 6천권 이상) 최소 3명 이상 배치 • (건물면적 660㎡ 미만 + 장서 6천권 미만) 1명 이상 배치 - (사립 공공도서관) 1명 이상 배치 ◦ (2안) 사서배치 최소기준 + 봉사대상 인구 적용 -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등록 시, 최소 배치기준(3명)을 적용하고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9,000명당 1명의 사서를 추가 배치 - (사립 공공도서관) 예외 규정 																						
2016	이철재 교수 (호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 (법정 인력, 4명) 최소 필요인력 3명 + 사서직 관장 1명 ◦ (운영 인력) 업무기준과 면적기준으로 추가 적용 - (업무기준) 도서관의 역할과 지위 및 업무수준에 따라 필요인력 총원 - (면적기준) 자료이용공간 300㎡ 이상인 경우 300㎡ 초과 1명 추가 ◦ 기타직의 경우, 사서직의 1/3 이내 배치 																						
2013	손현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령 개정방안 연구 ◦ (도서관 설립 시) 필요한 최저·최소한의 '양적 기준'을 법령에 반영 - (공립 공공도서관) 최소 3명 + 연면적 330㎡ 이상인 경우 660㎡ 초과 1명 - (공립 어린이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의 배치기준 적용 - (사립 공공도서관) 예외 규정 ◦ (도서관 운영 시) 선진국 수준의 권장기준을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 																						
2013	한국 도서관협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서관 기준 : 공공도서관 직원배치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서비스대상인구</th> <th rowspan="2">기본인력</th> <th colspan="2">증원인력</th> </tr> <tr> <th>사서직원</th> <th>기타직원</th> </tr> </thead> <tbody> <tr> <td>1만 미만</td> <td rowspan="3">3명(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td> <td rowspan="3">인구 9천 명당 1명</td> <td rowspan="3">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td> </tr> <tr> <td>1만-2만미만</td> </tr> <tr> <td>2만-5만미만</td> </tr> <tr> <td>5만-10만미만</td> <td rowspan="3">2명과 기타 직원 1명)</td> <td rowspan="3">인구 1만 명당 1명</td> <td rowspan="3"></td> </tr> <tr> <td>10만-30만미만</td> </tr> <tr> <td>30만-50만미만</td> </tr> <tr> <td>50만 이상</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1만 미만인 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 1인 이상을 배치 * 50만명 이상인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직원 기본인력(20명)에 인구 10만 명당 사서직원 1명씩 증원하고, 사서직원의 1/3에 상당하는 기타직원을 추가</p>	서비스대상인구	기본인력	증원인력		사서직원	기타직원	1만 미만	3명(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인구 9천 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2만미만	2만-5만미만	5만-10만미만	2명과 기타 직원 1명)	인구 1만 명당 1명		10만-30만미만	30만-50만미만	50만 이상			
서비스대상인구	기본인력	증원인력																						
		사서직원	기타직원																					
1만 미만	3명(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인구 9천 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2만미만																								
2만-5만미만																								
5만-10만미만	2명과 기타 직원 1명)	인구 1만 명당 1명																						
10만-30만미만																								
30만-50만미만																								
50만 이상																								
2010	황혜신 연구원 (한국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방식 비교 연구 ◦ 전체 배치 직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도서관법 상의 기준에 따라 사서직만을 배치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턱 없이 모자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전 																						

	연구원)	<p>체 직원수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p> </div>																
2009	한국 도서관협회	<p>▪ 도서관편람 :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한국도서관기준(2003)의 권장기준</th> </tr> <tr> <th>봉사대상 인구</th> <th>사서직원</th> </tr> </thead> <tbody> <tr> <td>5만미만</td> <td>인구 4,200인당 1인 이상</td> </tr> <tr> <td>5만-10만미만</td> <td>인구 4,800인당 1인 이상</td> </tr> <tr> <td>10만-20만미만</td> <td>인구 5,300인당 1인 이상</td> </tr> <tr> <td>20만-50만미만</td> <td>인구 5,800인당 1인 이상</td> </tr> <tr> <td>50만-200만미만</td> <td>인구 6,300인당 1인 이상</td> </tr> <tr> <td>200만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p>가. 공공도서관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3인 이상의 사서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서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최소 3인 이상의 사서직원을 확보해야 한다.</p>	한국도서관기준(2003)의 권장기준		봉사대상 인구	사서직원	5만미만	인구 4,200인당 1인 이상	5만-10만미만	인구 4,800인당 1인 이상	10만-20만미만	인구 5,300인당 1인 이상	20만-50만미만	인구 5,800인당 1인 이상	50만-200만미만	인구 6,300인당 1인 이상	200만 이상	
한국도서관기준(2003)의 권장기준																		
봉사대상 인구	사서직원																	
5만미만	인구 4,200인당 1인 이상																	
5만-10만미만	인구 4,800인당 1인 이상																	
10만-20만미만	인구 5,300인당 1인 이상																	
20만-50만미만	인구 5,800인당 1인 이상																	
50만-200만미만	인구 6,300인당 1인 이상																	
200만 이상																		
2007	곽동철 교수 (한국비블리아학회)	<p>▪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만 미만 : 최소 4명 이상 - 인구 5만~10만 미만 : 5만 명당 6명 이상 - 인구 10만 이상 : 10만 명당 12명 이상 ◦ (사립 공공도서관) 공립 최소기준 적용(최소 4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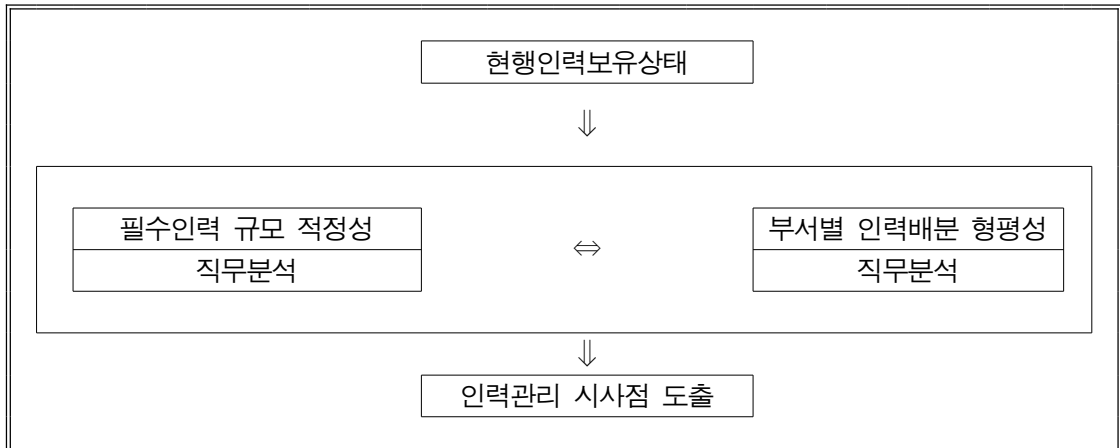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4) 직무분석결과

(1) 접근방법

- 직무분석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종합하는 관리활동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나, 조직진단에서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 하나는 해당 도서관의 총 인력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량 대비 부서별 인력의 형평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그림 42 직무분석의 목적



- 직무분석의 절차는 몇 개의 순차적 단계를 거침
 -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 분석 대상 직무, 직무분석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집할 정보의 종류 등을 결정하고
 - 제2단계는 설계단계로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을 결정하며
 - 제3단계인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에서는 직무요인 파악,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및 자료의 분석과 종합화를 시도하며
 - 제4단계에서는 최종결과로 부서별 인력운영현황을 제시함

표 72 직무분석의 절차

단계	이론적 절차	실제 절차
준비단계 (1단계)	분석 대상 직무의 선정	도서관 전체 직무
	직무 분석의 목적 결정	적정인원의 산정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분석의 필요성 인식	직무분석 SHEET설명회 개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 명시	인적 사항과 직무사항
설계단계 (2단계)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결정	도서관 전체 직무, 전체 공무원
	자료 수집 방법 결정	설문지법(직접면접에 의하여 보완)
	자료 분석 방법 결정	Excell, SAS패키지 이용분석
자료수집 분석단계 (3단계)	직무요인의 특성파악	업무량, 평균근무시간 등
	자료의 수집	설문지회수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직접면접방법활용
	자료의 분석과 종합	통계패키지 활용 분석
결과정리단계 (4단계)	결과정리	부서별 인력운영현황

- 직무분석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각각이 가지는 분석 상 장·단점으로 인하여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음
 - 다만, 진단의 주체 및 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되, 그 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하여야 함
 - 실제적으로는 조사소요시간 및 비용, 현실적 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기술법을 일반적으로 활용하되, 업무량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고 반복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직무분석을 위한 진단과정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
 - 제1단계는 조사표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고
 - 제2단계는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업무량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며
 - 제3단계는 업무량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서관별 필수인력 규모를 산정하여 인

력재배분의 기초자료를 작성하며

- 제4단계는 도서관의 인력을 재 배분함

표 73 직무분석의 진단과정

구 분	내 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석 결과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및 총 업무량 정리 - 일일평균 및 연평균 업무량 기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의 타당성 검토 및 재조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일일평균 및 연평균 업무량의 타당성 검토 - 불합리한 기관에 대한 재조사여부 판단 및 재조사 실시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필수인력 규모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근무시간기준 대비 초과업무량에 대한 소요인력 산정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의 재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인력의 재배분

- 직무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됨
 - 하나는 해당 도서관 전체의 필수인력규모를 산정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업무량 대비 각 부서별 인력배분의 기준을 도출하는 것임
- 필수인력규모는 법적 규정시간의 근무를 토대로 현재 업무량 대비 필수추가 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 실제 총 업무량과 법정근무일수로 조정한 1일 평균근무시간을 토대로 필수인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평균근무일수와 1일 평균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 먼저, 연평균근무일수는 국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근무일수(2017년 기준 245일, 휴가 5일을 전제하면 240일 정도)를 말하고, 1일 평균근무시간은 법정근무시간이 중식시간을 제외할 때 일반적으로 8시간을 적용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필수인력규모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사용함

표 74 필수인력규모산정모형

- $T_1 = D_i \times W_i$: 실제 총 업무량<식 1>
- $T_2 = \frac{T_1}{LD}$: 조정된 1일평균근무시간.....<식 2>
- $T_3 = ((T_2 - S_i) \times M_i) / S_i$ 도서관의 부족인원.....<식 3>
· D_i 는 i 라는 도서관의 평균 근무일수를 의미함
· W_i 는 i 라는 도서관의 평균 업무처리시간을 의미함
· LD 는 법정근무일수를 의미함
· M_i 는 현원을 의미함
· S_i 는 1일 기준근무시간을 의미함

(2) 인력산정결과

(가) 직무조사 후 업무량분석을 통한 인력산정결과

-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직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236명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은 도서관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실시하였음
 - 도서관의 유형은 공공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75 응답자 분포

구분	공공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기타	계
응답자수	196	13	20	7	236
비율	83.0	5.5	8.5	3.0	100.0

- 도서관에 대한 업무량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근무일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작은도서관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결과 1일 평균근무시간은 광역대표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공공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남

표 76 도서관에 대한 업무량분석결과

구분	연 평균근무일수	1일 평균근무시간		변이계수
		240일기준 (5일휴가상정)	245일 기준 (법정근로일수)	
공공도서관	261.0	9.0	8.8	0.1570
광역대표도서관	250.9	9.3	9.1	0.1119
작은도서관	252.3	6.4	6.3	0.2630

-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작은도서관의 인력규모는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공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은 인력증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도서관은 240일을 법정근무일수라고 가정하면 모든 구성원이 1일 평균 9.0시간, 245일을 법정근무일수라고 가정하면 모든 구성원이 1일 평균 8.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확충이 필요함
 - 광역대표도서관은 240일을 법정근무일수라고 가정하면 모든 구성원이 1일 평균 9.3시간, 245일을 법정근무일수라고 가정하면 모든 구성원이 1일 평균 9.1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확충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은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는바 인력증원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⁵⁰⁾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임. 즉, 1인당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바 1인당 1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해당 기관의 사서수 8명당 1명의 충원이 있어야 한

50) 도서관별로 정확한 인력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산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frac{[(1\text{관당 사서수} \times \text{해당 도서관 1일 평균근무시간}) - (1\text{관당 사서수} \times 1\text{일 평균근무시간(법정 기준) 8시간})]{8\text{시간}}$$

다는 것을 의미함

(나) 법정외사무의 처리에 따른 인력산정결과

- 일반적으로 직무는 기구의 분화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즉,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유형의 규모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분화범위와 인력규모의 수준이 결정됨
 - 이는 이질적 기능의 통합관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통할한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유형의 기능은 가급적 다른 기구를 통하여 대응토록 하는 논리에 근거함
- 직무조사결과를 보면 법정외사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과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종 도서관행사 준비 및 운영
 - 노인 일자리 출근부, 공공근로 출근부, 기타 인력관리 및 도서관 운영점검
 - 도서관 내외부 청사관리
 - 태풍 등 기상재해 비상근무
 - 문화강좌 안내문자 및 강좌실 관리
 - 축제참여/본청 행사참여 등
 - 기타
 -

(다) 직무범위와 직무구성요소에 의한 인력산정

- 직무분석의 또 다른 용도 중 하나는 업무범위와 직무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인력산출과 연계하는 것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나열하고 수행여부, 소요시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가능할 것이나 본 조사에서는 직무분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직무를 조사하지는 않았음
- 또한 도서관 유형별로 직무분석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나 실제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업무향산정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였음

-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분석만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무범위와 구성 요소를 도출하여 인력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안)

(1) 기본방향

-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하여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음
 - 구체적인 내용은 (3) 사서배치 기준의 문제점(쟁점): 재설계의 필요성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현행 사서배치 기준은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봉사대상 인구구간보다 더 큰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사서직의 규모를 과도하게 충원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연면적과 장서수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이 역시 과도한 충원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기본인력 3인에 대한 근거, 연면적과 장서수에 대한 설정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행 방식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여건의 변화(도서관의 역할 다양화 및 확대, 정보화로 인해 과거 다수의 시간이 소유되었던 업무량의 축소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그리고 전문가들 중 일부는 봉사대상 인구를 중심으로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봉사대상 인구의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전체를 봉사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의 인구수를 봉사대상으로 할 것인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선정(봉사권역)⁵¹⁾하여 봉사대상 인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도서관에는 지역중앙관,⁵²⁾ 분관,⁵³⁾ 지역대표도서관,⁵⁴⁾ 작은도서관⁵⁵⁾ 등이 존

51) 공공도서관이 봉사하는 일정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함

52) 광역차원의 지역대표도서관을 제외하고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말함.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중앙관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관 및 서비스 거점의 수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가

재하는바 봉사권역을 선정한다고 하면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임. 현재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표 77 거리에 따른 봉사대상 인구 범위(직선거리 기준)

구분	지역중앙관	분관	작은도서관
반경	2km 이하	1km 이하	500m 이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 봉사대상 인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도시지역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봉사권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봉사대상 인구가 커질 수 있을 것임
- 봉사대상 인구 경우 구간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봉사대상 인구 몇 명당 사서의 수를 정할 것인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
-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한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준인건비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임
- 사서배치 기준을 새롭게 한다고 하여도 현행 기준인건비제 하에서는 현행보다 급증하는 수준에서 사서직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인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나타날 수 있지만 자치단체내 도서관협력망 구성, 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정책 수립, 시행 등의 본질적인 임무와 기능은 변하지 않음. 단, 자치단체 내에 도서관정책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하나의 중앙관 대신 지역별로 큰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각 분관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정책의 수립, 시행기능은 정책부서에서 도서관협력망을 바탕으로 한 도서관 운영은 각각의 도서관에서 분담하게 되며, 중앙관과 구분하며 거점도서관이라고 함

- 53) 중앙관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별로 설치한 도서관을 말함. 분관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규모에 제한은 없으며 대부분 중앙관의 규모에 따라 분관의 규모에 차이가 있음. 분관의 경우 예산, 인력운영, 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의 일부를 중앙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함
- 54) 광역 시도단위지역을 대표하여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함
- 55)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문고형태의 도서관을 지칭함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향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은 강화될 것이고 이는 기준인건비제에 영향을 미쳐 좀 더 자율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율형부터 완전통제(규제)형까지의 대안을 고려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서관의 인력규모를 산정하여 배치하는 기준부터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종속되도록 하는 완전 통제(규제)형 대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규제의 범위)
 - 수용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소극적인 대안부터 가장 급진적인 대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여 제안하고자 함(개편의 폭)
 - 수용가능성,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가장 소극적인 대안, 즉 현행 틀을 유지하거나 일부의 수정을 하는 대안이고 가장 급진적인 대안은 기존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틀을 설계한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의미함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타나는바 각 유형별로 고려,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78 사서배치 기준 재설계를 위한 접근 틀

		규제의 범위	
		통제(규제)형	자율형
개편의 폭	소극적 개편형	II (소극·통제형)	I (소극·자율형)
	적극적 개편형	III (적극·통제형)	IV (적극·자율형)

- 사서배치 기준을 재설계할 때에는 가장 중점이 되는 봉사대상 인구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봉사대상 인구를 도서관이 설치되는 행정구역의 전체 인구라고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 둘째,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구,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다만, 군단위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위적 역할에 따라 중앙관은 전체 행정단위 인구, 분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 셋째, 도서관의 위치에서 반경을 기준으로 봉사권역을 설정하고 봉사권역내의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경우임. 현재 봉사대상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정한 반경 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규정하는 것임. 이는 다음과 같음

표 79 봉사대상 권역(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앙관(거점관)	2km	2.5km	3km
분관	1km	1.5km	2km

- 위의 3가지 안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이는 봉사대상 인구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쉽게 봉사대상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함. 그리고 도서관의 지위적 역할(일반적으로 중앙관 및 거점관, 분관)에 따라서 봉사대상 인구가 달리 산정되어야 하므로 제1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앙관 및 거점관, 그리고 분관의 정의가 도서관법에 제시되되거나, 중앙관 분관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광역교육청 소속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소속 도서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봉사대상 인구를 산정함
- 즉, 봉사대상 인구는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2) 대안

① I (소극·자율형)

○ 소극·자율형의 의미

- 소극적인 개편형이라는 의미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 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다만, 현행 사서배치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임

- 자율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제시하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즉, 기본인력만 제시하고 추가인력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임

○ 대안

- 봉사대상 인구 구간범위 재설정

·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구간범위를 좀 더 하위단위로 확대하는 대안임

· 현행 6단계를 7단계로 확대하는 대안이며, 이는 면단위까지 확대한 것임

- 면적과 장서수 재설정

· 등록제도에서 제시하였던 대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후 최적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바 여기에서는 선정된 최종안을 정리하여 포함하고자 함

· 이 경우 면적은 1만미만 297㎡ 이상, 1만~2만 미만 330㎡ 이상이 됨

· 기본 장서수 역시 3,000권부터 170,000권까지의 범위를 가짐

표 80 봉사대상구간의 조정(안): 소극·자율형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1만 미만	297 이상	3,000 이상	기본 장서의 10%
1만 이상 2만 미만	330 이상	6,0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2,0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31,0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50,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110,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70,000 이상	

– 기본인력과 추가인력기준 재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인력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기본인력에 대해서만 제시함
- 사서의 기본인력은 업무량을 고려할 때 3명을 유지하되 1명의 비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함. 다만, 비사서직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포함하고자 함
- 도서관이 사서직으로만 운영될 수는 없느냐 비사서직인력을 설계하여야 함.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비사서직은 사서직의 20%~40%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33%인바 여기에서도 33%를 기준으로 하고자 함. 즉, 1/3수준을 제시하고자 함. 따라서 기본인력은 사서직 3명과 비사서직 1명으로 구성함

○ 장단점

- 사서직과 비사서직의 규모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함
- 추가규모에 대해서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일부이지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반면, 추가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인력 외 인력을 추가증원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음. 추가인력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본인력만 충족시키려 할 뿐 증원하려는 움직임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② II(소극통제형)

○ 소극통제형의 의미

- 소극적인 개편형이라는 의미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 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다만, 현행 사서배치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임
- 통제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즉, 기본인력만 제시하고 추가인력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틀을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임

○ 대안

- 봉사대상구간의 범위 재설정
 -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구간범위를 좀 더 하위단위로 확대하는 대안임
 - 현행 6단계를 7단계로 확대하는 대안이며, 이는 면단위까지 확대한 것임

표 81 봉사대상구간의 조정(안): 소극·통제형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1만 미만	297 이상	3,000 이상	기본 장서의 10%
1만 이상 2만 미만	330 이상	6,0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2,0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31,0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50,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110,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70,000 이상	

- 기본인력과 추가인력기준 재설정: 기본인력과 추가인력 정교하게 제시
 - 통제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인력 뿐만 아니라 추가인력에 대한 기준 역시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여기에서는 기존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고자 함

표 82 추가인력의 산정(안)

기본인력	추가인력	
	연면적	장서수
4명 (사서직원 3명, 비사서 직원 1명)	33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6천권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 장단점

- 사서직과 비사서직의 규모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함

- 추가인력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도서관의 입장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③ III(적극·통제형)

○ 적극·통제형의 의미

- 적극적인 개편형이라는 의미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활용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추어 봉사대상 인구로 사서배치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임
 - 여기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를 봉사대상 인구로 설정한 후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서규모를 설정한 후 도서관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것과 봉사권역을 설정한 후 이를 봉사대상 인구로 설정한 후 도서관별로 사서규모를 책정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음
- 통제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즉, 기본인력만 제시하고 추가인력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틀을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임

○ 대안

-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설정
 -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로 되어 있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을 봉사대상 인구로 전환하는 것임
 - 이 경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봉사대상 인구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될 것임
 - 본 연구에서의 봉사대상 인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법정동, 법정면 전체

- 의 인구를 말함
- 이 경우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한데, 하나는 기본인력을 설정하고 봉사대상 인구 증가에 따라 추가인력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본인력을 정하지 않은 채 봉사대상 인구 따라 접근하는 방법임
 - 본 연구에서는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인력을 앞의 대안과 마찬가지로 4명(사서직 3명과 비사서직 1명)으로 한 후 봉사대상 인구 증가에 따라 추가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함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경우 봉사대상 인구 2,500명당 직원 1명을 배치하고 직원의 1/3를 사서로 배치함. 구체적으로는 인구 4,200명 당 사서 1명의 비율임
 - 한국도서관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인력 3명을 배치하고 증원인력으로 봉사대상 인구 1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구 9천 명당 사서 1명, 인구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사서 1명을 배치. 전체 직원의 60% 이상을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기준을 변형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고자 함. 즉, 등록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 9천 명당 1명의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83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

기본인력	추가인력	
	사서직원	비사서 직원
4명 (사서직원 3명, 비사서 직원 1)	인구 9천 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 만약 기본인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봉사대상 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84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

봉사대상 인구	추가인력	
	사서직원	비사서 직원
1만 미만	2,500명당 1인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2만미만	3,500명당 1인	
2만-5만미만	4,500명당 1인	
5만-10만미만	5,500명당 1인	
10만-30만미만	8,500명당 1인	
30만-50만미만	9,000명당 1인	
50만 이상	9,500명당 1인	

- 다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봉사대상 인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더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면 10만 명 미만일 경우 5천 명당 1명의 사서직원을 추가증원하고 사서직원의 1/3을 비사서직원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이 될 것임.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봉사권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봉사대상 인구가 커질 수 있을 것임

○ 장단점

- 사서배치 기준이 단순화되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개선대안을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의 사서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바 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④ IV(적극·자율형)

○ 적극·자율형의 의미

- 적극적인 개편형이라는 의미는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 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활용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추어 봉사대상 인수로 사서배치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임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 자율형이라는 의미는 사서배치 기준을 제시하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대안

-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설정: 소극, 권장형, 보통 등으로 유형화하여 제시
 - 적극·통제형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좀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서배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위스콘신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85 적극·자율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기준

봉사대상 인구	봉사대상 인구구간						
	1만 미만	1만 이상 -2만 미만	2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최저	0.4	0.3	0.2	0.2	0.2	0.1	0.1
보통	0.5	0.4	0.3	0.3	0.3	0.2	0.2
권장	0.6	0.5	0.4	0.4	0.4	0.3	0.3
우수	1.0	0.8	0.5	0.5	0.5	0.4	0.4

○ 장단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최저, 보통, 권장, 우수와 같은 수준을 선정한 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통제정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3) 광역대표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의 규모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규모를 보면 3-37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면적과 장서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대전 한밭도서관의 경우 장서수는 821,668권으로 가장 많으며 인력규모 역시 37명으로 가장 많음. 반면 전북과 경남은 6만권이 조금 넘는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는바 인력규모 역시 3명과 5명으로 나타나 소규모임을 알 수 있음

표 68 우리나라 광역대표도서관 현황

구분	인력(사서)
서울	24
부산	28
대구	26
인천	11
광주	14
대전	37
울산	16
세종(예)	-
경기	7
강원	-
충북	-
충남	9
전북	3
전남	9
경북(예)	-
경남	5
제주	8

- 광역대표도서관에 배치되는 인력은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봉사대상인구의 구간은 광역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500만, 500만 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인력규모는 공공도서관의 접근 방법과 동일하게 기본인력과 추가인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먼저 기본인력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공공도서관은 4명(사서 3명, 비사서 1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를 기준으로 확대하는 대안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동일하게 접근하되 기본인력은 공공도서관의 규모보다는 커야할 것으로 보여짐

- 기본인력은 현행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의 평균 인력규모가 10명 정도(교육청 소속은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10명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10명을 기본인력으로 산정하여 제안하고자 함
 - 10명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광역대표도서관의 향후 역할 증대를 고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추가인력은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공도서관이 9천명당 1명의 증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만명당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함
 - 예를 들면 170만명의 봉사대상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표도서관의 경우에는 기본인력 10명 + 7명으로 해서 17명이 됨
 - 다만,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이 인구 1,000만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력규모가 급증하게 되는바 증원인력규모를 50명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69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기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인력(명)	
	기본인력	추가인력
100만 미만	10명	100만명 기준으로 하되 초과하는 봉사대상인구 10만명당 1명 증원
100만 ~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미만		
300만 ~ 500만 미만		
500만 이상		증원인력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은 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은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할 때 사서를 1명 이상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현행 유지하는 대안을 제안함
- 작은 도서관의 질적 향상과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1명 이상의 사서는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소결

- 사서배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현행 사서배치 기준은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몇 가지의 문제가 발견됨
 - 봉사대상 인구구간보다 더 큰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사서직의 규모를 과도하게 충원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연면적과 장서수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이 역시 과도한 충원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기본인력 3인에 대한 근거, 연면적과 장서수에 대한 설정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행 방식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여건의 변화(도서관의 역할 다양화 및 확대, 정보화로 인해 과거 다수의 시간이 소유되었던 업무량의 축소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그리고 전문가들 중 일부는 봉사대상 인구를 중심으로 사서배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여기에서는 봉사대상 인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함
- 여기에서는 사서배치기준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규제의 범위(통제형·자율형), 개편의 폭(소극적 개편형·적극적 개편형)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만든 후 대안을 제시하였음
 - 소극·자율형: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현행 사서배치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와 사서배치 기준을 제시하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소극·통제형: 현행 사서배치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봉사대상 인구, 연면적, 장서수, 기본인력, 추가인력이라는 구성요소를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현행

사서배치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와 사서배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적극통제형: 국제기준에 맞추어 봉사대상 인구로 사서배치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와 사서배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임

- 적극자율형: 국제기준에 맞추어 봉사대상 인구로 사서배치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와 사서배치 기준을 제시하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4개의 유형별 대안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한 사서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광역대표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서배치기준을 제안하였음

- 광역대표도서관은 인구 100만명 단위로 봉사대상인구구간을 설정한 후 10명을 기본인력으로 하고 10만명당 1명의 추가인력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음

- 다만, 1000만이 넘는 경우 사서수가 급증하게 되는바 추가인력을 50명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작은도서관은 질적 향상 및 난립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4. 지자체 자율형 기준 마련(안)

1) 제안 배경

-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를 통해 지자체의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효율성 증대 필요
 -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진행 중
 - 이러한 국가 단위의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지역 주민에게 보다 현실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임
- 기존 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으로 이원화 된 상황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도서관 등록을 위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그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상이하여 통일된 정책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
 -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도서관 법률 개정한다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임

2) 대안

- 기존의 사서배치 기준에서는 최소 사서 인원을 3명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지자체의 자율에 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간 설정을 하여 제시하는 것임
 - 즉, 제4장 제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역단위(대표도서관)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봉사대상인구를 기초로 필요한 사서인원 기준(구간 마련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거점관과 분관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총 사서 인

원을 기준에 의해 확보가 되면 각 도서관별 사서 배치는 지자체의 자율에 맞
기는 것임

- 이럴 경우, 각 도서관별 사서 기준이 아닌 지자체별 사서 기준이 설정되고,
일정 구간 별 기준 사서가 확보될 때 마다 도서관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
록 하게 됨
 - 이러한 기준 마련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서 추가 확보를 통해 도서관 등록을 배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
는 유인책인 될 수 있음
 - 아울러 도농복합지역처럼 동일 행정구역 내 봉사대상 인구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도서관별 사서배치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서배치를 통해 도서관 등록을 늘려갈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 대안은 지자체 단위의 봉사대상인구 산정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앞서 개념 정의한 봉사대상인구의 정의가 중요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구간별 최소사서인원, 면적, 장서를 등록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도서관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입법사항

1.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1) 개관

- 「도서관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26개 사무로 집계됨
- 이 중 본 연구의 중심에 놓이는 사항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속하는 도서관 등록요건(사서, 도서관자료, 시설)(현행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7호)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인력, 시설, 장서 기준(현행 도서관법 제22조제2항 참조)에 관한 사항임

2) 사서 배치 기준

- 앞서 제시된 “적극·통제형의 사서 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도서관의 기본인력(사서 3, 비사서1명)을 4명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외에 추가인력을 두고 있음
- 이 안에 따라 실제 시행령 자체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행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2의 내용만 변경되므로 여기서는 개정되는 별표2의 내용을 기술함

표 86 적극·통제형의 사서 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1안)

봉사대상 인구	기본인력	추가인력	
		사서직원	비사서 직원
1만 미만	4명 (사서직원 3명, 비사서 직원 1)	인구 9천 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2만미만			
2만-5만미만			
5만-10만미만			
10만-30만미만			
30만-50만미만			
50만 이상			

- 이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현행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개정)

표 87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제 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현행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에 대하여 기본인력(사서직원 3명, 비사서직원 1명): 4명 ·봉사대상 인구 10만 이하: 인구 9천 명당 사서직원은 1명을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 추가 ·봉사대상 인구 10만 이상: 인구 1만 명당 사서직원은 1명을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 추가

○ 그리고 “적극·통제형의 사서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은 기본인력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봉사대상 인구가 1만 미만인 경우 사서직원은 2,500명당 1인을 추가하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을 추가하는 방안임

표 88 적극·통제형의 사서 배치 기준(안): 봉사대상 인구 기준(2안)

봉사대상 인구	추가인력	
	사서직원	비사서 직원
1만 미만	2,500명당 1인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1만-2만미만	3,500명당 1인	
2만-5만미만	4,500명당 1인	
5만-10만미만	5,500명당 1인	
10만-30만미만	8,500명당 1인	
30만-50만미만	9,000명당 1인	
50만 이상	9,500명당 1인	

- 이에 따른 개정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음

표 89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현행과 같음)	·봉사대상 인구 1만 미만: 사서직원 2,500명당 1인 ·1만-2만 미만: 3,500명당 사서직원 1인 ·2만-5만 미만: 4,500명당 사서직원 1인 ·5만-10만 미만: 5,500명당 사서직원 1인 ·10만-30만 미만: 8,500명당 사서직원 1인 ·30만-50만 미만: 9,000명당 사서직원 1인 ·50만 이상: 9,500명당 사서직원 1인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3) 등록기준

- 도서관의 등록기준은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대한 골격은 이를 따랐으나 세부적인 등록요건 및 내용은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90 도서관 등록 일반규정(법 제5조제1항 관련)

<p>1. 모든 등록 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mission),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령 또는 정관을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도서관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 모든 등록 도서관은 설립목적과 사명에 적합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p> <p>가. 장서관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집합(collection)을 말한다.</p> <p>3. 모든 등록도서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력, 장서, 면적(시설포함)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도서관은 자료이용공간, 업무공간, 문화교육공간, 공유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도서관 규모나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p> <p>나. 서고는 장서를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4. 모든 등록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과 설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5. 모든 등록도서관은 도서관 간판, 각종 홍보물, 발간물, 홈페이지 등 도서관 명칭을 표기하는 곳에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록표시를 할 때에는“국립(또는 공립, 사립) ○○ 등록도서관”또는“국립 (또는 공립, 사립) 등록도서관”으로 표시한다.</p> <p>6. 등록할 때에는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7. 등록 신청을 한 도서관이 등록 심의를 거쳐 상기의 등록기준과 아래의 장서, 인력, 면적(시설포함) 등 3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단, 상기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3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등록으로 하여 등록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1개 항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지 못하면 등록 불가로 판정된다.</p> <p>8. 도서관이 개관 후, 6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명령을 내려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p>
--

- 위 기준과 연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등록 규정을 참고하고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⁵⁶⁾ 「도서관법 시행령」 (안)(현행

56) 현행 실정 도서관법을 기준으로 도서관 등록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서관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어 시행령에도 개정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서 여기서는 현행 도서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안을 제시해 본다. ‘제5조(도서관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에 포함(개정)되어야 할 구성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91 도서관 등록에 관한 규정(안)(법 제5조제1항 개정 및 ‘시행령 제3조의2’ 신설)

시행령 조항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령(안)57)
등록신청	<p>제8조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또는 자료의 이용료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① 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국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신청서 2. 시설명세서 3. 도서관자료목록 4. 사서명단을 포함한 직원명단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가치, 사서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도서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등록심의회는 도서관계, 학계, 전문가, 지역인사 등 10인 이내로 등록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등록요건	<p>제9조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p>	<p>① 법 제35조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은 도서관의 자료, 사서수, 시설의 규모에 따라 중앙관(거점관)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는 요건”이란 별표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등록변경	<p>제10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종류 소재지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시설명세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p> <p>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박물관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명칭 2. 도서관의 소재지 3. 시설명세서 4. 사서 명단(감소되었을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2. 도서관 등록증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등록표시	(제11조)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시·군·구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록심의 등		<등록신청>의 제3항에 규정함

57) 현행 시행령 기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여기 해당사항 규정함.

- 위의 등록과 관련된 두 기준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과 연계하여 위에서 제시된 바를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표 92 '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시행령(안)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안)																																																						
공동요건		공동요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통요건 외 - 자료이용공간, 문화교육공간, 업무공간, 공유공간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 별 요 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공공도서관]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th> <th>학예사</th> <th>시설</th> </tr> </thead> <tbody> <tr> <td>종합 박물관</td> <td>각 분야별 100점 이상</td> <td>각 분야별 1명 이상</td> <td>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td> </tr> <tr> <td>전문 박물관</td> <td>100점 이상</td> <td>1명 이상</td> <td>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td> </tr> <tr> <td>미술관</td> <td>100점 이상</td> <td>1명 이상</td> <td>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td> </tr> <tr> <td>동물원</td> <td>100종 이상</td> <td>1명 이상</td> <td>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td> </tr> <tr> <td>식물원</td> <td>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td> <td>1명 이상</td> <td>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td> </tr> <tr> <td>수족관</td> <td>100종 이상</td> <td>1명 이상</td> <td>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td> </tr> </tbody> </table>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table border="1"> <thead> <tr> <th>봉사대상인구</th> <th>기본장서(권)</th> <th>인력</th> <th>시설(m²)</th> </tr> </thead> <tbody> <tr> <td>1만 미만</td> <td>3,000 이상</td> <td rowspan="8">사 서 최 소 배 치 기 준</td> <td>297 이상</td> </tr> <tr> <td>1만~2만 미만</td> <td>6,000 이상</td> <td>330 이상</td> </tr> <tr> <td>2만 ~ 5만 미만</td> <td>12,000 이상</td> <td>660 이상</td> </tr> <tr> <td>5만 ~ 10만 미만</td> <td>31,000 이상</td> <td>990 이상</td> </tr> <tr> <td>10만~30만 미만</td> <td>50,000 이상</td> <td>1,650 이상</td> </tr> <tr> <td>30만~50만 미만</td> <td>110,000 이상</td> <td>3,300 이상</td> </tr> <tr> <td>50만 이상</td> <td>170,000 이상</td> <td>4,950 이상</td> </tr> </tbody> </table>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시설(m ²)	1만 미만	3,000 이상	사 서 최 소 배 치 기 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시설(m ²)																																																						
1만 미만	3,000 이상	사 서 최 소 배 치 기 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p>※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 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p> <p>※ 봉사대상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도서관은 등록 시 기본장서의 50% 이상을 구비하고, 7년 후 기본장서를 확보해야한다.</p> <p>※기존의 운영 중인 도서관의 등록 시, 면적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p>																																																					
			[광역대표도서관]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 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	인력 (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 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 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 이상		220,000 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 이상		270,000 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 이상		310,000 권 이상
500만 미만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 광역대표도서관에는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을 지원하고 타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개관 후, 1년 이내 등록 시에는 기본 장서수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7년 후에는 기본장서수를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등록요건]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 이상	12석 이상	2,000권 이상

※작은도서관은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심의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에 관한 심의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2.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개관

- 현행 「도서관법」 시행규칙은 12개 조문(제12조는 삭제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중심에 놓이는 사서배치기준과 도서관 등록기준은 현행 「도서관법」에 대한 개정안이 공공도서관이 국민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행 사서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더불어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등록기준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현행 「도서관법」 시행규칙의 체계를 바탕으로 개정되는 「도서관법」 시행령(안)의 내용을 담는 것이 목적임
- 사서배치기준과 등록기준을 중심에 두고,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안)이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함

2) 사서 배치 기준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사서배치기준은 별표2에만 관계되는 것이어서 시행규칙 조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현행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93 시행규칙상 사서 배치 기준의 변화

시행령 개정(안)	현행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제4조(사서 등)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13.> ②법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영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	(현행과 같음)

<p>8. 13.>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8. 13.> [제목개정 2012. 8. 13.]</p>	<p>체육관광부장관(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p> <p>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말한다)</p> <p>2. 영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 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p> <p>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제목개정 2009. 9. 25.]</p>	
---	--	--

3) 등록기준

- 개정 시행령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현행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제2조의2 이하로 신설하여 반영할 수 있음
- 이때 사립도서관에 관한 등록 및 그 변경 등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준용하게 함이 통일적 업무처리를 위해 바람직하다 사료됨

표 94 시행규칙상 등록기준의 변화(현행 시행령 제3조에 신설)

시행령 개정(안) ⁵⁸⁾	현행 시행규칙	신설 시행규칙 ⁵⁹⁾
<p>제3조의2(등록신청) ①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국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시설명세서 2. 도서관자료목록 3. 사서명단을 포함한 직원명단</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도서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사서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도서관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관련 규정 없음)</p>	<p>(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2로 신설)</p> <p>제?조(등록의 처리)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처리는 사립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준용한다.</p>

<p>제3조의3(등록요건) ①법 제35조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은 도서관의 자료, 사서수, 시설의 규모에 따라 중앙관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p> <p>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관련 규정 없음)</p>	<p>(관련 규정 없음)</p>
<p>제3조의4(등록변경) ①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이 발생하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명칭 2. 도서관의 소재지 3. 시설명세서 4. 사서 명단 (감소되었을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증(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관련 규정 없음)</p>	<p>(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3로 신설)</p> <p>제?조(등록변경의 처리) 영 제3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사립도서관의 등록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준용한다.</p>
<p>제3조의5(등록표시) 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옥외 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시·군·구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관련 규정 없음)</p>	<p>(관련 규정 없음)</p>

제3조의6(등록심의 등) <등록신청> 제2항에 규정	(관련 규정 없음)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4로 신설) 제?조(등록심의의 처리) 영 제3조의6에 따른 등록심의를 위해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심의에 적합한 관계 위원회에 이를 위임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위원회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	--

58)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 제3조에 신설.

59) 현행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신설 시행규칙의 내용을 담기에 체계상 적정한 위치는 현행 시행규칙 제2조가 적정함.

3. 도서관법률개정(안)·시행령개정(안)·시행규칙개정(안)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p>		
<p>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 뜻은 -----.</p> <p>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p> <p>2. (현행과 같음)</p> <p>3. “-----”란 ----- ----- ----- ----- -----</p> <p>자료입수 ----- ----- 독서활동 지원</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삭 제〉</p> <p>5. “---”이란 ----- ----- ----- <u>법령으로 정하는</u> --- ----- ---.</p> <p>9. ~ 11. (현행과 같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 도서관 :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p>②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독서 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나.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u>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u></p> <p><u>다.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u></p> <p><u>2. 대학도서관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u></p> <p><u>7.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u></p> <p><u>8. 전문도서관 :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u>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u></p> <p>9. <u>특수도서관 :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u></p> <p>가. <u>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도서관</u></p> <p>나. <u>의료기관 입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u></p> <p>다. <u>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u></p> <p>라. <u>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u></p>		
<p><u>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u> ----- <u>국민의 지식</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 -----.</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 ----- 추천----- -----.</p> <p>④ ----- 취약계층의 ----- ----- -----.</p> <p>1.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를 ----- -----</p> <p>2. <u>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u> 를 ----- -----</p> <p>3. ----- <u>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u> <u>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u></p> <p>⑤ ----- <u>취약계층이</u> <u>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u> ----- -----</p> <p>----- <u>보상</u> <u>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u> <u>다.</u></p> <p>⑥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u> <u>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u> <u>「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u> <u>한 법률」에 따른</u> <u>정당한 편의제공을</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6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 및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p> <p>② 도서관은 ----- ----- -----데 ----- -----.</p> <p>③ -----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 -----.</p> <p>1. (현행과 같음)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공</p> <p>3. ----- -----</p> <p>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u> <u>격차 해소를</u> -----</p>		
<p>제7조(도서관의 협력 등) ① ----- <u>도서</u> <u>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u> <u>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이용을 위하여</u> ----- -----..</p> <p>② ----- <u>공중에게</u> ----- ----- <u>문학관·학습관 등 각종 문화·교육시설,</u> ----- -----.</p> <p>③ <u>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u> <u>특수도서관 등은</u> ----- ----- <u>범위에서</u>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		
<p>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u>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u> 및 ----- ----- <u>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이 법에서</u> ----- -----.</p>		
제2장 <u>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u> 등		
<p>제10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 ----- ----- <u>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u></p> <p>② <u>국가도서관위원회는</u>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p> <p>1. <u>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u></p> <p>2. <u>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도서관위원회의</u> ----- <u>국가도서관위원회에</u> ----- ----- -----</p> <p>-.</p> <p>④ -----<u>사무기구의</u> ----- ----- -----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없으면 --- - <u>따라야</u> 한다.</p> <p>⑤ <u>국가도서관위원회의</u> ----- ----- -----.</p>		
<p><u>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u> ① <u>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 <u>전문지식과</u> <u>경험이</u> -----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p> <p>③ -----.</p> <p>1. (현행과 같음)</p> <p>2. <u>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한차례만</u> 연임 할 수 있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u>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u>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12조(위원의 해촉) <u>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p>제13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u>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 -----.</p> <p>② ----- -----.</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u>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u> -----</p> <p><u><삭 제></u></p> <p>나. ----- <u>서비</u> 스 증진에 관한 사항</p> <p>다. ----- -----</p> <p>라. ----- -----</p> <p>3. (현행과 같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u> ----- ----- ----- ----- <u>매년</u> ----- ----- <u>수</u> <u>립·추진하여야</u> 하며, 시·도지사는 <u>필</u> <u>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u> <u>의할 수 있다.</u> <u><삭 제></u></p> <p>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u>필요한</u> -----.</p>		
<p>제15조(재원의 조달) ① ~ ② (현행과 같 음)</p>		
<p>제16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u>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u> ----- <u>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이하 “광역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광역도서관위원회는 -----</u> -----.</p> <p>1. <u>지역도서관의 -----</u></p> <p>2. <u>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u></p> <p>3. ----- <u>지역도서관 정책을 -----</u> <u>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u> -----</p> <p>③ <u>광역도서관위원회는 ----- 1명과 --</u> <u>----- 1명을 포함한 15명 -----</u> -----.</p> <p>④ ----- <u>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위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 사람 중 ----- 사람이 ----.</p> <p>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 해당 -----.</p>		
<p>제17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 ----- ----- ----- ----- ----- ----- 도서관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p> <p>② ----- <u>단체의</u> -----</p> <p>-----.</p> <p>③ <u>단체에</u> -----</p> <p>-----.</p>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p>제18조(설치 등) ① <u>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운</u></p> <p><u>영 등에 필요한</u> -----</p> <p>-----.</p>		
<p>제19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수행에 필요한</u> -----</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 -----(<u>온라인 자료 중 제22조</u> <u>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u> <u>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u> ----- -----)를 발행 또는 제작-----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장애인을 위한</u> <u>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u> <u>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u> ----- ----- ----- ----- <u>특</u> <u>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⑤ ----- ----- <u>보상</u> 등 에 필요한 ----- .		
<p>제21조(온라인자료의 수집) ① (현행과 같음)</p> ② ----- <u>기술적 보호조치</u> 등에 따라 -----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u>사람은</u> ----- ----- ----- . ④ ----- ----- -----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u>사람은</u>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보상 등에 필요</u> <u>한</u> -----.</p>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p><u>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 수립·시행하고 관련 ----- 공립 공공도서관중에서 <u>광역대표도서관을</u> -----.</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② <u>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u> ----- -----.</p>		
<p><u>제2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u> ----- -.</p> <p>1. <u>지역도서관 발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u></p> <p>2. ----- -----</p> <p>3. <u>지역도서관</u> -----</p> <p>4. <u>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u> -----</p> <p>5. <u>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u> -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보존관리</p> <p>6. <u>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u></p> <p>7. -----</p> <p>-----</p> <p>8. ----- <u>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u> -----</p>		
<p><u>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p> <p>----- <u>광역대표도서관을</u> -----</p> <p>-----</p> <p>-----.</p>		
<p><u>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u> -----</p> <p>-----</p> <p>-----</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u>광역대표도</u> <u>서관에</u> ----- ----- ② ----- ----- <u>등에 필요한 사항은</u> ----- -----.</p>		
<p>제2절 공공도서관</p>		
<p>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① ----- ----- <u>대통령령으로</u> ----- ----- <u>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u> <u>서관을</u> -----. ② ----- <u>국립 또는</u> <u>공립 공공도서관은</u> ----- -----. ③ <u>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u> <u>설립·운영할 경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u> <u>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u> <u>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28조(공공도서관의 업무) ① ----- <u>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u> <u>등의</u> ----- -----.</p> <p>1. <u>공중을 위한</u> ----- ----- <u>제공</u></p> <p>2. <u>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u> <u>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장려</u></p> <p>3.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 <u>기능을</u> <u>수행하는데</u> -----</p>		
<p>제29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 ----- <u>도서관자료의</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수집에 ----- ----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 다.</p> <p>② ----- ----- 해당 ----- ----- -----.</p> <p>③----- ----- ----- ----- 일반회계에서 ----- -----.</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및 공 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 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 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협력하여야 한다.		
<p>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긴밀하게</u> ----- -----.</p> <p>③ ----- ----- <u>운영에 필요한</u> ----- <u>해당</u> ----- -----.</p>		
<p><u>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u> ① ----- - <u>제35조제1항에</u> ----- ----- -----.</p> <p>② ----- <u>제35조제1항에</u> ----- ----- -----.</p> <p>③ (현행과 같음)</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제5장 대학·학교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		
<p>제32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설치·운영에 ----- 별도의 -----.</p>		
<p>제33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 ----- ----- -----.</p> <p>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p>		
〈삭 제〉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등) ① ----- ----- <u>전문도서관 또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u></p> <p>② <u>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 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 용서비스 제공</u> 2. <u>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u> 3. <u>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업무</u> <p>③ <u>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제작, 정 리·보존, 이용서비스 제공</u> 2. <u>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u>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u>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u> <u>3.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u> <u>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u> <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제6장 등록 및 절차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	제?조(등록신청) ① 법 제35조 제1항과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2로 신설 가능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p>	<p>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국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등록신청서 2. 시설명세서 3. 도서관자료목록 4. 사서명단을 포함한 직원명단</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가치, 사서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도서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등록심의는 도서관계, 학계, 전문가, 지</p>	<p>제?조(등록의 처리)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처리는 사립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준용한다.</p> <p>*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3로 신설 가능</p> <p>제?조(등록변경의 처리) 영 제3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사립도서관의 등록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서식을 준용한다.</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u>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④ ----- <u>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u></p> <p>⑤ <u>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역인사 등 10인 이내로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다.</u></p> <p>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u></p> <p><u>제?조(등록요건) ① 법 제35조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은 도서관의 자료, 사서수, 시설의 규모에 따라 등록한다.</u></p> <p>② <u>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u></p> <p><u>제?조(등록변경)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1. <u>도서관의 명칭</u></p>	<p><u>*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4로 신설 가능</u></p> <p><u>제?조(등록심의의 처리) 영 제3조의6에 따른 등록심의를 위해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심의에 적합한 관계 위원회에 이를 위임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위원회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2. <u>도서관의 소재지</u></p> <p>3. <u>시설명세서</u></p> <p>4. <u>사서 명단(감소되었을 경우)</u></p>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u>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u></p> <p>2. <u>도서관 등록증</u></p> <p>3. <u>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u></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제?조(등록표시)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도서관은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시·군·</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장 도서관 인력·시설 등</p> <p>제37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 대통령령으로 ----- -----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 ----- ----- -----</p> <p>〈삭 제〉</p> <p>-----</p> <p>〈삭 제〉</p> <p>-----</p> <p>② -----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 ----- 도서관자료와 도서관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 -----</p>	<p>*현행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 관련</p> <p>[공공도서관]</p> <table border="1" data-bbox="891 491 1433 1050"> <thead> <tr> <th>봉사대상인구</th> <th>기본장서(권)</th> <th>인력</th> <th>시설(㎡)</th> </tr> </thead> <tbody> <tr> <td>1만 미만</td> <td>3,000 이상</td> <td rowspan="7">사 서 최 소 배 치 기 준</td> <td>297 이상</td> </tr> <tr> <td>1만~2만 미만</td> <td>6,000 이상</td> <td>330 이상</td> </tr> <tr> <td>2만 ~ 5만 미만</td> <td>12,000 이상</td> <td>660 이상</td> </tr> <tr> <td>5만 ~ 10만 미만</td> <td>31,000 이상</td> <td>990 이상</td> </tr> <tr> <td>10만~30만 미만</td> <td>50,000 이상</td> <td>1,650 이상</td> </tr> <tr> <td>30만~50만 미만</td> <td>110,000 이상</td> <td>3,300 이상</td> </tr> <tr> <td>50만 이상</td> <td>170,000 이상</td> <td>4,950 이상</td> </tr> </tbody> </table> <p>※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위치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다만, 지위적 역할이 중앙관인 도서관은 시(분구가 된 지역은 분구의 인구), 구, 군의 인구 전체를</p>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 서 최 소 배 치 기 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시설(㎡)																									
1만 미만	3,000 이상	사 서 최 소 배 치 기 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말하며, 지위적 역할이 분관인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p> <p>※ 봉사대상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도서관은 등록 시 기본장서의 50% 이상을 구비하고, 7년 후 기본장서를 확보해야한다.</p> <p>※ 기존의 운영 중인 도서관의 등록 시, 면적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p> <p>[광역대표도서관]</p> <table border="1" data-bbox="891 919 1453 1331"> <thead> <tr> <th>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th> <th>면적 (㎡)</th> <th>인력 (명)</th> <th>자료(권)</th> </tr> </thead> <tbody> <tr> <td>100만 미만</td> <td>4,500 이상</td> <td rowspan="6">최소배치기준 7명</td> <td>170,000 권 이상</td> </tr> <tr> <td>100만 ~ 200만 미만</td> <td>7,000 이상</td> <td>220,000 권 이상</td> </tr> <tr> <td>200만 ~ 300만 미만</td> <td>9,500 이상</td> <td>270,000 권 이상</td> </tr> <tr> <td>300만 ~ 500만 미만</td> <td>12,000 이상</td> <td>310,000 권 이상</td> </tr> <tr> <td>500만 미만</td> <td>14,500 이상</td> <td>350,000 권 이상</td> </tr> <tr> <td>500만 이상</td> <td>14,500 이상</td> <td>350,000 권 이상</td> </tr> </tbody> </table>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	인력 (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 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 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 이상	220,000 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 이상	270,000 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 이상	310,000 권 이상	500만 미만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면적 (㎡)	인력 (명)	자료(권)																						
100만 미만	4,500 이상	최소배치기준 7명	170,000 권 이상																						
100만 ~ 200만 미만	7,000 이상		220,000 권 이상																						
200만 ~ 300만 미만	9,500 이상		270,000 권 이상																						
300만 ~ 500만 미만	12,000 이상		310,000 권 이상																						
500만 미만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500만 이상	14,500 이상		350,000 권 이상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광역대표도서관에는 지역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을 지원하고 타관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역 자료 보존관을 광역대표도서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구비해야 한다. 광역 자료 보존관의 규모는 광역대표도서관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p> <p>※ 개관 후, 1년 이내 등록 시에는 기본 장서수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7년 후에는 기본장서수를 확보해야 한다.</p> <p>[작은도서관 등록요건]</p> <table border="1" data-bbox="880 1027 1424 1155"> <thead> <tr> <th colspan="2">시설</th> <th rowspan="2">도서관자료</th> </tr> <tr> <th>건물면적</th> <th>열람석</th> </tr> </thead> <tbody> <tr> <td>66제곱미터 이상</td> <td>12석 이상</td> <td>2,000권 이상</td> </tr> </tbody> </table> <p>※ 작은도서관은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심의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에 관한 심의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p>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 이상	12석 이상	2,000권 이상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 이상	12석 이상	2,000권 이상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39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 이용자의 ----- ----- --. 1. ~ 3. (현행과 같음)</p>		
<p>제40조(금전 등의 기부) ① ----- ----- 설립 및 운영을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장 보칙</p>		
<p>제41조(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1</u> <u>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시설 및 관</u> <u>리·운영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도서관</u> <u>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u> <u>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도서관에 대</u> <u>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u></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제42조 (사용료) ① ----- 그 이용자에게 -----.</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 (보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도서관 통계 및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관 도서관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록이나 제3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 폐관 등 도서관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 ----- -----.</p>		
<p>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 ----- ----- ----- 관련 단체에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 ----- <u>관련 단체에</u> ----- -----.</p>		
<p><u>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u> <u>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도서관</u> <u>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u> <u>을 사용할 수 없다.</u></p>		
<p>제9장 벌칙</p>		
<p>제47조(과태료) ① ----- ------(<u>그 자</u> <u>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u>)- ----- -----.</p> <p>② <u>제4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u> <u>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u> <u>부과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38조제4항”로 한다.</p> <p>제4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제10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p> <p>②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③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한다.</p> <p>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제10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p> <p>④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1조”로 한다.</p> <p>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p>		

법률개정(안)	시행령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
<p><u>시</u>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9조 중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를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2조제2항에서”로 한다.</p> <p>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p> <p>⑦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38조제4항”로 한다.</p> <p>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3조제2항”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p>		

<참고문헌>

- 장기홍(2015). 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249-280.
- 장기홍(2010). FTA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연구, 12(2), 31-68.
- 곽동철(2011). 대학도서관 관계법규 제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145-162.
- 권나현(2017). 공공도서관 사서배치현황과 법정 배치기준의 타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4), 183-201.
- 김수갑(1993).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성정희(2018), 국내 공공도서관 성과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 12)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http://www.clip.go.kr/PageLink.do>
- 문화체육관광부(2013).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사서배치기준 설문조사 결과 공유 토론회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cited 2015. 1. 15]<<http://www.libsta.go.kr>>
- 민지영(2015), 공공도서관 관련 「도서관법」의 개정 방향 및 적합성 검증에 대한 연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5. 2. 12] <<http://www.law.go.kr>>
- 손현(2013). 도서관법령 개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수탁과제.
- 윤혜영(2012). 공공도서관관련자치법규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81-300.
- 윤희윤(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31-54.
- 윤희윤(2018). 도서관 사서배치의 법제적 쟁점과 실현 방안, 사서배치기준 설문조사결과 공유 토론회 자료집.
- 윤희윤·구본권(2008).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도서관, 63(1), 17-41.
- 이명옥(200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원(2011),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23-241.
- 이승종(2005).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서울: 박영사
- 장윤정(2017), 복합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전문석사학위논문
- 정현태·정미연(2013),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05-122.
- 조현양·김홍렬·류희경(2014). 공공도서관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8권 제2호.
- 최재황(2018). 공공도서관의 사서인력 기준과 장서 특성화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서, 2018.7
- Kang, Kee-Hong(2007). Normen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ter dem Grundgesetz, Europäischen Gemeinschafts- und sü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 Sodan/Ziekow(2007). Grundkurs Öffentliches Recht, 2. Aufl.

부록

부록 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

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나.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다.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 입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 및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도서관의 협력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학관·학습관 등 각종 문화·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 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

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이하 “광역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중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

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온라인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공도서관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경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도서관의 업무) ①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29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5장 대학·학교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

제32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3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

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도서관자료의

- 수집과 제작, 정리·보존, 이용서비스 제공
- 2.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3.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6장 등록 및 절차

-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도서관 인력·시설 등

제37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

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0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은 제35조1항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사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도서관 통계 및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관 도서관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록이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 폐관 등 도서관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도서관 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38조제4항”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제10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③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제10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④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를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2조제2항에서”로 한다.

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38조제4항”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부록 2. 도서관 등록업무 지침

도서관 등록업무 지침

2018. 12. 3.



문화체육관광부

• • • • 목 차 • • • •

1. 도서관 등록 근거	1
2. 도서관의 등록	2
3. 도서관의 변경등록	7
<양식 1> 도서관 등록심사 현장 점검표	8
<양식 2> 도서관 등록 심의위원회 심사표	12
참 고 도서관 등록요건	14

< 일러두기 >

- 본 지침은 2018년 12월 ??일 개정 시행된 「도서관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도서관의 등록 절차 및 요건을 이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담당자들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실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 본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조례 및 자체 규정 제·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과 사전 협의 요망
- 향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본 지침을 수정·보완할 예정임

1

도서관 등록 근거

□ 법적 근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5조(등록 등)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동법 시행령」 제?조(등록요건) 및 별표 2 * 붙임 <참고> 참조

□ 등록 심의의 법적 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신설)(등록신청 등)

제3조의2(등록신청등) 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차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도서관자료목록

3. 사서명단을 포함한 직원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가치, 사서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도서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의를 도서관계, 학계, 전문가, 지역인사 등 10인 이내로 등록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조(등록요건) 및 별표 2(1. 공통요건의 다.)

* 붙임 <참고> 참조

□ 공공 도서관 등록(관리)의 필요성

- (국·공립 및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의무화 도입('19년 00월 시행)
- (작은도서관) 등록도서관에 대한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양호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 등록 후 사후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

◇ 도서관 등록 현황

(2019.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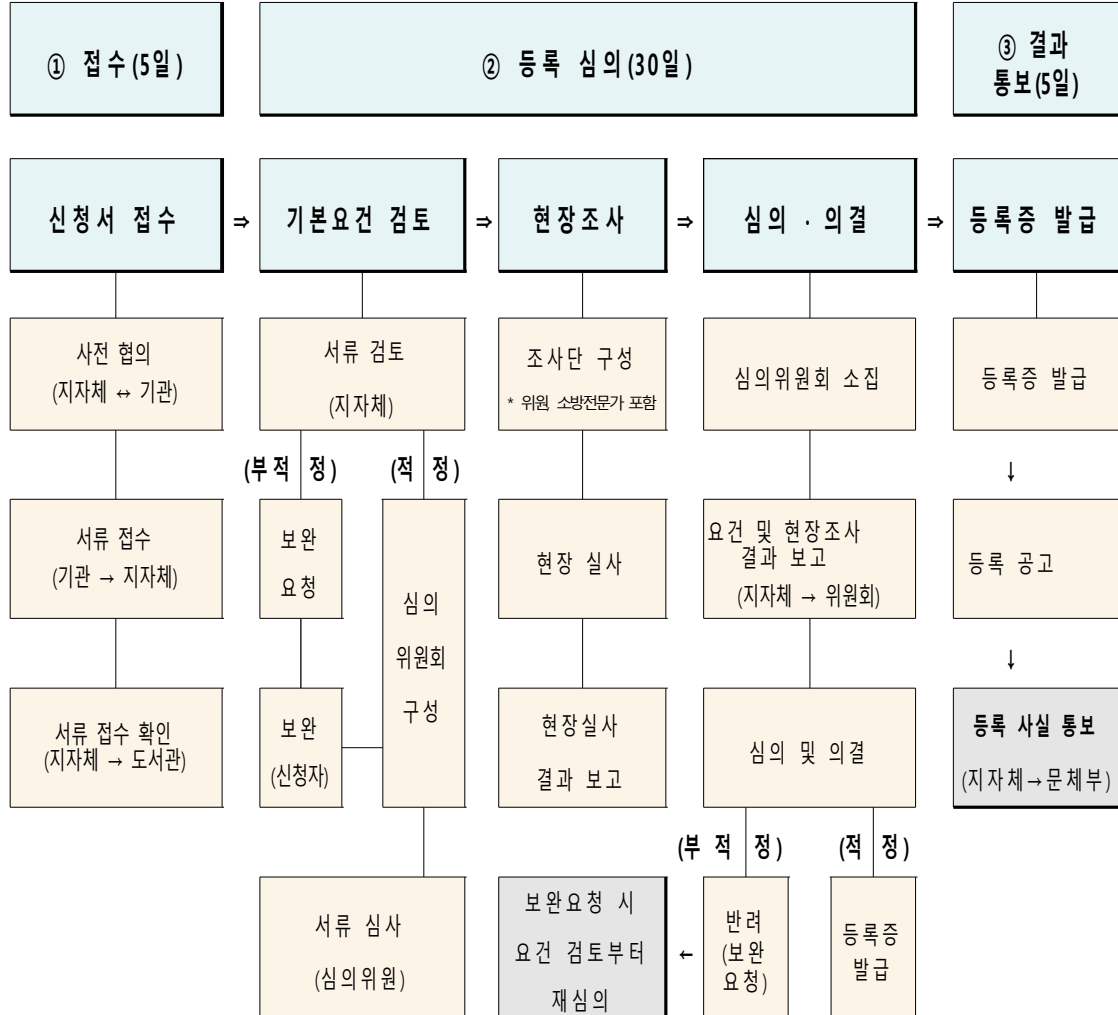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e=a+b+c+d)	국립 (a)	지자체 (b)	교육청 (c)	사립 (d)
관 수	총 계 (f=1+2)	00관 00%				
	등록관 (1)					
	미등록관 (2)					

2 도서관의 등록

□ 신청서류

- 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 도서관 시설명세서(「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 도서관 자료의 목록(「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 사서 명단(「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 **등록 절차** * 처리기간: 40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제3항)



□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 (사전협의) 등록을 원하는 도서관은 서류 접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와 등록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진행
- (서류접수 및 확인) 등록 요청관에서 등록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에서는 공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 사실 통보

○ 기본요건 검토

- (서류검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에서는 접수한 서류 중 누락·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 기한 : 5일 이내

- (심의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도서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 5명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시 현장 실사 위원을 2명 이내로 선정

- (서류심사) 심의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적격성, 등록의 타당성, 현장조사 시 주요 점검 사항 등을 검토

※ 기본요건 검토 단계에서의 심의위원 서류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현장조사

- (조사단 구성) 현장 실사 위원, 소방전문가(소방서 협조), 담당 공무원
- (현장 실사) ※ 현장 조사 시 현장 점검표(양식 1) 작성, 보조적으로 심사표(양식 2) 활용 가능
 - (현장 실사 위원) 자료의 해당 분야 적합성, 수집의 적정성, 가치 등
 - (소방전문가) 소방시설법 제9조1항의 소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등
 - (담당공무원)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결과 보고) 현장 평가 위원은 현장 실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도서관정책기획단) 또는 시·도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현장 점검표(현장 실시자 의견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 심의 · 의결

- (심의위원회 소집) 심사의원 2/3 이상의 참석 시 소집 가능

* 서면 심의로 대체 가능

- (요건 및 현장조사 결과보고)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에게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보고
- (심의 및 의결) 심사표(붙임 2)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 의결 하되, 채점 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불인정
 - * 심사표 채점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 절차 없이 곧바로 부결
 - ** 심의 결과 등록이 부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에서는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발급)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2,③」 및 시행규칙 ?호 등록증 발급
 - * 등록증 양식 임의 변경 불가 ※ 일부 등록증에 주의사항 표시 등 사례
 - * 등록증 수령 후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시행규칙 호 등록표시에 대한 의무를 고지

등록번호 표시 정비 : 발급기관*-연도**-연번*** 순으로 기재

- (예시) 충남-2017-1 호, 문체-2017-3호 등
- * (발급기관) 약칭으로 기재, ** (연도) 등록한 해, *** (연번) 등록한 해의 등록 순서

- * 조직을 공유하는 분관이 있는 경우 등록증 소재지에 같이 표기 가능
- (등록 공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조의 등록사항 공고(홈페이지 등)
 - * 공고사항 : 「도서관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등록
「도서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록의 취소
- (등록사실 보고) 「도서관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도에서는 신규 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보고
 - ※ 매년 6.30., 12.30. 기준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을 익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지

□ 심사기준

구분	정량 평가지표 (최소요건) ※「박미법」 등록기준	정성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심의사안)	정성평가 보완 기준요건 (심의위원회 확인사안)
심의 방식	○심의절차 ※신청→접수·검토→ 심의→등록증발급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 포함 5명으로 구성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도서관 등록심사위원회 - 도서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 - 지자체 도서관위원 중 위촉 가능
자료	○ 봉사대상인구에 따른 기본장서	○해당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장서수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목록의 확인 (목록내용의 정확성 및 사진 첨부상태) ○도서관 성격 및 목적과 소장 장서의 성 격이 일치하는지 확인 ○소장 장서의 등록, 정리SW 활용여부 (DB프로그램, 도서관관리시스템 등)
사서	○봉사대상인구별 최소 배치기준	○해당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사서자격증 소지자 명단 및 경력 확인 (4대보험내역 등 상근여부 확인자료) ○관장 및 전문직원(사서)을 비롯한 전체 직 원구성과 직원별 업무분장자료
시설	○공공도서관은 297㎡, 고아역대표도서관은 4,500㎡이상, 작은 도서관은 66㎡이상 을 최소기준으로 하 며, 봉사대상인구 규모에 따라 별도 시설 기준을 적용 ○사무실 또는 연구실 ○도난 방지시설, 온습 도 조절장치	○해당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부지와 시설의 적정성 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물의 소유여부 확인 (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 및 계속적인 사 용 가능여부 확인) ○자료실의 환경 (냉·난방시설, 방호시설, 소방시설, 조명, 대피로, 공조시설 등 정) ○서고의 환경 (최소규모, 공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기준설정) ○최소 요건 외 자료실, 세미나실, 학습실, 개인연구실 및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 었을 시 가산점
소방·기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에 따 른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의 부착 ○연간개방일 90일 이 상, 1일 4시간 이상	○해당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운영계획과 연간 운영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개관일수의 적정 성에 관한 사항	○연간 개방일수 및 개방시간 확인자료 ○관람료 확인자료 ○설립자의 목표, 예산, 투자계획, 장서확 보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 ○특별프로그램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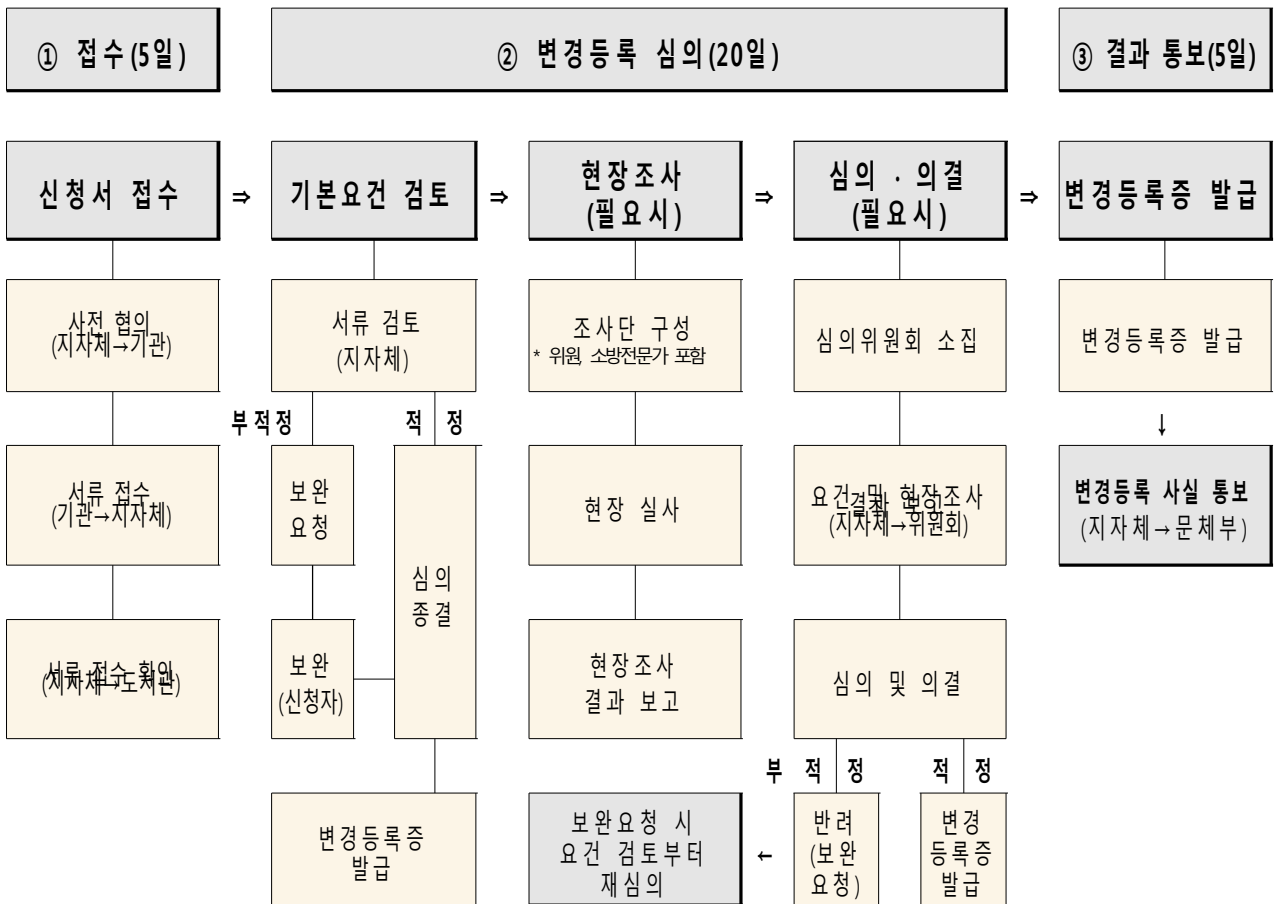
3

도서관의 변경등록

□ 신청서류

-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
 - *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설명세서, 자료목록, 사서명단, 자료이용료 변경된 경우
- ※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 변경등록 절차 * 처리기간: 30일(「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양식 1>

도서관 등록심사 현장 점검표

개요	명 칭					대표(관장)		
	소재지							
	신청종별	1종 · 2종 / 유형()						
	건물구조	대지 m ² , 연면적 m ² / 지상 층 지하 층 / 총 개동						
	소유현황	(토지 및 건물의 소유 혹은 임대)						
	개관(예정)일					대표전화		
인력현황	관 장	(명)	총 직원 수	(명)	자원봉사자	(명)		
	사사자격증 보유자	(상근) (명) (계약직) (명)	전문직 (사서교사, 실기교사, 전산직원 등)	(상근) (명) (계약직) (명)	관리직	(상근) (명) (계약직) (명)		
자료	장서수	(점)			도서관관리시스템 활용	사용 / 미사용		
	대표자료							
	DB구축수량	(건)		(점)				
시설현황	항 목	내 용						
	자료이용시설 현황	(일반자료실) 실/ m ² (/1석당) (참고자료실) 실/ m ² (/1석당) (연속간행물실) 실/ m ² (/1석당) (디지털자료실) 실/ m ² (/1석당) (시각장애인 및 지체부자유석) 실/ m ² (/1석당) (학습실 및 연구실) 실/ m ² (/1석당) (대출대 주변 이용자 공간) 실/ m ² (/1석당) (복사기 이용자 공간) 실/ m ² (/1석당)						
	서고시설 현황	실/ m ²						
	사무실 또는 연구실 현황	실 m ²						
	도서 작업실 또는 준비실 현황	실 m ²						

	강당 및 세미나실 현황	실		m ²
	도난 방지시설 현황 (전자키, 보안시스템, CCTV 등)	(열람실) (서고) (사무실/연구실)		
	온습도 조절장치 (항온항습기, 제습기 등)	(열람실) (서고)		
	소방·경보 및 피난시설 현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기준 적용)	소방시설의 종류	현 황	
		소화기구	(열람실) (서고)	
		경보설비	(열람실) (서고)	
		소화설비	(열람실) (서고)	
		소화활동설비	(열람실) (서고고)	
		소화용수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대피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열람실) (서고) (사무실/연구실)		
운영 계획 · 기 타	항 목	내 용		
	연간 개방일수 및 개방시간	(개방일) (정기휴일)	일 / 개방시간	~
	이용료(유료 시)	(성인)	원 / (어린이)	원
	특별기획행사 운영계획	연	회	
	문화행사 운영계획	연	회	
	도서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연	건	회
	도서관 관련 발간계획			
이용객 편의시설 운영계획 (자판기, 카페 등)				
운영 실 적 ·	항 목	내 용		비고
	연간 개방일수 및 개방시간	(개방일) (정기휴일)	일 / 개방시간)	~
	이용료(유료 시)	(성인)	원 / (어린이)	원
				※ 기 개관 · 운영 도서관

기 타	최근 3년간 특별기획 행사 운영실적	총 회	등록 시
	최근 3년간 문화행사 운영계획	총 회	
	최근 3년간 도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총 건 회 참가인원 :	
	최근 3년간 도서 발간실적		
	이용객 편의시설(자판기, 카페 등)		
현장조사 종합의견			

(필요시 별도 용지에 추가기록)

※ 추가 확인 필요자료

- 임대 건물에 입주한 경우 임대계약서
- 상근 직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내역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 증명서로 확인
(상주근무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사서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추가 확인
- 관장 및 전문직원(사서교사, 실기교사, 전산직원)을 비롯한 전체 직원구성과 직원별 업무분장표
- 도서관 설립자의 목표, 예산, 투자계획, 자료수집계획 등을 포함한 중, 장기 운영계획

《점검 사진》

<양식 2>

도서관 등록 심의위원회 심사표

도서관명			신청종별		
기본요건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사서(자격증 보유)	명	열람실	실	㎡
	장서 자료	점	서고	실	㎡
	도난방지시설·온습도조절시설	적합/부적합	작업실 또는 준비실	실	㎡
	소방시설	적합/부적합	사무실 또는 연구실	실	㎡
	피난유도 안내정보	적합/부적합	열람실·서고·강당 중 1	실	㎡

평가영역(배점)		평가지표	배 점					점수	비고
			A	B	C	D	E		
장서 (50)	20	자료(장서) 확보의 적합성	20	16	12	8	4		
	5	장서 분야의 적정성	5	4	3	2	1		
	10	자료의 학술적 · 교육적 · 사회적 가치	10	8	6	4	2		
	5	소장도서 및 자료의 활용성	5	4	3	2	1		
	10	그 밖에 문체부 또는 시·도지사 정하는 기준	10	8	6	4	2		문체부·광역지자체 자체기준 설정
	소계								
운영 계획 (30)	10	도서관의 설립목적, 예산투자, 장서확보계획 등 중장기 운영계획	10	8	6	4	2		
	10	사서자격증 소지자 외 전문인력(사서교사, 실기교사, 전산직원 등)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10	특별기획, 문화행사, 도서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10	8	6	4	2		
	소 계								
운영 실적 (20)	10	도서관의 설립목적, 예산투자, 자료수집 등 중장기 운영계획	5	4	3	2	1		※ 기 개관 · 운영 도서관 등록 시
	10	사서자격증 소지자 외 전문인력(사서교사, 실기교사, 전산직원 등) 및 운영인력 활용의 적정성	10	8	6	4	2		
	10	특별기획, 문화행사, 도서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5	4	3	2	1		

소 계													
시설 (20)	10	열람실의 환경의 적합성 (최소요건 외 온·습도조절시설, 조명, 공조시설, 도난방지 등 현황)					10	8	6	4	2		
	5	서고의 환경의 적합성 (최소요건 외 온·습도조절시설, 공조, 도난방지시설 등)					5	4	3	2	1		
	5	교육·편의 시설 (최소 시설 요건 외 연구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의 추가 시설)					5	4	3	2	1		
	소계												
가점	사전 협의 및 평가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설립협의 실시									심사위원 평가	
		공립도서관	공립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	
		사립도서관	사립도서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	
심의위원 의견													
(필요시 별도 용지에 추가기록)													
총 점		_____ 점											

년 월 일

심의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서면심사 시에는 심사위원별 심사의견 및 심사표를 취함하여 평균점수 산출

참 고

도서관 등록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2019.??.?? 개정)

1. 공통요건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 다. 도서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 확보의 적합성
 - 2) 자료 분야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교육적·사회적 가치
 - 4) 소장도서 및 자료의 활용성
 - 5) 그 밖에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서 소장 및 활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인구	기본장서(권)	인력	시설면적(㎡)
1만 미만	3,000 이상	- 기본인력 : 4명(사서3, 비사서1) - 추가인력: 사서(인구 9천명당 1명), 비사서(사서 1/3추가)	297 이상
1만~2만 미만	6,000 이상		330 이상
2만 ~ 5만 미만	12,000 이상		660 이상
5만 ~ 10만 미만	31,000 이상		990 이상
10만~30만 미만	50,000 이상		1,650 이상
30만~50만 미만	110,000 이상		3,300 이상
50만 이상	170,000 이상		4,950 이상

나. 광역대표도서관

광역자치단체 봉사대상 인구	기본장서	인력 (명)	시설면적 (㎡)
100만 미만	170,000권 이상	사서: 최소배치기준 7명 - 추가인력: 사서(인구 10만명당 1명),	4,500이상
100만 ~ 200만 미만	220,000권 이상		7,000이상
200만 ~ 300만 미만	270,000권 이상		9,500이상
300만 ~ 500만 미만	310,000권 이상		12,000이상
500만 이상	350,000권 이상		14,500이상

* 단, 1천만명 이상 봉사대상인구의 추가 인력은 50명으로 한정하고 추가 검토 필요

다. 작은도서관

시설		기본장서
건물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 이상	12석 이상	2,000권 이상

부록 3. 직무조사표

도서관 사서배치기준 재설계를 위한 직무조사표

- ◇ 본 진단조사는 귀하가 수행중인 업무내용과 처리시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력재설계(사서배치기준 재설계: 기본인력규모의 적정성 판단)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 귀하가 작성하시는 본 진단조사의 결과는 도서관 사서배치기준 재설계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 개인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 따라서 도서관의 발전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기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객관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의사항 혹은 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화 : (031)467-8163 / rhm@sungkyul.edu

사서배치기준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조사결과를 활용케 되므로 성실·치밀하게 작성하면 할수록 도서관의 발전(인력규모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명칭			근무일수 및 평균근무 시간	평일	연 간 근 무 일 수 ()일	성 명		
도서관 유형	공 공 도 서 관			1일 평균근무시간 ()시간()분	국공휴일			연 간 근 무 일 수 ()일
	광역대표도서관			1일 평균근무시간 ()시간()분		계	연 간 근 무 일 수 ()일	연락처
	작 은 도 서 관 기 타			1일 평균근무시간 ()시간()분				
직 급		직 렬		총근속 기간	()년 ()월	현부서 근무기간	()년 ()월	

질문 : 귀하가 수행한 사무의 부문별 연간수행시간 및 총소요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수행업무(구체적으로 기재)	전년도 처리건수	1회당 처리시간 (분)	총소요 시간 (분)
분장사무				
소 계				
분장의 사 무				
소 계				
총 계				

다음에 대하여 응답 부탁드립니다.

(단위: 명)

구분	계	고위공무원단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1 (청원경찰)	기타2 (공무직)	기타3 ()	기타4 ()
			행정	사서	행정	사서	행정	사서	행정	사서	행정	사서	행정	사서				
정원																		
현원																		

주: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